

1987

EDCF 30년사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2017

제1권 | 대외경제협력기금 30년 역사



EDCF는 우리나라 대표 원조자금으로서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의 든든한 파트너로 성장했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0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자금 지원을 통해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1987년 첫 해에는 2개 사업, 179억 원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53개국에 약 15.2조 원(2016년말 현재, 누적기준)을 지원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2007~2016년)만 살펴보면 도로건설, 1,132km의 송배전망 확충 등 수원국 인프라 건설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제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30년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EDCF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일방적인 원조(Aid)'에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존중하는 개발(Development)'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개발재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성장에 따른 기후변화, 소득불균형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랫동안 개발재원을 공급해 왔던 공여국들은 저성장,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국제개발협력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EDCF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발목표, 사업수행 방식, 그리고 파트너십 등 3대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EDCF는 개발목표에 그 동안 추구해왔던 경제개발과 함께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개발 소외지역 및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 글로벌 공동체의 안정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채택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둘째, EDCF의 지원방식을 수원국의 형편과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화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존 차관위주의 지원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자본투자, 보증지원 등 다양한 방식들을 고려하고 지식협력·정책자문 등 무상지원과 연계하여 유·무상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셋째, EDCF의 국내외, 공공·민간등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합니다. 선진국 공여기관, 국제개발금융기구뿐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공동 사업발굴, 협조용자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수원국이 바라는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고 식민통치와 참혹한 전쟁을 겪었던 우리에게 국제사회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로 성공한 우리의 개발경험은 어느 선진국도 줄 수 없는 소중한 글로벌 자산입니다. 이제는 이 값진 경험을 협력국은 물론 선진국과도 함께 나누고 키워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30년사'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화보, 인터뷰, 사례 설명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집필에 수고해 주신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향후 30년, 100년 후에도 수원국 경제협력의 '최상의 벗(Best Friend)'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9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김동연

EDCF는 개발도상국의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출범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EDCF는 1987년 설립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조자금으로 우리나라가 반세기 만에 이루어낸 발전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지원하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 인프라 투자에 원조를 활용하고 개방적 대외경제정책을 통해 무역확대와 해외 투자유치에 집중된 한국의 성장경험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정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EDCF는 이러한 한국의 개발경험에 기반하여 지난 30년간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을 주요 수단으로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수원국의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EDCF 설립 이래 수탁기관으로서 기금운용을 전담하면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수출입금융, 남북협력기금과 함께 은행의 3대 중심업무로 육성해 왔습니다. 설립 당시 300억 원에 불과했던 기금 규모는 2017년 6월 말에 이르러 사상 최대 규모인 4.8조 원에 도달하였습니다. 1987년 179억 원에 불과했던 연간 승인규모도 해마다 꾸준히 확대되어 2016년에는 1조 7,460억 원에 달하였으며, 누적기준으로는 15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업발굴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발재원을 다변화하는 등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질적인 변화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국별 프로그램 미션과 정책협의를 정착하여 현장중심의 사업발굴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대규모 개발재원 조성을 위해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참여를 유도하고 금융협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개도국 경제성장과 산업화, 고용창출 등에 기여가 높은 대규모 경제 인프라 분야의 민간협력사업(PPP) 차관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유발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및 경험증진자금(개발금융) 등과의 금융패키지 추진 등으로 상호 보완적 개발재원 활용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습니다.

이처럼 EDCF는 지난 30년간 변화하는 국제 개발협력 환경과 호흡하며 개도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개도국 신시장 개척을 통한 경제교류 증진에 큰 기

여를 해 왔습니다. 이제 지난 30년의 성과를 차분히 돌아보며 다음 30년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제사회는 원조를 통해 사회를 개발하고 빈곤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넘어, 포용적 경제성장과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강조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수립하였습니다. EDCF는 SDGs가 추구하는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정의의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개도국의 성장과 분배,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개발사업의 맥락에 맞춘 최적의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발금융협력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식을 공유하고, 민간 투자 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해 개발금융의 가치사슬을 연장시키고, 정책자문-사업추진-운영·관리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개발협력 지원구조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다자 개발금융기관, 민간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개발과 금융효과를 증진하고 대한민국 대표 ODA 기관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발협력 활동이야말로 개발도상국 스스로 산업과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드넓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 기업과 청년들에 보다 큰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며, 국제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라 믿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30년사>는 EDCF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와 수원국 간 상생(win-win)의 경제협력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생생한 현장의 산물입니다. 이 책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분들께 소중한 하나의 역사적 자료일 뿐 아니라 '개발금융협력 지침서'로도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EDCF가 지구촌 공동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선진 공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9월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직무대행 홍영표

홍영표

EDCF 30년사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987
2017

제1권 | 대외경제협력기금 30년 역사

기념사	2
발간사	4
대외경제협력기금 30년 역사	10

제1장

EDCF 설립으로 국제개발협력 시행기반 마련 ¹ 1987~1997	12
--	----

1. EDCF 설립	13
EDCF 설립 필요성 대두	13
EDCF 설립 추진 논의	1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정	17
EDCF 설립과 운영 준비	19
2. EDCF 지원 개시	22
EDCF 재원 조성	22
효과적인 지원방안 모색	23
EDCF 초창기 지원규모	24
EDCF 사업평가제도 도입	25
ODA 운영 이원화에 따른 연계지원체제 마련	26
3. EDCF의 성장기반 구축	28
EDCF 종합개선방안 수립	28
EDCF 지원제도 확충	31
EDCF 지원규모 확대	33
4. OECD 가입에 따른 EDCF의 변화	37
OECD 가입 준비	37
OECD 수출신용협약 준수	38
EDCF 관리체계 강화	40

표기 | 명칭은 해당시기의 공식명칭을 사용했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관 약칭을 사용했다.

일러두기 | 맞춤법은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따르며, 모든 표기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자와 영문을 혼용했다. 숫자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천, 만, 억, 조 등 보조단위를 사용했다.

제2장

EDCF 성장기반 확충 ¹ 1998~2009	42
--	----

1. IMF 외환위기와 EDCF의 대응	43
IMF 외환위기로 자금출연 중단	43
내부정비로 위기 극복	44
자금 지원규모 확대	45
EDCF 최초의 채무재조정	46
2. EDCF 지원제도 정비	48
지원대상사업의 분류 운용	48
비구속성 원조 허용범위 확대	50
수출신용과 결합한 혼합신용 지원	51
낙찰조건부 지원제도 도입	53
사업진행 관리제도 도입	53
사업참여자 선정의 경쟁입찰 원칙 확립	54
중소기업 참여확대 위한 소액차관 도입	55
컨설턴트 고용지침 개정	56
지원사업 부패방지 위한 지침 제정	56
3. MDGs 체제의 등장과 변화	58
MDGs 체제의 등장	58
MDGs 수립과 우리나라의 대응	59
4. 능동적 사업발굴제도 도입	62
개발도상국 정부와의 정책협의 활성화	62
정부간 기본약정(F/A) 도입	63
해외주재원 파견	64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확대	65

5.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확립	6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신설	66
자금운용위원회와 자금운용자문위원회 구성	67
한국수출입은행의 실무위원회 운영	68
EDCF 중기 운용전략 수립과 시행	71
6. EDCF 사업평가제도 개선	72
사업평가제도 정비	72
평가전담팀 신설과 성과평가지표 설정	73

7. MDB와의 협조체제 구축	74
국제개발기구와의 협조용자 추진	74
선진 원조기관과의 협력 강화	75
국제개발사업상담센터 설치	76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위한 KOAFEC 개최	77

제3장

선진 지원체계 구축과 국제위상 확립 ¹ 2010~2016	80
1. OECD DAC 가입과 EDCF의 역할	81
OECD DAC 가입 준비	81
OECD DAC 가입에 따른 EDCF의 변화	84
OECD DAC 통계보고 우수국가 선정	86
OECD DAC 동료평가 실시	88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 유·무상 통합추진체계 출범	9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91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 강화	92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93
중점협력국 CPS 수립	94

3. KSP를 통한 경제발전경험 공유	96	8.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유·무상 연계 강화	138
개발도상국에 경제발전경험을 전수할 KSP 출범	96	유·무상 협력체계 구축	138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사업 담당	98	유·무상 연계지원 확대	140
KSP 사업기획과 관리기능 강화	100	EDCF-KOICA 간 협력 강화	140
4. 혁신적 금융협력 수단 도입	102	9.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지원제도 확충	143
개발도상국 개발계획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차관 도입	102	EDCF 세이프가드 도입 필요성 대두	143
민간과의 공동투자를 위한 민자사업차관 도입	104	EDCF 세이프가드 도입과 사업 적용	144
협력사업 보증제도 도입	107	EDCF 분야별 모듈화 가이드 정립	146
민간협력(전대)차관 도입	108	개발도상국 및 다른 개발협력기관과 공동평가 실시	148
개발금융 실행기반 마련	109	성과평가지표 설정기준 개선	149
개발재원 연계한 금융패키지 지원	110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위한 기반 확립	150
		EDCF 완공사업 사후관리 지원제도	151
5. 체계적 사업관리체제 강화	113	10. EDCF 인식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152
국별 프로그램 도입	113	국민 지지기반 확보 필요성 대두	152
국별 프로그래밍 전담조직 신설	114	대중매체를 통한 EDCF 인식 제고	154
국별 프로그램 활용한 중기지원 포트폴리오 정착	115	EDCF 홍보대사 위촉	157
체계적인 사업관리체제 구축	116	청년층 참여 확대	158
		학계·시민단체·국내 기업과 함께하는 ODA	161
6. 국내외 개발파트너십 확대	118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118		
국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122		
7. MDB 협력 통한 지원효과 극대화	130		
MDB 협조용자 확대로 국제사회 위상 제고	130		
MDB 신탁기금과 EDCF 연계 강화	132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134		
KOAFEC을 활용한 금융협력 패키지 지원 확대	137		

제4장		4. 숫자로 보는 EDCF	202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도 '2017~	162	EDCF의 재원 조성	202
		EDCF 운용 승인현황	203
		EDCF 집행현황	204
		자체수입의 확충	205
		지역별 지원현황	206
		분야별 지원현황	207
1. SDGs 체제 등장과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	163	부록	208
MDGs의 성과와 한계	16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210
새로운 개발목표 SDGs의 도래	164	조직현황	212
ODA 현대화에 대응한 국제사회 논의	166	조직변천	214
원조투명성을 위한 IATI 정보 공개	168	연도별 기금조성	216
		연도별 기금수입 및 지출현황	218
2. 개발협력의 환경변화와 당면과제	171	국가별 승인현황	220
		국가별 집행현황	222
		지역별 승인 및 집행현황	224
3. EDCF 중장기 발전방향	175	자금종류별 승인현황	226
SDGs 가치를 반영한 사업 추진	175	자금종류별 집행현황	228
사업지원방식 다양화	177	정부간 기본약정(F/A) 추진현황	229
연대를 통한 개발사업 확장	179	MOU 국내 체결현황	230
		MOU 국외 체결현황	232
자료로 보는 EDCF	182	연도별 사업승인 내역	234
		연표	246
1. 국제개발협력의 개념과 역사	183	2. 수원국과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초기 경험(1945~1987)	192
ODA의 개념	183	우리나라의 수원국 역사	192
ODA의 유형	184	우리나라의 원조공여국 역사	194
ODA의 역사	185		
		3. EDCF 조직 운용과 변천	198
		EDCF 본부 조직	198
		EDCF 해외사무소	200

대외경제협력기금 30년 역사

| 1987 - 1997 |

제1장 EDCF 설립으로 국제개발협력 시행기반 마련

| 1998 - 2009 |

제2장 EDCF 성장기반 확충

| 2010 - 2016 |

제3장 선진 지원체계 구축과 국제위상 확립

| 2016 - |

제4장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도

| 1987 - 1997 |

제1장 EDCF 설립으로 국제개발협력 시행기반 마련

1. EDCF 설립
2. EDCF 지원 개시
3. EDCF의 성장기반 구축
4. OECD 가입에 따른 EDCF의 변화

1. EDCF 설립

1980년대에 접어들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교역, 해외투자, 해외 건설수주 등 경제교류가 확대되면서 개발도상국은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국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선진국에 편중되어 있던 경제교류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와 해외진출 기반 조성이 필요하였다. 한편 개발도상국은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발전을 목표로 의욕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개발경험과 기술, 자본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산업화와 경제발전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하였다.

이 같은 대내외 여건의 영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 설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끝에 1986년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공포하고, 1987년 EDCF를 설립하여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EDCF 설립 필요성 대두

1980년대에 들어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세계경제 침체,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원자재가격 하락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 직면하였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개발을 위하여 대외채무를 적극 도입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대외채무는 1970년에 680억 달러에서 1985년에는 6,860억 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게다가 경제개발정책의 성과 부진으로 채무 상환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곤경에 처하였다.

개발도상국의 외채현황

시기	1970	1975	1980	1985
총외채(억 달러)	680	2,040	4,300	6,860
외채/GDP(%)	14.1	18.1	20.9	33.8
이자부담/GNP(%)	0.5	0.8	1.6	2.8
DSR(%)	14.7	13.6	16.0	19.7

※자료 : WB, World Development Report(1985)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 비교

시기	1962~1972	1973~1979	1980~1985
선진국	4.9%	2.8%	2.0%
개발도상국	6.3%	5.2%	2.6%

이 때문에 1980년부터 1985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6%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위축되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소득수준 격차도 벌어졌다. 특히 선발 개발도상국과 후발 개발도상국 간의 개발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이 협소한 경제 여건상 대외 지향적인 경제개발 전략을 추구하여 왔다. 그 결과 산업구조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시책, 1980년대 중화학 투자조정 등의 발전과정을 거쳐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에서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맞고 있었다.

아울러 1980년대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개발도상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관계를 꾸준히 넓혀나간 결과, 1985년에는 개발도상국과의 교역량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30% 이상을 차지하였고, 해외투자는 50% 이상, 해외건설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이들 국가가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경제·사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개발수요는 크게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교류 현황(1985)

구분	총액	개발도상국	비중(%)
교역(백만 달러)	61,419	20,037	32.6
수출(백만 달러)	30,283	8,956	29.6
수입(백만 달러)	31,136	11,081	35.6
해외투자(백만 달러)	118	70	59.3
건설수주(백만 달러)	4,691	4,684	99.9
취업인력(1,000명)	163	126	77.3

※ 주 : 개발도상국의 범위는 OECD 2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증가한 반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투자재원과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은 해외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선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과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는 대내외 여건에 따라 우리나라는 EDCF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개발도상국의 자본과 기술협력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계류와 산업설비 등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촉진한다는 취지였다.

EDCF 설립 추진 논의

해외협력위원회의 노력 | 1980년대 초부터 추진된 개방화와 자율화 등 국제화정책과 아울러 제3세계와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다. 대외관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할 필요성 또한 높아졌다. 이 같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정부는 1983년 1월 경제기획원(現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해외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던 대외경제 문제협업·조정하여 국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과 인력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해외협력위원회는 1983년 9월과 1984년 12월에 각각 마련한 '개발도상국 협력확대방안'과 '대개발도상국 경제협력방향'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본협력 수단의 하나로 EDCF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개진하였다. 그러나 막대한 대외채무와 국제수지 적자의 영향으로 정책제한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기획원의 명칭 변화¹ 1961년 7월에 발족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담당하였으며, 투자의 우선순위를 심의하고, 경제부처 간 이견조정, 물가안정 대외경제정책 등을 총괄하였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재무부와 통합되어 재정경제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98년 2월 재정경제부로 개칭하였다. 2008년 2월 기획예산처와 통합되면서 기획재정부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외무부의 구상과 윤석현 대사의 건의 | 경제실리외교를 지향하고 있던 외무부(現 외교부) 또한 EDCF 설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1984년 10월 외무부는 '대개발도상국 협력방안'에서 광범위한 내용의 경제협력사업을 포괄하는 기금 설치방안과 기금 관리를 위한 전문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외무부가 제시한 기금의 성격은 정부간 대외경제협력 차관뿐만 아니라 무상원조, 기술협력, 국제기구 분담금과 출자금 등 다양한 형태의 대외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관리를 의미하였다.

한편 1985년 외무부 본부대사직에 있던 윤석현 대사는 대외경제협력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칭 '국제협력공사'를 설립하여 협력기금과 중소기업해외진출기금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윤대사가 제안한 경제협력기금은 연불수출금융과 무상원조의 중간 성격을 띠었다. 이에 따른 종합적인 대외경제협력 전담기구는 설립되지 않았지만, 윤대사의 제안은 이후 탄생한 EDCF의 성격과 내용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외무부의 명칭 변화 | 1948년 7월 정부 수립과 함께 정부조직법에 따라 발족하였고, 1998년 2월 통상교섭과 대외경제와 관련한 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로 개편되었다. 2013년 3월 종전의 통상 관련 업무를 신설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외교부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부 관련 부처의 움직임 | 1986년 3월 해외협력위원회가 대외협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로 흡수되었다. 이후 경제기획원은 1986년 6월 '대개발도상국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수립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정에 따른 EDCF 설립과 대외경제협력공사 설립방안을 제시하였다.

EDCF 설립방안은 개발도상국과의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능동적인 지원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이 요청하는 자본과 기술제공 요구에 효과적으

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제시되었다. 한편 대외경제협력공사 설립 방안은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협력정책의 추진과 협력사업 간의 유기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한 것이었다. 이 방안에는 기금 설립 초기 1~2년간, 즉 대외경제협력공사의 설립 이전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운용을 위탁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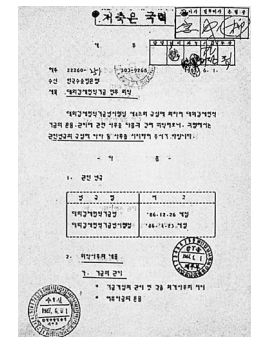
1986년 7월에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주관으로 열린 관계 부처 국장급 회의에서는 EDCF 설립과 가칭 대외경제협력공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대외경제협력공사 설립은 부처 간의 이해관계와 업무조정 등이 필요하여 단기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우선 EDCF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회의는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던 EDCF 설립에 대한 본격적인 합의를 추진한 최초의 시도였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정

경제기획원은 관계 부처 국장급 회의 직후 '대개발도상국 경제협력 방안'에 제시된 기금 설립방안을 토대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안의 시안 작성에 착수하였다. 기금법 시안에서는 경제기획원이 기금운용정책과 감독기능을 담당한다는 구상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으로 대외경제협력공사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기관을 기금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부처 내 협의 결과 경제기획원 장관이 기금을 직접 관리·운용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안과 관련하여 부처 간에는 기금법의 별도 입법 여부와 기금의 관리감독 주체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다.

경제기획원은 대외적으로 정부간 협력자금이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 공문(1987. 6. 1)

수출촉진 차원에서 제공된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성격과 내용에 맞게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확신에 기반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기금이 경제·통상·외교·재정 등 다양한 요소의 종합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조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기획원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총무처(現 행정안전부)는 별도 입법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대외경제협력 업무가 재무부(現 기획재정부) 소관임을 지적하였다. 재무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별도 입법에 부정적이었으며, 관리감독 주체는 재무부가 되는 것이 합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부처 간 실무 협의과정에서 별도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졌고, 1986년 8월 27일 개최된 경제장관협의회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정과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

경제장관협의회에서는 기금운용 관리주체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경제기획원과 청와대 경제비서실은 기금운용관리는 종합조정 필요성에 입각하여 경제기획원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재무부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경제기획원에 기금운영심의회를 설치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하되 기금의 회계적 관리는 재무부가 담당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8월 28일, 대통령에게 '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방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기금 운용관리 주체가 재무부로 최종 결정되었다. 재무부가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관장하며 국고를 관리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었다. 다만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기금 설치방침 결정 때의 합의 취지를 살려 경제기획원에 두기로 하였다.

재무부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기금설립 준비와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대외경제협력기금법안 작성 작업에 착수하였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안은 1986년 11월 1일 국회에 제안되었고, 재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1986년 12월 2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주요 내용

1. 목적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경제교류를 증진하며, 경제협력을 촉진함.
2. 재원
정부출연금, 정부투자기관·경제단체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장기차입금, 채권발행 및 기금의 운용수익금
3. 용도
-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어음의 할인, 채무의 보증 또는 유가증권 인수 포함) 또는 출자
- 협력사업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적 실시를 위한 자금의 융자
- 개발도상국 경제안정에 필요한 대한민국 물자의 수입소요자금의 융자
-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4. 운용·관리
기금 운용·관리는 재무부장관,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할 수 있음.
5. 기금운용위원회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경제기획원에 둠.
-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 기금 운용계획
- 결산보고 사항

EDCF 설립과 운영 준비

1986년 12월 26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공포되었다. 재무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기금의 설립과 운영 준비를 본격화하였다. 1987년 4월 23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을 제정한 뒤 5월 29일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와 함께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등을 의결하였다. 이어 재무부는 1987년 6월 5일에 기금운용관리규정을, 1987년 6월 25일에 기금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경제기획원은 기금운용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와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제정하였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령과 제반규정의 제정과 정비를 위하여 1986년 9월 12일, 7명으로 구성된 업무연구반을 기획부 내에 발족시켰다.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기금법안을 토대로 재무부안(案) 작성에 일조한 업무

연구반은 1987년 3월, 21명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기금부 설립준비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안 마련 등 본격적인 법령 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재무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1987년 6월 1일자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정식으로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은 같은 날 대외경제협력기금부를 신설하여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무·회계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1987년 7월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내규로 기금실무 전반을 다루는 '기금지원업무 취급규정'을 제정하는 등 기금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여 나갔다. 1987년 7월 1일, 드디어 최초 정부출연금 150억 원이 납입됨으로써 EDCF 운영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금고 설치(1987. 6. 1)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수탁 현판식 후 기념촬영(1987. 6. 1)

2. EDCF 지원 개시

EDCF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EDCF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으며, 중점 지원대상 분야·국가 선정, 사업발굴 프로세스 강화,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확대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EDCF 차관은 설립 초창기인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지역으로 골고루 승인되었으며, 경제 인프라 건설사업 위주로 지원이 확대되었다. 또한 EDCF는 차관지원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사업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한편 1991년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가 설립되자 EDCF는 이원화된 ODA 운영체계 내에서 EDCF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상원조와의 연계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EDCF 재원 조성

EDCF 재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정부출연금, 기타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예수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장기차입금 등으로 조성된다.

EDCF는 1987년 정부출연금으로 3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 이후 1988년 정부출연금 200억 원, 1989년 정부출연금 500억 원과 재정융자특별회계차입금(이하 재특차입금) 400억 원 등 모두 900억 원을 조성하면서 1989년 말에는 총액이 1,500억 원을 넘어섰다.

1990년대 초반에는 당초 예상하였던 EDCF 지원사업의 지출부진과 경상수지의 적자반전에 따라 기금 조성이 주춤하였다. 그러나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이 본격 논의됨에 따라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간 3,900억 원의 정부출연금이 납입되었으며, 1,950억 원의 재특차입금과 2,254억 원의 당기순이익 등 모두 7,977억 원이 조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1996년 말에는 누적조성액이 1조 원을 돌파하였다.

효과적인 지원방안 모색

EDCF는 출범 당시인 1987년 개발도상국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청하는 사업 중에서 긴급적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제발전단계와 경제·사회 여건에 알맞은 분야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개발도상국 경제개발에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사업 부문으로 지원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EDCF는 수원국의 개발정책과 조화롭고 효과적인 협력수단을 택할 수 있는 조사·연구가 미약하여 적절한 지원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외경제협력 대상국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국가를 중점지원대상 국가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양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으면서 수원국의 경제개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발굴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정부의 사업발굴 능력과 사업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 F/S) 능력 부족으로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지원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EDCF는 이에 따른 외교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금지원 요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상대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한 후 공식차관 요청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개발협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고, 원활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89년 12월 ADB(Asian Development Bank : 아시아개발은행)에 최초로 인력을 파견한 이후 OECD를 비롯하여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국제부흥개발은행),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유럽부흥개발은행), AfDB(African Development Bank : 아프리카개발은행),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미주개발은행) 등으로 파견 대상 기구를 확대하여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나갔다.

EDCF 초창기 지원규모

EDCF는 설립 첫해인 1987년 7월, 외무부를 통하여 8개국 15개 사업에 약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지원 요청을 받았다. 이 중 1987년 12월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과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침내 179억 원 규모의 EDCF 첫 차관지원을 시작하였다.

1987년부터 1992년까지 EDCF 차관의 지역별 승인규모는 아시아 지역 34.6%, 동유럽 지역 29.1%, 아프리카 지역 25.9%였다. EDCF는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필요성이 큰 아시아 지역과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여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동유럽,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 지역에 골고루 차관을 승인하였다. 분야별로는 교통과 통신 등 경제 인프라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이 5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육·보건·수자원 등 사회 인프라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은 35.7%를 차지하였다.

1990년대에는 양자간 원조보다 다자원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는 양자간 원조를 확대하였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한 발전을 경험하였기에 양자간 원조를 통하여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직접 전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유상원조뿐만 아니라 경제자문과 기술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1987. 12. 4)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1987. 12. 4)

자문을 위한 전문가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원국의 경제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하여 지원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였다.

EDCF 사업평가제도 도입

EDCF 설립과 더불어 한국수출입은행 이사회가 제정한 대외경제협력기금업무 취급규정에는 차주가 제출한 사업완공보고서(Project Completion Report)를 기초로 EDCF가 사업 준비, 실시, 완공 후 유지와 운영 등 사업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당시 규정은 평가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완공사업의 평가 시기 또한 통일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업평가 시기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1990년 3월, 제3회 대외경제협력기금업무 취급규정 개정에서 EDCF는 모호한 평가시기로 인한 업무혼선과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평가를 사업완공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EDCF는 사업완공 후 1년 이내에 차주가 제출한 사업완공보고서와 함께 사업 관련 진



2014년 EDCF 평가워크숍(2014. 10. 30)

행보고서와 현지공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당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수행 내용과 방법, 실제 사업에 소요된 기간, 사업비용, 기타 주요사항 관련 당초 계획대비 실적,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 향후 심사업무와 EDCF 정책에 대한 제언과 개선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사업평가보고서를 차주 또는 사업실시기관 앞으로 통보함으로써 차주의 해당사업에 대한 주인의식과 관심도를 고취시키는 데 활용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해당사업의 운영을 위한 적정 예산 배분과 관리인력 유지·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았다.

1993년 8월에는 'EDCF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업무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사후평가 관련 제도와 조직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여건에 맞는 평가방식을 제시하고, 보고서 구성과 내용을 표준화시켜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발원조의 순환단계에 평가결과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사후평가업무 해설서는 ADB 등의 사후평가 지침을 참고하여 평가절차와 방법, 평가보고서 내용, 평가결과의 환류시스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채택하였다. 그 밖에도 이 해설서는 사업완공보고서 표준양식(Standard Form of Project Completion Report),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개발원조위원회)의 개발원조 평가원칙, 경제성 평가의 기초개념, 사업의 지속성 전망 때의 평가요소 등 관련 자료도 포함하였다.

ODA 운영 이원화에 따른 연계지원체제 마련

1990년대 들어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개발경험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의 원조수요가 증가하였다. 개발도상국 원조에 대한 국내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EDCF 승인 규모도 점차 확대되었다. 아울러 1991년 4월 1일 외무부 산하로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KOICA)이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기능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지원과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 등 경제적 목적의 유상원조사업은 경제기획원 감독 아래 EDCF가 운영하고, 인도적·외교적 목적의 무상원조사업은 외무부 감독 아래 KOICA가 운영하도록 이원화하였다. 이때 상호 연계지원 체제도 마련하였다.

EDCF는 KOICA가 지원하는 사업타당성조사와 기술협력 등 개발조사사업과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등 EDCF가 추진하는 전략국가와의 전략사업이 KOICA의 개발조사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95년 KOICA의 사업타당성조사를 활용하여 베트남 18번 국도 개량 사업을 첫 연계사업으로 지원하였다. 1996년에는 KOICA의 기술협력 지원을 받아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건설사업과 요르단 메다바시 폐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건설사업(1996. 10. 18)



요르단 메다바시 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1996. 12. 27)

3. EDCF의 성장기반 구축

EDCF는 정부 주도 아래 EDCF 운용 활성화와 장기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995년 4월 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중점지원대상 국가를 5개국으로 축소하고, 지원사업 분야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등 원조집중화를 도모하였다. 이듬해인 1996년 4월에는 운용개선방안 수립을 통하여 지역별 거점국가 4개국을 추가로 지정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EDCF 차관의 경쟁력을 높였으며, 1997년 1월에는 지원대상사업을 주요사업과 일반사업으로 운용하는 등 개선 노력을 이어나갔다. 아울러 정부간 협정방식 개선, 차관지원비제도 도입, EDCF 사업 참여대상자 확대 등을 통하여 EDCF 지원제도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OECD 가입 추진과 개발협력 확대 노력 등으로 EDCF 승인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1996년 누적 승인액이 3,000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승인액 중 지역과 분야별로는 아시아 지역과 경제 인프라 건설사업 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EDCF 종합개선방안 수립

정부는 EDCF의 체계적인 운용정책의 부재, 복잡한 지원절차, EDCF 사업심사의 전문성 미흡, 재원 부족, 대외경제협력 수단 간의 유기적 연계 미흡, 국민적 인식 부족, 기금의 사후관리제도 미흡, 제도에 대한 국내의 홍보 부족 등을 EDCF 운용 활성화의 걸림돌로 진단하고 1995년 4월에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1992년에 선정한 중점지원 대상 8개국(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베트남, 폴란드, 케냐, 칠레)을 수출시장 확보와 상호보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개국(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축소하였다.

더불어 국산 자본재의 수출촉진과 수출유발 효과,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기여효과, 성장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진출기반 구축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지원사업 분야를 최초로 전략사업, 준전략사업, 일반사업으로 분류하였다.

전략사업으로는 수출유발 효과가 크고 국산화율이 높은 사회간접자본사업과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통신(TDX, 광케이블 등), 전력(송배전시설, 발전설비 등), 교육(직업훈련소, 연구교육용 기자재 등), 교통(철도 차량 등 수송설비), 보건(병원건립, 의료기자재 공급 등) 등의 사업 분야를 선정하였다. 전략사업의 경우 금리를 0.5% 포인트 범위 내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우대하였으며, 최대지원한도도 국가와 사업을 매트릭스 체계로 분류하여 5,000만 달러, 3,000만 달러, 2,000만 달러 등으로 차등 적용하였다.

준전략사업으로는 일반 사회간접자본사업, 환경개선사업과 기타 경제기반 구축사업을 기준으로 공항·도로·항만·댐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사업, 상하수도·폐기물처리·오염방지 시설 등 환경사업, 건설·광산용 중장비 등 기계장비 확충사업, 산업플랜트 건설 등의 사업 분야를 선정하였다.

일반사업은 비전략사업으로 특별히 지원제한이나 금지사유가 없는 사업으로 하였다. 군사적으로 용도전환이 가능한 사업이나 국제규범에 배치되는 사업은 지원금지 대상사업으로 정하였다.

지원조건인 경우 상환기간은 종전의 기간을 유지하였지만 대출금리는 최빈국은 0.5% 포인트를 인하하였다. 지원절차도 수원국의 지원요청 접수부터 첫 차관대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종전 30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지원절차 간소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였다. 우선 사업 소요시간의 단축과 EDCF 차관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차관약정서와 정부간 협정 등 차관 관련 서류의 표준화 작업과 작성서식을 간소화하였다. 또한 사업준비 차관이나 KOICA 무상자금에 의한 사업타당성조사 시행사업,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e : IFI)와의 협조융자사업, 전략국가의 전략사업 등은 예비심사를 생략하였다.

정부는 1995년에 이어 1996년 4월 EDCF 운용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하였다. 대출금리를 종전의 연 2.0~5.0%에서 선진국 원조기관의 수준인 연 1.0~5.0% 수준으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10~25년(거치기간 5~7년 포함)에서 10~30년(거치기간 5~10년)으로 연장하여 OECD DAC 회원국의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EDCF 차관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또한 1995년 지정한 전략국가 5개국에 미얀마,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카자흐스탄 등 지역별 거점국가 4개국을 추가로 지정하고 지원한도와 금리 등 지원조건에서 우대하였다.

1996년에는 표준차관공여계약서의 국제화를 추진하여 ADB와 WB(World Bank : 세계은행) 등의 표준차관공여계약서 틀과 내용을 참고하고, 수원국의 요구사항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표준차관공여계약서를 대폭 수정하였다. 1998년에는 중국에 대한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중국 원조사업의 특성인 기자재차관과 금융기관을 통한 전대차관 등을 반영한 중국차관용 표준차관공여계약서를 별도로 제정·운용하였다.

이듬해인 1997년 1월에는 지원대상사업을 주요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분류·운용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출유발 효과가 크고 국산화율이 높은 사업을 기준으로 통신사업(TDX 등 전화망사업), 사회간접자본사업(공항·항만 등), 전력사업(송·배전시설, 발전시설 등), 수송설비(철도차량 등), 환경사업(상하수도·폐기물처리·오염방지 시설 등), 보건·위생사업(병원건립, 의료기기 등), 엔지니어링사업(사업타당성조사, 상세설계 등 지원)을 선정하였다. 일반사업은 특별히 지원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없는 사업으로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하였다.

주요사업은 최대 1.5% 포인트까지 차감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우대하는 한편,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소속 그룹에 관계없이 최빈국 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개 사업에 한해 주요사업은 한도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사업만 5,000만 달러로 제한하였다.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생산활동을 지원·촉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자원을 의미하며, 국민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도로·항만·철도·통신·전력·수도 등의 공공시설이 포함된다.

EDCF 지원제도 확충

정부간 협정방식 개선 | 정부간 협정은 양국 정부간의 합의라는 점에서 조약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 1995년 3월 이전까지 EDCF는 차관 사업별로 교환각서(Exchange of Note)를 체결하였다. 교환각서 체결은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하는 조약 체결을 위한 일반적인 국내절차를 모두 거쳤다. 교환각서에는 차주국명, 차관금액, 사업명, 상환기간, 이자율, 인출기간과 수원국의 의무조항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교환각서 체결은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EDCF는 1995년 3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부간 협정(Agreement : A/G)과 시행약정(Arrangement : A/R)을 체결하는 이원적 체제로 개편하였다. 협정(A/G)은 과거 교환각서와 동일하게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일반적인 국내 조약절차를 따르나, 시행약정(A/R)은 외무부 장관의 재가로 체결이 가능하다.

협정(A/G)에는 EDCF 차관 공여사실과 정부보증, 사업 관련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편의제공, 이자수입에 대한 비과세 등 일반적인 차관원칙이 포함되고, 유효기간은 통상 10년이다. 시행약정(A/R)은 개별사업별로 체결되며, 차관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EDCF는 추진사업이 수원국 앞 최초 차관사업일 경우 정부간 협정(A/G)을 체결하되, 해당국가에 대한 차기 지원사업부터는 협정(A/G) 체결 없이 시행약정(A/R)만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차관지원비제도 도입 | EDCF는 그동안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차관형식으로만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사업개발과 추진능력이 미흡하고 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원조기관들은 자국 원조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망사업발굴을 위한 사업준비지원, 사업실시과정에서의 문제해결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후관리지원 등 무상지원 프로그램을 사업과 연계하여 패키지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EDCF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추가적인 지원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EDCF는 1997년 지원사업의 발굴, 실시, 사후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관지원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차관사업을 발굴, 실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하여 개발도상국 정부가 자금과 노하우의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차관지원비를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참여대상자 확대 | 1990년대 들어 국내시장이 포화상태로 진입하자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선진국시장은 해외사업 경험과 기술, 품질수준이 떨어져 진입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고두보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이 때문에 EDCF 설립 초기에는 구속성 원조원칙 이외에는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EDCF의 운용규모가 확대되고 기금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과열경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사업참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하였다.

1995년 4월부터 업체별 수주한도 제한, 분쟁발생 때 조정방법, 업체의 사업발굴에 따른 수주권 보장, 문제유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였다. 업체별 수주한도는 총 승인액의 40%로 제한하고, 특정국가에 연간 4건 이상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개별기업이 해당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절

구속성 원조(Tied Aid) |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 물자와 서비스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 국가로 한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 이상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1997년 10월에는 사업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참여업체 조정방안을 명확히 하였으며, 문제유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보다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국내 기업만 사업참여를 허용하였으나, 우리 국민이 5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서도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업체 조정방안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원국이 차관지원요청서에 지정한 업체를 참여업체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수원국이 차관지원요청서에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별 협회가 자율조정으로 특정업체를 추천하거나 사업의 주무부처 장관이 직권조정으로 참여업체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사업참여업체가 공급물품의 하자로 수원국 정부의 항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서 사업참여를 금지하였다. 덤핑수주 등으로 문제를 유발한 기업은 EDCF가 수원국에 제시하는 공급업체 후보명단에서 제외하거나 독점적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3년 이내에서 차관사업 참여를 제한하였다.

EDCF 지원규모 확대

양자간 원조 확대 | 1993년 초 출범한 문민정부는 OECD 가입과 함께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지원규모를 OECD DAC의 최저수준인 GNI의 0.2%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 수립됨에 따라 EDCF 승인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특히 1994년부터 중국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면서 1995년 연간 기금지원 승인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선 데 이어 1996년에는 승인액이 3,027억 원을 기록하였다.

시장경제 전환국가와의 대외경제협력 증대 | 1991년 말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주의국가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국가의 시장경제 전환과 개방의 가속화는 이들 국가와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1990년 양국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한 이래 경제교류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1992년 8월 정식 수교가 이루어졌다. 베트남과도 1992년 대사급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수립하고 양국간 경제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 구소련 연방인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CIS)과는 1991년 12월 러시아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각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개설하였으며, 경제 관련 협정체결과 정상회담 또는 각료회담을 통하여 상호협력 기반이 확대되면서 EDCF 차관지원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96년 말까지 베트남에는 도로, 상수도, 복합화력 등 3개 사업에 798억 원의 차관지원을 승인하였고, 중국에는 9개 사업에 740억 원의 차관지원을 승인하여 베트남과 중국이 각각 2위와 3위의 EDCF 수혜국가가 되었다. 이 밖에 루마니아가 4위(644억 원), 폴란드가 9위(382억 원)를 차지하는 등 1996년 말까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7개 국가들에게 전체 승인액의 43%에 해당하는 3,042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외경제협력 상대로 부상하였다.

지역별·분야별 지원실적 | 1993년부터 우리나라와 교역 비중이 높고 해외시장 개척 효과가 큰 아시아 지역 중점지원 기조가 형성되면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EDCF 차관 승인액 6,347억 원 중 아시아 지역 지원규모는 4,988억 원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통신망 현대화사업과 헝가리 제철소 현대화사업 지원결과, 동유럽과 CIS국가 지원비중이 13.2%를 차지하였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 지원비중은 5.2%로 이전 시기인 1987년부터 1992년까지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다. 1995년에는 에콰도르의 지방통신망 확충사업을 지원하면서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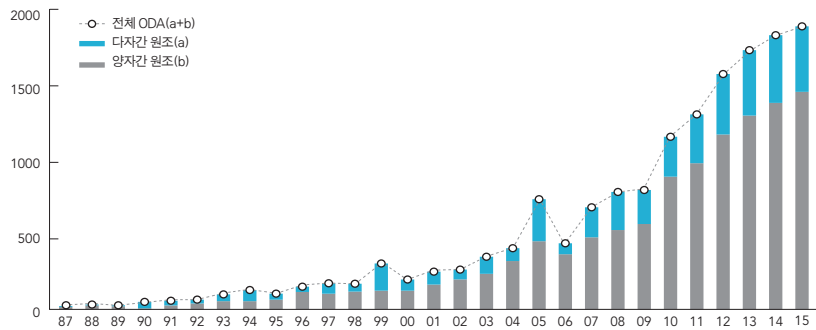
루마니아 프라호바주 통신망 현대화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1994.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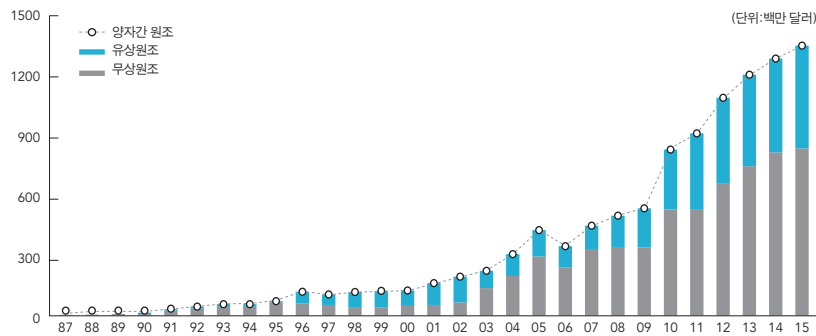
헝가리 제철소 현대화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1996. 8. 26)

분야별 승인 분포를 보면, 교통 부문 28.7%, 통신 부문 23.5%, 에너지 부문 20% 등 경제 인프라 건설사업 비중이 72.3%로 이전 시기에 비하여 크게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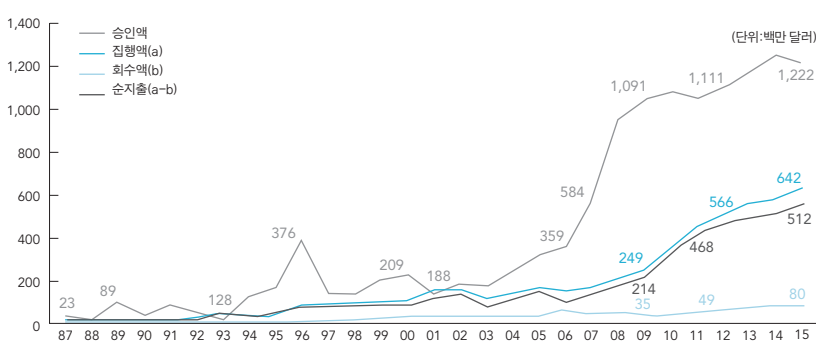
우리나라 ODA 지원 추이(순지출 기준)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 추이(순지출 기준)



우리나라 유상원조 공여 추이



순지출(Net disbursement) 기준 | 지출액에서 회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적개발원조로 집계하는 것으로, 무상원조는 회수액이 없으므로 지출액이 모두 공적개발원조로 계상되나 유상원조는 차관 집행액에서 회수액을 차감한 금액이 공적개발원조로 계상된다.

4. OECD 가입에 따른 EDCF의 변화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OECD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OECD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고 국제사회의 공동 원조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EDCF는 OECD 가입을 계기로 OECD 수출신용협약 규제, 헬싱키 패키지를 포함한 OECD의 각종 규제를 받게 되었다. 또한 EDCF는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차관금리 결정방안, 구축성 원조 규정 준수 관련 검토, 부패방지 지침 제정 등 다방면의 지원제도 개선을 이어나갔으며, 선진공여국으로 구성된 OECD DAC 고위급 회의 등 국제 원조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OECD 가입 준비

1990년대 초반, 냉전 종식과 함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본격적으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여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게 되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결과에 따른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무역장벽 철폐와 자본개방화 방향으로 세계경제 질서가 변화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완화, 개방화, 자유화를 기조로 삼아 세계화 진전이라는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를 우리 경제가 국제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국제경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규모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이를 위하여 1992년 1월 제7차 경제



국회 OECD 가입 비준동의안 처리(1996. 11. 26)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6) |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1962년부터 1981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였으며, 1982년부터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으로 이름을 바꾸어 1996년까지 실시하였다.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6) | 1992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996년까지 추진하였다. 제1차에서 제6차까지 추진한 5개년계획의 실행 성과를 비판하고 수정·보완하는 내용을 계획에 포함하였다. 이전의 경제개발계획의 내용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신경제정책이라고도 한다.

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6년)의 마지막 해인 1996년 말 OECD에 가입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1993년 7월 수립한 신경제 5개년계획을 통하여 1996년 중 가입 추진 의지를 확인하였다.

정부는 1995년 3월 OECD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1995년 11월 해운위원회를 시작으로 가입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어 1996년 9월 OECD 산하 위원회의 검토 보고서가 OECD 이사회에 제출된 후 OECD 이사회는 1996년 10월 우리나라의 가입을 의결하였고, 우리나라는 12월 12일 마침내 OECD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OECD 수출신용협약 준수

OECD 가입을 계기로 EDCF의 운용환경 역시 큰 변화를 맞았다. 가장 큰 변화는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운용에 OECD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이하 OECD 수출신용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1992년 OECD는 구축성 원조가 초래할 수 있는 무역질서 왜곡을 예방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헬싱키 패키지(Helsinki Package)를 제정하여 OECD 수출신용협약에 반영하였다. 헬싱키 패키지는 상업성이 있는(Commercially viable) 사업과 중고소득국에 대한 구축성 원조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서도 구축성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에

는 양허성 수준이 최빈국의 경우 80% 이상, 기타 개발도상국의 경우 35% 또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구축성 원조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도 다른 회원국들이 해당 지원의 OECD 수출신용협약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OECD에 사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증진, 신흥시장 진출 등의 경제교류 효과가 높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 대상 국가를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기업들로 제한하는 구축성 원조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OECD 가입 이후 지원가능 사업과 조건 등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었다.

당시 OECD 회원국들은 구축성 원조 관련 OECD 협약을 준수하면서도 원조를 통한 경제협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운용하고 있어 실제로는 자국 기업들의 원조사업 수행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EDCF 역시 구축성 원조 관련 OECD 협약을 준수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보

OECD 수출신용협약 |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 ECA)들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1978년 4월 OECD 20개 회원국이 제정한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 형태의 비공식규범이다. OECD 수출신용협약은 도입 초기 수출금융의 금융조건에 집중하였으나, 점차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구축성 원조를 포함하였다. 상업적 목적이 강한 수출금융과는 달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 목적이 강한 원조가 자국 기업의 수출을 위한 보조금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ECA | 대출, 보증 등 금융수단을 통하여 자국 기업의 수출진흥과 자국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수입재 거래 등을 지원하는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헬싱키 패키지(Helsinki Package) | 헬싱키 패키지(1992)는 웰런 패키지(Wallen Package, 1987)를 수정·강화된 구축성 원조 지침이다. 웰런 패키지는 구축성 원조의 최소 양허성 기준을 고정할인율(10%)을 활용한 증여율(Grant Element : G.E.)에서 시장환경과 통화별 특성을 반영한 양허수준(Concessionality Level : C.L.)으로 변경하고, 최소기준 역시 증여율 25%에서 양허성 수준 35%로 상향하였다. 이에 더하여 헬싱키 패키지는 상업적 자금 조달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구축성 원조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을 활용한 자금 조달이 어렵고 개발 목적이 강한 사업에 원조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유하고 있는 분야를 지원하고, 다양한 무상협력기관들의 사업타당성조사 사업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우리 원조의 경제협력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EDCF는 1995년 4월 정부가 OECD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전적으로 OECD가 권고하는 대외원조에 대한 규범을 점진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EDCF는 OECD 가입 준비와 국제적인 규범 등을 감안하여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핵심요소이지만 우리 기업이 기술적인 이유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부문이나 수원국의 법령·관행과 여건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비구속성 원조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아울러 1997년 1월에는 비구속성 원조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MDB)이 주관하는 사업에 협조용자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비구속성 원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비구속성 원조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EDCF 관리체계 강화

1996년 OECD 가입과 함께 정부는 EDCF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원화의 상업참고금리(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 : CIR) 결정방안을 마련하였으며, OECD 가입 이전에 지원을 약속한 53개 사업에 대한 향후 지원방향을 수립하였다. 또한 OECD 수출신용협약의 구속성 원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별·사업별 주요 제약사항, 지원사업의 상업성 여부 분석 등

을 검토하였다. 국제금융기구와 다른 원조기관이 부패방지지침을 도입하였고, OECD 역시 2000년에 뇌물제공 행위와 공적수출신용에 관한 행동선언문에 합의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EDCF도 이를 감안하여 2001년 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 중 하나로 '경협기금지원사업 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한편 정부는 선진공여국으로 구성된 OECD DAC 가입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1996년 당시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작고, 원조에 대한 대국민 지지기반이 취약하였다. 이런 현실적 제약 아래서 정부는 OECD DAC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원조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OECD DAC 가입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만 OECD DAC 비회원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회의 등 국제 원조논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원조의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MDB) ¹ 다자개발은행 혹은 국제금융기구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차관의 형태로 지원하거나 전문적인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기구이다. 주요 MDB로는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 : WB),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IDB),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 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 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EBRD) 등 5개 기구가 있다.

| 1998 - 2009 |

제2장 EDCF 성장기반 확충

1. IMF 외환위기와 EDCF의 대응
2. EDCF 지원제도 정비
3. MDGs 체제의 등장과 변화
4. 능동적 사업발굴체제 도입
5.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확립
6. EDCF 사업평가제도 개선
7. MDB와의 협조체제 구축

1. IMF 외환위기와 EDCF의 대응

1990년대에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던 우리나라 경제는 국가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19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IMF 외환위기는 EDCF에도 엄청난 파장을 미쳐 5년간 정부의 재정출연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에 따라 EDCF 차관지원 승인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EDCF는 대외경제협력사업이 국가간 약속임을 인식하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보충용자제도와 원화차관제도 개선 등 재원문제뿐만 아니라 원화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안하였다.

IMF 외환위기로 기금출연 중단

1990년대 중반까지 연 5~9%의 안정적이고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던 우리나라 경제는 1996년 이후 둔화세를 보였다. 거기에는 중복 과잉투자로 수익성이 떨어졌던 기업들의 부실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1997년 들어서면서 기업의 연쇄 부도가 발생하였다.

외환시장에서도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외자유입이 부진하면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1997년 10월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



IMF 구제금융 요청을 공식 발표하는 임창렬 당시 경제부총리(1997. 11. 21)



IMF 외환위기 이후 종합주가지수 300포인트 붕괴 (1998. 6. 18)

고, 이에 따라 외국자본이 대량유출됨으로써 국가적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였다. 결국 정부는 11월 21일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고, 12월 24일 IMF와 선진 8개국이 100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약속하면서 국가부도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다.

IMF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적인 유동성 위기로 EDCF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여력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 결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EDCF의 가장 주요한 재원조달 수단인 정부 재정출연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2003년에서야 IMF 외환위기가 진정되고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같은 해 12월에 정부의 재정출연이 재개되어 800억 원이 신규로 출연되었다. 이후 3년간 3,200억 원의 정부출연금에 납입되어 2006년 말까지 1조 9,238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내부정비로 위기 극복

IMF 외환위기로 인한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기금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되면서 EDCF 차관지원 승인규모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IMF 외환위기 원년인 1997년 승인액은 947억 원으로, 전년 승인액인 3,027억 원의 1/3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또한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외환위기 이전에 승인이 이루어졌던 원화로 표시된 사업 승인금액을 달러로 전환하면 실질적으로는 당초 계획하였던 지원규모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추진하기로 승인하였던 사업에서 사업비 부족 현상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

EDCF는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보충용자제도를 도입하였다. 보충용자제도는 지원방침 결정 당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당초 승인하였던 지원금액으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

EDCF 지원실적 추이(1997~2009)

(단위: 억 원)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승인액	947	1,078	1,794	2,428	1,145	1,166	1,627
집행액	724	1,426	1,267	1,012	1,653	2,050	1,370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승인액	2,222	3,006	3,636	6,413	9,699	11,686	46,847
집행액	1,555	1,643	1,361	1,553	2,371	3,128	21,113

였다. 다만 사업비가 부족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보충용자를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범위 조정이나 수원국 자체재원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당초 지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보충용자를 지원하였다.

한편 EDCF는 사업 내용 못지않게 환율로 인한 사업비 변동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다. 보충용자제도 도입과 더불어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차관한도의 30% 범위 내에서 차관승인 시점에 확정된 환율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0년 10월 원화차관한도 환산 시점을 당초 차관공여계약 체결 시점에서 구매계약 체결 시점으로 변경하였다.

보충용자제도와 개선된 원화차관제도 등 보완조치의 시행과 원화 환율의 안정화에 힘입어 원화차관 한도 부족 현상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기금 지원규모 확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EDCF는 경제협력사업이 국가간 약속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대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EDCF는 정부 재정출연 중단기간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 7,611억 원을 승인하였다. 특히 연평균 승인액은 1,522억 원으로, 이전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연평균 승인액 1,269억 원보다 오히려 증가하였다. 아울러 OECD 가입 준비과정에서 증가한 지원 결정사업 관련 집행이 이루어져 2002년에는 EDCF 설립 이래 처음으로 집행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섰다.

2003년 정부 재정출연 재개 이후 EDCF 승인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3,000억 원, 2007년 6,000억 원, 2009년 1조 원을 돌파하였고, 집행규모도 승인규모와 연동하여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지역별 승인 분포를 보면, 아시아 지역 지원비중이 69.4%를 기록하여 이전 시기에 비하여 지원편중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아시아 중점 기조를 유지하였다. 다만 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 지역에 대한 승인 비중이 각각 15.9%, 6.4%, 5.1%를 차지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비중이 확대되었다.

분야별 승인비중을 보면, 교통 부문 39.6%, 통신 부문 7.0%, 에너지 부문 8.0% 등 경제 인프라 건설사업 비중이 54.6%로 이전 시기에 비하여 크게 낮아졌다. 또한 수자원·위생 부문에 대한 지원확대가 두드러져 지원비중이 16%로 대폭 상승하였고, 보건과 교육 부문 지원비중이 각각 11.2%와 8.9%로 증가하는 등 사회 인프라 건설사업 비중이 40.4%에 달하여 선진형 개발원조에 한 발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DCF 최초의 채무재조정

IMF 외환위기가 우리나라만 강타한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소위 '아시아 외환위기'라고 지칭하듯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외환위기로 국가 재정 악화와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다. 외환위기로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진 국가들에 대하여 선진국 공적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Paris Club)은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9월 23일 파리클럽은 인도네시아의 공적채무에 대하여 상

환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우리나라는 파리클럽 회원은 아니었지만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파리클럽의 상환기간 연장 합의에 임시참가국(Ad Hoc Member) 자격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과 이동식 직업훈련사업은 EDCF 최초의 채무재조정사업이 되었다. EDCF는 1998년 파리클럽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1999년 3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이들 사업에 대한 수정 차관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장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년치 상환분인 약 19억 8,000만 원에 대하여 3년 동안 상환을 유예하여 주고 상환기간도 20년으로 연장하였다.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하여 원리금을 꾸준히 상환하고 있다.

파리클럽(Paris Club)¹ 개발도상국의 공적채무구제를 위하여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채권자 클럽(Credit Club)이다. 최초의 외채조정작업은 1956년 파리에서 아르헨티나의 정부보증 외채의 상환기간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2. EDCF 지원제도 정비

EDCF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끊임없이 지원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지원대상사업을 중점지원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분류하여 운용하였다. 비구속성 원조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신용과 결합한 혼합신용 지원도 추진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의 수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낙찰조건부 지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원사업의 발굴과 실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차관지원비제도도 도입하였다. EDCF 지원사업의 사업진행 관리제도 도입, EDCF 지원사업 참여대상자 확대, 사업참여자 선정방식의 경쟁입찰 원칙 확립, 기금 지원사업 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지침 제정 등 지원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지원대상사업의 분류 운용

2000년 7월에는 지원대상사업을 중점지원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분류하였다. 중점지원사업 분야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계획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수출유발 효과가 크고 국산화율이 높은 사업,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과 재외동포의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일반사업은 특별히 지원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없는 사업으로서 기타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하였다. 한편 중점지원사업에 대

중점지원사업 분류

분야	세부내용
사회간접자본	도로, 항만, 공항, 수송 등
통신	전화망사업(TDX, CDMA 등), 정보통신장비 등
교육/보건·위생	병원건립, 의료기기공급, 교육·훈련, 상하수도 등
환경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오염방지시설 등
에너지	발전, 송배전, 변전 등
엔지니어링	사업타당성 조사, 상세설계 등
지식기반	소프트웨어 등

한 금리우대를 폐지하는 대신 금리를 대폭 인하하였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주요사업의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사업에 대하여서만 5,000만 달러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차등화하였다.



캄보디아 캄포트-트라판포포 도로 개보수사업 (2002. 10. 19)

2006년 1월에는 '2006~2009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전략계획'의 일환으로 분야별 지원전략을 수립하였다. 국제사회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 달성에 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개발계획상 우선순위가 높으며,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점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성장동력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등 개발도상국과 상호 호혜적인 대외경제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지원대상사업을 정보통신, 교통, 에너지, 보건, 환경, 인적자원개발 등 6개 분야로 분류하고 정보통신 분야를 최우선지원 분야로 선정하였다.

분야별 지원전략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수요와 우리의 비교우위를 감안하여 IT서비스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에너지와 교통 등 경제 인프라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밀집한 지역 등을 중점지원하여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전력과 교통수단 등의 경우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구축성 원조가 가능한 비상업성 사업을 선별하여 적극 지원하고, 보건과 환경 그리고 교육 등 사회 인프라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중점지원 분야로 관련 서비스 수출의 토

새천년개발목표(MDGs)¹⁾ ①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③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권리 보장, ④유아사망률 감소 ⑤모성보건 증진 ⑥HIV/AIDS, 말라리아와 기타 질병 퇴치 ⑦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⑧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예멘 통신망 확충사업(2003. 2. 26)

대가 된다는 점에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비구속성 원조 허용범위 확대

2006년 1월에는 OECD DAC의 권고에 따라 EDCF는 운용전략계획의 일환으로 비구속성 원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기업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구속성 원조의 원칙을 완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면서도 국가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구속성 원조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사업 준비(사업타당성조사·설계 등)를 위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상세설계 등에 적용하여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업개발지원비 예산을 확충하고, KOICA 등 다른 기관과의 사업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 F/S)와의 연계도 강화하였다.

또한 당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방식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부응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한 해외 현지법인의 요건을 완화하여 우리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

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자회사)이 현지 출자한 외국법인(손회사)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차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우리 국민이 50% 이상 출자한 외국법인만을 사업참여대상으로 하였으나, 해당 외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으로서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그 경영성과가 우리 국민에게 귀속되는 외국법인도 참여 대상에 포함하였다.

2006년 6월에는 원산지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EDCF 자금으로 실시되는 사업 부문으로서 외화소요비용으로 구매되거나 고용되는 재화의 원산지와 컨설턴트의 국적은 우리나라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비경제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제3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수출신용과 결합한 혼합신용 지원

EDCF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고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는 한계

수출신용과의 혼합신용 지원실적

(단위 : 백만 해당통화)

승인연월	국가명	사업명	EDCF	수출신용
1996.12	필리핀	라군딩간 공항개발사업	USD25.0	USD62.8
2000.10	스리랑카	골광역시 상수도개발사업	USD26.7	USD6.7
2003.12	필리핀	남부마닐라 통근철도사업	USD35.0	USD15.4
2005.4	터키	전동차 구매사업	USD50.0	USD10.3
2017.2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 ¹⁾	EUR243 ²⁾	EUR75

※주 : 1) 해당사업은 낙찰조건부 지원제도 사업으로 입찰통화에 맞추어 유로화로 차관통화 표시

2) OECD 기준 2017년 1분기 기준환율(EUR1=USD1.0661)

혼합신용(Mixed Credit)¹⁾ 원조자금인 EDCF 차관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Export Credit)을 혼합하여 금융조건을 양호하게 지원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원조자금을 자국의 수출증대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증가 없이 자국산업에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스리랑카 골광역시 상수도개발사업(2000. 10. 25)

가 있었다. 그래서 혼합신용(Mixed Credit)제도를 도입하여 EDCF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을 수출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당시 개발도상국이 추진하는 경제·사회 인프라 사업의 규모가 증대되고 있고, 우리 기업이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려면 경쟁력 있는 금융조건 제시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EDCF의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금융과 결합한 혼합신용을 제공하였다.

1996년 12월 필리핀 라곤당간 공항개발사업에 최초로 혼합신용을 제공한

이래 지금까지 5개 사업에 EDCF 3억 9,570만 달러, 수출신용 1억 7,520만 달러 등 모두 5억 7,09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혼합신용은 통상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요건에 부합하는 국가와 사업을 대상으로 주로 채무상환 위험



필리핀 남부마닐라 통근철도사업(2003. 12. 29)

도가 높은 최빈 개발도상국보다는 중소득 개발도상국이 추진하는 프로젝트형 사업에 주로 지원되었다.

낙찰조건부 지원제도 도입

EDCF는 구속성 원조의 경우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지원방침을 결정하고, 정부간 협정을 체결한 다음 우리 기업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를 경우,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수주한 사업에 대하여 EDCF가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1998년 12월 개발도상국 정부가 실시하는 개발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우리 기업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조건으로 정부 지원방침을 결정하고, 입찰 결과 우리 기업이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 차관을 제공하는 낙찰조건부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개발도상국 정부가 실시하는 국제경쟁입찰에서 입찰경쟁국이 자국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혼합신용 등의 파격적인 금융조건을 제시할 경우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 6월에는 경쟁국이 혼합신용 방식이 아닌 개발사업차관만으로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낙찰조건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기반 확충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치열한 국제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지원한 터키 전동차 구매사업(5,000만 달러)과 2017년 2월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2억 4,300만 유로)을 우리 기업이 나란히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사업진행 관리제도 도입

일반적으로 EDCF가 지원한 사업은 대부분 인프라 구축사업이어서 사업기간이 장기간이었다. 따라서 사업실시 중에도 해당사업의 진행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실시기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조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열쇠였다.

EDCF는 차관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사업실시기관으로부터 사업진행보고서를 받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이 계획보다 1년 이상 지연되거나, 기술 또는 자금 등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분류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범위 또는 사업비용의 조정, 기술자문, 차관금액의 변경, 차관지원 조건의 변경 또는 채권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업참여자 선정의 경쟁입찰 원칙 확립

EDCF 설치 초기에는 해외 네트워크가 갖추어지지 않아 우리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사업을 발굴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기업이 사업을 발굴한 다음 개발도상국 정부가 차관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사업 연고권을 인정하여 직접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EDCF 주도의 사업발굴체제가 정착되지 않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업의 사업발굴권을 인정한 것이다.

국제원조사회는 원조효과성을 높이고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원칙을 확립하였다. OECD DAC은 국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MDB)와 선진국 원조기관들은 긴급성, 경제성, 효율성, 호환성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계약을 허용하고 있었다. 또한 OECD 등 국제사회가 주도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에서도 개발도상국의 구매체제 개선을 주요지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에 발맞추기 위하여 EDCF는 2000년 7월 사업참여자(우리 기업)의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확립하였다. 기업의 사업발굴권

을 인정하여 직접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원국 정부가 차관지원요청서에 계약희망 업체를 특별히 지정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수원국 정부와 우리 기업과 직접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EDCF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2006년 6월에는 사업참여자 선정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더욱 강화하여 규정에 반영하였다. 직접계약은 국제기준을 준용하여 긴급성, 특히, 경제성, 연속성, 호환성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였다.

또한 EDCF는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협의 활성화,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최우선지원국에 주재원 파견, 차관사업진행 컨설팅을 통한 사업 준비 무상지원 등으로 직접 우량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발굴을 기업에 의존할 필요성이 없어지자 EDCF는 기업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업참여를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중소기업 참여확대 위한 소액차관 도입

소액차관은 소규모 EDCF 차관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EDCF 지원사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2007년에 도입한 규모 700만 달러 이하 소규모 차관을 말한다. 소액차관은 EDCF 초기부터 지금까지 활발하게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신청, 심사, 구매 등 제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소액차관은 컴퓨터 등 직업훈련원 교육기자재, 디지털 X-Ray와 MRI 등의 의료기자재, 중소기업 유망 분야로 간주되는 교육과 의료 관련 분야에 주로 지원되고 있다. 구매방법은 대한민국 적격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 방식 중 차주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컨설턴트 고용지침 개정

기존 EDCF 컨설턴트 고용지침은 차관사업의 심사과정, 즉 사업타당성조사에 참여한 기술전문가가 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차주의 컨설턴트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지침은 사업타당성조사에 참여한 우수한 기술전문가 소속업체가 개발사업 준비과정의 컨설턴트로 고용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우수업체들이 EDCF 차관사업 사업타당성조사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을 야기하였다. EDCF가 엄격하고 치밀하게 차관사업을 심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타당성조사에도 제약이 발생하였다.

이에 EDCF는 1999년 12월 컨설턴트 고용지침을 개정하여 차관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에 참여한 민간 컨설턴트 기업이 개발사업 준비를 위한 차주의 컨설턴트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 경우에도 해당사업의 본구매 공급자로 참여하는 것에는 여전히 제한을 두어 기술전문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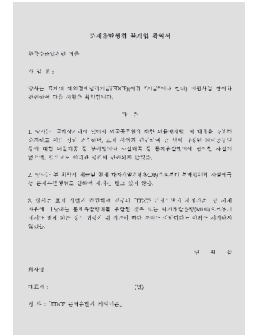
지원사업 부패방지 위한 지침 제정

부패방지를 위한 지침도 제정하였다. WB와 ADB 등 국제개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원조기관이 원조공여 관련 부패방지를 위하여 지침 제정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OECD는 1997년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채택한 이후 2000년 12월 '뇌물제공 행위와 공적수출신용에 관한 행동선언문'에 최종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EDCF도 2001년 10월에 기금지원 사업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경험기금 지원사업 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또한 EDCF는 OECD의 '공적수출신용과 뇌물에 관한 권고' 이행 등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고, 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유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구매와 컨설턴트 고용 등 사업 관련 입찰참여자로부터 '문제유발행위 불개입 약속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업실시기관의

해당 사업 책임자에게 '구매 및 컨설턴트 고용 윤리헌장'을 통보하는 한편, 동의서명을 받아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차주국 정부가 관련 정보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차관공여계약서에 반영하여 지원사업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2015년 9월에는 원활한 사업진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입찰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제유발행위 제재대상, 제재사유와 제재기간 등을 구체화한 'EDCF 문제유발자 제재기준'을 제정하여 현재까지도 이를 엄정히 시행하고 있다.



문제유발행위 불개입 약속서

3. MDGs 체제의 등장과 변화

2000년 9월 UN에서 개최한 새천년정상회의에서 189개 회원국은 범세계적인 새천년선언에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MDGs 체제 등장에 따라 대외원조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단기간에 ODA 규모 증대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그 결과 개선방안은 우리나라 양적 ODA 규모 확대와 질적 제도 개선에 큰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상당부분 제도화되었다.

MDGs 체제의 등장

2000년 9월 UN에서 개최한 새천년정상회의(Millennium Summit)에서 189개 회원국은 평화·번영·정의가 충만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범세계적인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를 수립하였다. 이는 이후 ODA 규모 증대 선언으로 이어졌고, 1990년대 감소하여오던 ODA 규모가 증가되기 시작하는 반전의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MDGs가 전 세계 개발 분야를 포괄하는 상위 계획으로 확정되면서 이후 개발에 대한 논의나 개발사업이 통일된 틀을 갖고 진행될 수 있었다.

새천년개발의 목표와 정신은 UN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앞으로 국가개발을 위하여서는 재원 확충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200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방식과 자연자원 관리 같은 지속가능발전방안을 논의한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2002) 등으로 계승되었다. 원조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로마선언(2003)과 파리선언(2005)이 개최되면서 MDGs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MDGs는 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목표, 성과 측정에 활용되는 6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MDGs의 8개 목표는 ①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③양성평등 촉진과 여성권리 보장 ④유아사망률 감소 ⑤모성

보건 증진 ⑥HIV/AIDS, 말라리아와 기타 질병 퇴치 ⑦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⑧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었다.

MDGs의 주요 성과는 명확하고 간결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치인과 일반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발협력 분야의 거시적 목표로 MDGs는 국제개발협력기관 지원전략 수립의 기준점이 되었다. 예를 들어 저소득국이 개발원조를 받기 위하여 WB와 IMF에 제출하여야 하는 빈곤감축 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 PRSP)와 국제개발협력기관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MDGs를 인용하며 자원배분계획을 제시하였다.

MDGs 수립과 우리나라의 대응

2000년에 수립된 MDGs의 연장선상에서 2002년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WSSD)에서는 선진국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ODA 수준(GNI의 0.7%)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2000년 당시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는 0.06%로 일부 선진공여국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여 경제규모에 걸맞은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PCSD)에서 2002년 대외원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04년에는 대외원조 개혁과제와 대외원조정책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정부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후속조치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가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계획하고 추진시켜나가기 위한 다자협의기구로, 국제회의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국가차원에서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가보고서를 매년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UNCSDD)에 제출하고 있다.

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를 분석하여 향후 원조정책의 개선방안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주요 ODA 정책 개혁방향으로 △한국형 국제개발협력모델과 원조이념의 정립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선진화 △국민참여와 지지확대를 설정하였고, 개혁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원조철학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국형 국제개발협력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대외원조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개발도상국 원조를 본격화하기 위하여서는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원조정책의 체계적인 운용방향과 제도개선이 선결과제였다. 이에 국별 지원계획 작성, 개발조사사업 강화, 원조사업의 패키지화를 위한 업무제휴 강화 등 효율적인 ODA 운용방안을 강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와 지지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과 투자에서 50% 이상을 개발도상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는 단순한 의무 또는 경제적 비용으로 간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2003년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52.6%가 우리나라 원조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시급한 과제인 ODA 규모 증대를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우리나라 ODA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위하여 중장

기 추진안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ODA 정책, ODA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고, ODA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원조정책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구체적으로 ODA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사회여론층인 기업체와 주요 대학에 ODA 관련 강연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ODA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정부와 대학교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ODA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개진의 장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원조정책의 단계별 개혁안

구분	원조정책의 개혁기	원조정책의 도약기
설정기간	2003~2006년	2007~2010년
주요목표	ODA/GNI 비율 0.1% (매년 20% 이상의 예산 증액)	ODA/GNI 비율 0.2%
중점목표	ODA 배증계획 추진 ODA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 국민참여와 NGO 지원 확대 원조정책의 일관성 확보	OECD DAC 가입 추진 ODA의 질적 개선 도모

※자료 : 대외원조정책 개선방안(2004,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4. 능동적 사업발굴체제 도입

EDCF는 자금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EDCF와 개발도상국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사업 발굴을 위하여 능동적 사업발굴체제를 도입하였다. 국가간 정책협의를 통하여 EDCF와 수원국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정부간 기본약정 체결을 통하여 보다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EDCF 주재원을 파견, 개발도상국 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우량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도상국 정부와의 정책협의를 활성화

개발도상국은 그동안 EDCF의 정책방향과 운용기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없이 자국의 개발사업 수요만을 고려하여 차관사업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 지원이 보류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나 사업 준비가 미진한 사업을 EDCF에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가 축소되자 EDCF는 사업발굴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기업이 발굴한 사업의 경우 사업참여자를 선정할 때 연고권을 인정하는 문제로 분쟁이 야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 따라서 자금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EDCF 주도

의 사업발굴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EDCF는 1999년부터 개발도상국 정부와 활발히 국가간 정책협의(Policy Dialogue)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의존하는 수동



베트남과의 정책협의(2007. 7. 10)

개발도상국 정부와의 정책협의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가	18개국	18개국	11개국	13개국	15개국	11개국
횟수	18회	18회	11회	13회	16회	11회

적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EDCF가 주도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사업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EDCF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다.

정책협의를 EDCF의 지원규모, 중점 지원분야, 지원절차를 우선 소개하고,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개발계획, 개발사업의 우선순위, EDCF 지원 희망사업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 정부와 심도 있는 협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국의 이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정책협의를 시행 초기 우리나라와의 대외경제협력 잠재력이 높은 중점지원 국가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점차 일반지원국가로 확대하였다. 2011년 이후 35개국과 87회의 정책협의를 가져 베트남 홍하교량 건설사업 등 27개국에서 51개의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간 기본약정(F/A) 도입

EDCF 도입 초기에는 모든 개별 EDCF 사업은 대통령이 재가하는 교환각서를 체결하였으나, 1995년부터 수원국과 외무부 장관이 재가하는 EDCF 협정(Agreement : A/G)을 체결하고, 개별사업은 시행약정(Arrangement : A/R)으로 정부간 협정 방식을 변경하였다.

2006년 1월에는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중점지원국은 다년간 지원한도와 지원조건을 규정한 '정부간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 : F/A)'을 체결하고, 개별사업은 시행약정(A/R) 없이 EDCF의 차관계약(Loan Agreement : L/A)만으로 차관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였다. 정부간 기본약정(F/A) 체결을 통하여 보다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여졌다.



한-가나 정부간 기본약정(F/A) 체결(2017. 3. 29)

해외주재원 파견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개발도상국 요청에 의한 수동적 사업발굴 방식에서 EDCF 주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발굴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경쟁입찰 원칙을 정립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무방식이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 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량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구매절차 지원과 사업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관리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현지에 주재원을 파견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EDCF는 '2006~2009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전략계획'에 따라 사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통한 차질 없는 기금집행을 위하여 중점 지원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개발도상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DCF 주재원은 현지 정부와의 정책협의 지원, 신규사업의 발굴과 개발, 구매절차 지원 등 사업관리, 완공사업 모니터링, 현지 공무원 대상 EDCF 업무안내, 주재국의 외자도입과 사업시행 관련 제도 조사, 주재국의 정치·경제 동향 조사

등을 담당한다.

EDCF는 2006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주재원을 파견한 이래 2016년 말까지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12개국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현지사무소 개설을 위한 개설준비위가 파견되어 있다.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확대

EDCF는 2005년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행정단지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는 국내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하였다.

EDCF는 2016년까지 교통 분야 44건, 수자원·위생 32건, 공공행정 16건, 교육 15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146건의 사업타당성조사를 지원하였다.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국내 업체는 해외사업 실적을 축적하고 EDCF 사업 외에도 개발도상국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사업타당성조사는 EDCF 사업의 성공적 수행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양골라 영양개선사업 사업타당성 조사 수행관련 현지회의(2006. 9)

5.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ODA 공여 역사가 길지 않아 우리나라 전체 ODA 방향을 설정하고 이끌어갈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부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5년 11월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유·무상원조정책을 총괄하는 심의기구를 신설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EDCF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개발협력 분야 최고 정책기구 아래 집행기관으로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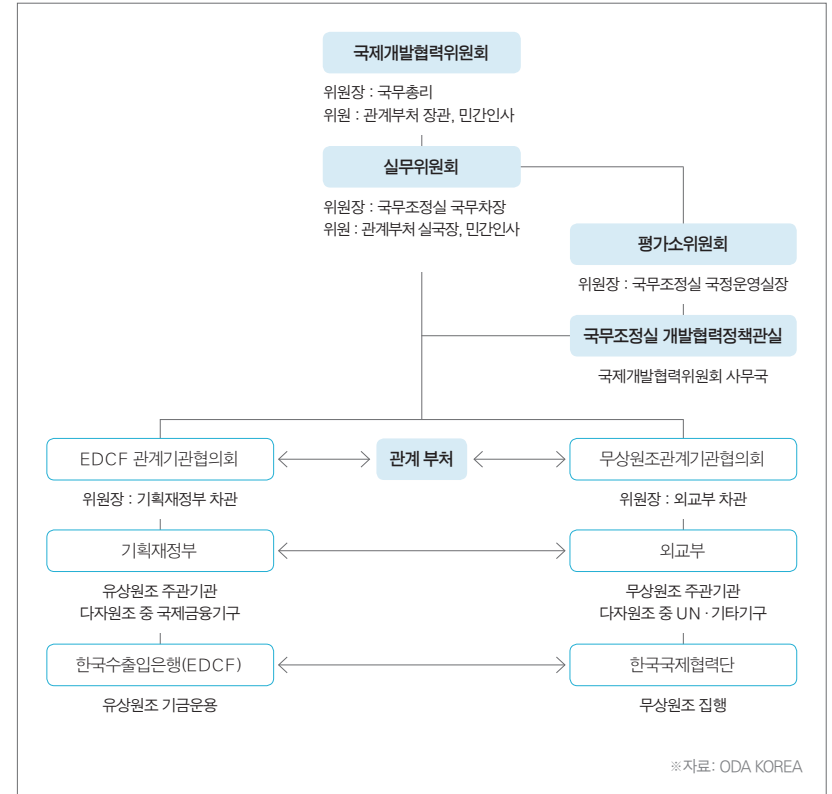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신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개발도상국과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들 국가의 빈곤퇴치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2006년 초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05년 11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과 2006년 1월 26일 제정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장관급, 한국수출입은행장과 KOICA 이사장, 민간위원 등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주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과 전략의 수립,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등에 관하여 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실무위원회는 기본법 제7조 6항에 의거 국무차장을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간사위원으로 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미리 협의, 조정하며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할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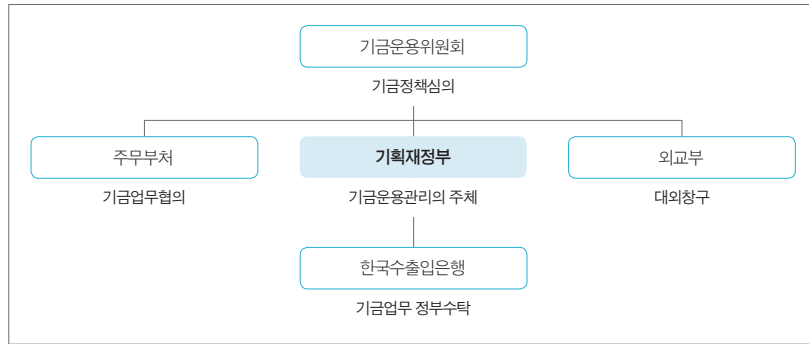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자문위원회 구성

기금운용위원회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기금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하여 외교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대외경제협력 관련 10개 정부부처 장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국가정보원 제1차장,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KOICA 이사장 등으로 구성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EDCF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기금운용계획, 결산

기금운용위원회 운용조직과 체계



보고사항, 미수교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관한 지원방침의 결정, 기금운용관리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실무위원회 운영

경협사업심의위원회 | EDCF는 2005년 8월 28일 이사회 의결로 대외경제협력기금업무 취급규정을 개정하면서 일부 업무절차를 변경하였다. 기존에 이사회에 보고한 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던 대외경제협력사업 심사보고서를 경협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업무절차를 변경하였다. 2006년 8월에 발족한 경협사업심의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담당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련 부서장, 해외경제연구담당부서 팀장, 중장기 여신담당부서 팀장 등이 참여한다. 지원대상 사업의 심사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된 경협사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확

정한다. 위원회에서 확정된 심사보고서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고한 후 정부의 지원방침을 받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구매관리실무협의회(現 구매관리심의위원회) | 구매관리실무협의회는 2006년 7월 12일 한국수출입은행 이사회 의결을 통한 대외경제협력기금업무 취급규정 개정으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EDCF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구매와 컨설턴트 고용 관련 업무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EDCF 내에 설립되었다. 의장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담당 본부장이 맡으며, 위원으로 EDCF 소속 부서장과 팀장이 참여한다.

주요 심의사항은 차주의 구매와 컨설턴트 고용계획에 대한 동의 여부, 차주의 사전적격 심사와 계약체결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 차주의 구매와 컨설턴트 고용 관련 민원제기 사항의 처리방안, 기타 기금의 구매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구매관리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결과는 협의 종료 후 대외경제협력기금 담당 본부장 보고를 통하여 확정한다.

소액차관심의위원회 | 2009년 8월 소액차관운용지침을 토대로 시작하여, 2017년 6월 15일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세칙' 개정에 따라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액차관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EDCF 사업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액차관을 간소화된 절차로 심의하기 위하여 EDCF 내에 설립되었다. 의장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사업담당부서장이 맡으며, 기금기획담당부서 팀장, 해당사업담당 팀장, 기금지원담당부서 팀장, 해외경제연구담당부서 지역연구 담당팀의 선임 또는 책임조사역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원대상 사업의 심사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회에서 확정된 심사보고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여유자금 운용 성과평가위원회(現 여유자금운용 자산운용위원회) | EDCF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005년 7월 27일 의결을 통하여 EDCF 자산운용지침을 신설하고 EDCF 여유자금 운용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조성, 지출현황, 금융시장 동향, 금융상품별 투자현황과 운용수익률, 목표수익률과 기준수익률 대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수익률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기획재정부 기금담당 공무원, 리스크관리단 기획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외부전문가가 맡고 있으며,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한다.

EDCF 여유자금 운용 위험관리위원회 | 2005년 7월에 기금운용위원회는 자산운용현황과 운용자산의 주요 변동사항, 예치 금융기관 집중도 현황, 보유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등 신용위험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EDCF 여유자금 운용 위험관리위원회를 함께 신설하였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기획재정부 기금담당 공무원, 경험기획담당 부서장, 자금부 부서장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외부전문가가 맡으며, 분기별 1회 개최한다.

경협평가심의위원회 | 경협평가심의위원회는 2007년 9월 한국수출입은행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업무 취급규정을 개정하면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 심의사항은 사후평가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해당사업에 대한 평가등급의 적정성, 사후평가보고서의 충실도, 사후평가보고서와 관련된 기타 사항 등이다.

위원장은 대외경제협력기금담당 본부장이 맡고, 경험기획담당 부서장, 경험지원담당 부서장, 경험사업담당 부서장, 경협평가담당 팀장, 해당사업 분야 기술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경협평가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평가보고서 안건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EDCF 중기 운용전략 수립과 시행

우리나라 경제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경쟁국이 ODA 확대를 통하여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함에 따라 EDCF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6~2009 대외경제협력기금 중기 운용전략'을 수립·시행하여 개발도상국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대외경제협력력을 추구하여 선진 통상국가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중기 운용전략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1조 9,400억 원의 지원규모 승인을 목표로 하였으며, 실제로 4년 동안 3조 1,434억 원을 승인하면서 목표치에 도달하였다. 또한 지역별·국가별 중기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중점지원분야를 선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비구속성 차관 대상 확대, 외화표시 차관 지원절차 간소화, 지원조건 다양화 등 지원방식 다양화를 통하여 수원국 맞춤형 지원 환경을 조성하였다.

EDCF는 2016년 4월에 수립된 '2016~2020년 EDCF 국별 사업운용계획'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약 9조 1,000억 원 승인을 목표로 중점 분야와 지역별 상세 분배계획 아래 매년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계획의 기본방향은 아시아 최우선 기조를 유지하되 ODA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아프리카 지원을 증대하고, 지역별 특성과 EDCF 지원효과에 따라 지역 내 국별지원 비중을 탄력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부족한 재원은 EDCF의 다양한 금융수단(혼합신용, 개발금융, MDB 협조융자 등)을 활용하여 보충하고, MDB 협조융자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 KSP) 사업연계를 통하여 양질의 사업을 발굴하고자 한다.

6. EDCF 사업평가제도 개선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시,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판단활동이다.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는 원조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고 사업 전단계의 성과 향상과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EDCF 재원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그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 EDCF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운영의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다. 평가제도는 이러한 의의를 보다 명확히 갖추기 위하여 EDCF 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여왔다. EDCF는 사업평가를 완공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담당 전담 팀 신설과 성과평가지표 설정을 통하여 사업평가제도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업평가제도 정비

한국수출입은행은 2002년 4월 대외경제협력기금업무 취급규정을 개정하고 기존 사업완공보고서 접수 후 6개월에 한 차례만 실시하였던 사업평가를 사업 완공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EDCF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완공시점(사업완공보고서 접수 후 6개월 이내)과 완공시점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의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

2005년 2월 제13회 대외경제협력기금업무 취급규정 개정에서는 단일용어로 사용되던 사업평가를 완공평가와 사후평가로 각각 구분하고, 완공평가는 사업완공 시점에, 사후평가는 완공평가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후평가 대상도 차관승인 규모 2,000만 달러 이상 사업으로 정하여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차주가 사업완공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에도 완공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지출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완공평가를 실시하도록 보완하였다.

평가전담팀 신설과 성과평가지표 설정

2007년 1월 EDCF는 사업평가 전담팀을 신설하여 평가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같은 해 4월에는 성과평가의 효과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고자 사업 준비 단계에서 달성 목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 EDCF와 수원국 정부가 공동

번호	평가년도	평가종류	평가보고서제목	국가정보	영문보고서	영문보고서	발간년월
44	2005	주제별	방글라데시 일대시안 영향력평가	다양화도	호	다양화도	2005.10
43	2005	사업별	스리랑카 광역리더-유능리더와 도로 개선사업 사후평가	다양화도	호	다양화도	2005.10
42	2005	사업별	방글라데시 철도기공과 주택사업(2차) 사후평가	다양화도	호	다양화도	2005.10
41	2005	사업별	네팔과 직할현은도 확충사업 사후평가	다양화도	호	다양화도	2005.10
40	2005	주제별	직할현현은도 성과평가지표 수립을 위한 평가	다양화도	호	다양화도	2005.10
39	2005	사업별	미얀마 전자정부 구축사업 사후평가	다양화도	호	다양화도	2005.10
38	2005	분야	전자정부분야 종합평가	다양화도	호	다양화도	2005.10
37	2005	주제별	보건의료 성과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평가	다양화도	호	다양화도	2005.10
36	2005	사업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통합관리시스템 사후평가	다양화도	호	다양화도	2005.10
35	2004	주제별	상용기공도 도입을 위한 사후평가	다양화도	호	다양화도	2005.10

평가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예시

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EDCF 지원 7대 주요 부문인 교육, 도로, 상수도, 철도, 통신, 송배전, 보건에 대한 사전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심사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업무 취급요강을 개정함으로써 성과관리를 위한 기준을 보완하였다.

프로젝트 요약 (Narrative summary)	지표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ion)	지표달성수단 (MOV: Means of Verification)	취부조건 (Important Assumption)
장기목표 (Overall Goal) • 전자정부행정망 구축을 통한 정부의 효율성 제고 및 IT 부문의 대한 투자를 통해 민간회사로 퇴출할 수 있는 인력지원개발	• 정부 업무처리 효율성 • 사업 완료 세네갈 전자정부 평가 지수의 변화(UN EODI) • 구축된 정부행정망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 IT 인력양성 기반 확보, 외부(개발자, 강사 확보 등)	• 정부 업무처리 시간의 변화 관련 통계 자료, 행정의 증가 등 • 국제기구의 일괄적 전자 정부 평가 자료 • 세네갈 정부의 전자정부 자체 평가 (공통평가)	• 세네갈 정부 기관의 AIDE의 성과자료 구축 및 정보 공개화 •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평가의 수행여부
프로젝트 목표 (Purpose) • 세네갈 정부행정망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무선 연결망 구축) • LED Display 2대 설치 (승인절차를 통해 내보내기로 구축 예정) • IT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양성	• 구축된 행정망 활용도 • 행정망 활용 속도를 위한 별개도 정비 여부 • 투입된 장비들의 활용도 및 이용자 만족도 • 본 사업 과정에서 양성된 IT 전문 인력의 수	• 세네갈 AIDE 활용실적 보고서 및 통계자료 • 세네갈 정부 예산 투입정도	• 세네갈 정부의 본 사업의 중요성 인식이 및 편리하게 • 민간에 사업과 실행에 연계하여 진행되어가는 정도 (Georgal e-Government Voice) • 정부행정망의 중요성에 대한 세네갈 정부 관계자의 인식 제고
성과 (Output) • 35개 도시 665개 공공부서 백용망 구축 및 세네갈 예산으로 28개 지역 286개 공공부서 LAN선 구축 • LED Display 2대 설치 (승인절차를 통해 내보내기로 구축 예정) • 1,150명 교육 훈련	• 목표 대비 행정망 구축 실적 • LED Display 설치 (상비구입 및 투입) • 초청교육생 및 현지 OTF 교육수료자의 교육완료도	• AIDE 설문조사 • 세네갈 정부 자체조사 • 한국 측 행정망 자료 • 한국-세네갈 공동 사후평가 자료	• 정부행정망 관련 세네갈 정부의 지원 • 세네갈 지자체 등이 최일하게 활용 • 관련 전문가 초청연수 및 현지 파견 지원
활동 (Activities) • 시스템 구축(35개 도시 당 1개의 중계탑(Base Station) 및 평균 18개의 부속중계기 설치) • 연수생 초청 조별 실수행 • 기자재 제공 • 원문기 제공 • 사업수진 점검회	[한국] 약 24,000명분 투입 의결문서(정부행정망 구축, 서비스) 운영유지보수 교육훈련 기자재 구매 [당국] 약 7,000명분 투입 정부행정망 구축 (28개 도시 286개 공공부서 LAN선 구축)	• AIDE 설문조사 • 세네갈 정부 자체조사 • 한국 측 행정망 자료 • 한국-세네갈 공동 사후평가 자료	• 선제조건 • 한국 측 및 세네갈 측의 예산확보와 본안 사업의 즉각 이행 및 단계별 조건부 지원의 이행 여부 • 세네갈 정부가 정부행정망 관리의 중요성 인식 및 적극적인 관리지원

세네갈 정부행정망 구축사업 성과평가지표(안)

7. MDB와의 협조체제 구축

EDCF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ODA 공여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나갔다. WB와 ADB 등 국제개발기구와의 협조용자 추진과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MDB를 통한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개발사업상담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아프리카의 잠재력과 한·아프리카 대외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2006년에 최초로 KOAFEC을 구성하였다. 이후 KOAFEC 장관급 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면서 양 지역의 고위급 대외경제협력 프로그램의 정례화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나라의 실효성 있고 특색 있는 아프리카 경제외교의 대표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국제개발기구와의 협조용자 추진

EDCF는 1989년 12월 '기금운용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협조용자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래 시기별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협조용자를 추진하여 왔다. 초반에는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MDB)과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MDB가 보유하고 있는 선진 원조기법과 풍부한 원조시장 정보를 얻는 것이 목표였다. 이 시기에는 점차 MDB가 시행하는 개발도상국 원조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MDB 사업으로 쌓은 경험과 국제경쟁력을 토대로 비구속성 원조사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여 선진 원조기관이 추진하는 원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EDCF는 국제개발기구와의 효과적인 협조용자 추진을 위하여 1992

협조용자(Co-financing)¹ ADB, IDB, WB, AfDB, EBRD 등 주요 MDB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EDCF 단독 지원이 어려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능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다.

년 10월에는 WB와, 1993년 6월에는 ADB와 협조용자 협정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1994년 7월에 필리핀 민다나오 송전설비 확충사업에 ADB와 공동으로 차관자금을 지원함으로써 EDCF 최초로 MDB와의 협조용자를 실현하였다. 2005년 4월에는 터키 전동차 구매사업을 일본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일본국제협력은행)과의 협조용자로 지원함으로써 협조용자기관의 폭을 넓혔다.

선진 원조기관과의 협력 강화

EDCF는 선진 원조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로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선진화된 원조기법 습득과 정보 공유로 전문성 강화를 모색하였다.

EDCF는 2005년 12월 ADB, 2005년 2월 IDB, 2005년 11월 AfDB와 '협조용자 등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MOU)'를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2006년에는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5대 MDB(IBRD, ADB, IDB, AfDB, EBRD)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방위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나아가 일본 JBIC의 OECF와 2006년 7월부터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2006년 10월에 협조용자 추진과 원조전략 공유, 정보교환 활성화와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그리고 인적교류 등의 업무협약에 합의하는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업무협력의 대상을 MDB뿐



EDCF-ADB MOU 체결(2005. 12. 14)



EDCF-IDB MOU 체결(2005. 2. 10)

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원조기관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9월에는 일본 JBIC, 독일 KfW(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 독일부흥금융고), 프랑스 AFD(Agence Francaise de Development : 프랑스개발청) 등 다른 국가의 원조기관들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다자협의체(Joint Initiative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EDCF는 다자협의체에서 아시아 지역의 도시화와 도전과제, 개발원조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참여기관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회의 등 국제사회 원조공여국회의(Donor Community)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원조기관과의 원조조화(Aid Harmonization)를 통하여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제개발사업상담센터 설치

EDCF는 2005년 8월 정부의 'MDB를 통한 해외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우리 컨설턴트와 기업의 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MDB와 우리 기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개발사업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개발사업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국제개발사업상담센터에서는 지원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컨설턴트 풀'과 '국제개발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컨설턴트 풀은 교통, 통신, 에너지, 환경, 지역연구 등 개발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국내 컨설턴트들을 EDCF 홈페이지에서 등록받아 관리하는 서비스였다. EDCF의 자체 개발

원조조화(Aid Harmonization) | 국제개발협력기관들은 원조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성 달성을 위하여 수원국과 공여국 간 그리고 공여국들 간 원조정책, 절차, 예산, 접근방법 등 조정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는 과거 각각의 기관들이 서로 다른 원조절차와 관행을 고집하여 제한된 수원국 역량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하거나 중복적인 원조 프로젝트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둔다.



컨설턴트 홈페이지 소개



국제개발사업상담센터 설치(2005. 12. 16)

사업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등록된 우리 컨설턴트들에게 EDCF와 MDB에서 실시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였다. 국제개발사업 자문단은 국제개발사업 관련 고위급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였다. 우리 기업과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MDB 사업 진출 전략과 방법 등에 대하여 상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멘토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위한 KOAFEC 개최

아프리카의 잠재력과 한·아프리카 대외경제협력 관계 모색, 우리나라 경제발전 경험을 아프리카와 공유,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하여 2006년 4월 최초로 '한-아프리카경제협력협약체(Korea-Africa Economic Cooperation : KOAFEC)' 장관급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국내 기업들과의 직접 상담을 통한 사업 기회 발굴과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산업시찰을 통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연구기관들의 자문활동 등 지속적인 역할 수행으로 유기적인 대외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KOAFEC에서는 한·아프리카 포럼에 관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on Korea-Africa Forum)'을 발표하였다. UN의 MDGs 이행 필요성을 재확인

하였으며, 아프리카의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기여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수자원, 농업, 보건, 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무역과 투자증진을 통한 장기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프리카 투자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외교사절단 등 국내외 인사 250명이 참가한 ‘아프리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아프리카에 대한 생생한 투자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아프리카 국가의 최고위 경제당국자와 일대일 투자상담 기회도 제공하여 역내 진출을 도모하는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정보를 습득하고 심도 있는 투자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KOAFEC의 후속 성명서에 따라 2006년 중 우리 정부, 한국수출입은행, AfDB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자문단’이 설치되어 양 지역간 구체적인 경제협력방안(Action Plan)을 도출하였다.

KOAFEC은 이후 2년마다 개최되면서 양 지역의 고위급 대외경제협력 프로그램의 정례화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프리카 주요 15개 국가의 경제 관련 최고 정책결정자가 2년마다 동시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개최된 경제협력회의는 역사상 전례가 없었다. KOAFEC은 우리나라의 실효성 있고 특색 있는 아프리카 경제외교의 대표 플랫폼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1차 KOAFEC 장관급회의(2006. 4. 24~30)



제2차 KOAFEC 장관급회의(2008. 10. 27~30)

| 2010 - 2016 |

제3장 선진 지원체계 구축과 국제위상 확립

1. OECD DAC 가입과 EDCF의 역할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 유·무상 통합추진체계 출범
3. KSP를 통한 경제발전경험 공유
4. 혁신적 금융협력 수단 도입
5. 체계적 사업관리체제 강화
6. 국내외 개발파트너십 확대
7. MDB 협력 통한 지원효과 극대화
8.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유·무상 연계 강화
9.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지원제도 확충
10. EDCF 인식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1. OECD DAC 가입과 EDCF의 역할

우리나라는 오랜 준비 끝에 2010년 1월 OECD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이고, OECD 설립 이후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순수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였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킨 상징적인 이정표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ODA 통계기관으로 지정되어 OECD DAC 통계자료 작성·제출을 전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으로서 2012년 한 차례 동료평가를 받아 우리나라 ODA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OECD DAC 가입 준비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하여 괄목할 만한 국력 신장을 이룩한 결과 1996년 OECD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하지만 1996년 가입 당시 OECD 산하 25개 위원회 중 하나인 OECD DAC 회원국 지위는 획득하지 못하였다. OECD 회원국이라 하더라도 개발원조 관련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 ODA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ODA의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 2000년대 후반 OECD DAC 가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2007년 7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총괄 아래 관계 부처 합동으로 OECD DAC 가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8월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외교통상부(現 외교부), KOICA 파견관으로 구성된 OECD DAC 가입 준비반을 설치하는 등 OECD DAC 가입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였다.

OECD DAC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OECD 회원국들의 개발협력 관련 정책토의와 모범사례 공유, 국제적 기준(Standard)을 결정하는 OECD 산하의

핵심위원회다.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효과적이며 상호 조화를 이룬 개발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 활동으로는 △개발협력에 관한 정보교환과 상호 협의와 조정 △회원국의 ODA 정책·시행 관련 지침개발과 권고 △회원국의 개발협력 정책·집행에 관한 동료평가(Peer Review) 실시 △ODA 관련 통계작성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는 OECD DAC 특별 동료평가(Special Peer Review)를 받고 OECD DAC 가입에 대비한 사전 검토를 공동 실시하였다. OECD DAC은 ODA 총괄기능의 법적 기반과 조직 구축, 통합 중점협력국 지정과 지원전략 수립, 대국민 ODA 인식증진전략 수립 등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OECD DAC의 권고를 바탕으로 2009년 국제개발원조위원회에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고, ODA 기본계획과 통합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CPS) 수립, 원조 비구속화 제고를 골자로 한 ODA 선진화 중기계획을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 ODA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OECD DAC 가입을 위한 정부의 ODA 선진화 노력에 부응하여 EDCF 역시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6년에는 최초의 EDCF 중기계획인 '2006~2009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중기 재원 배분을 계획하고, 이에 의거하여 연간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차관 집행의 예측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다년간의 지원한도와 조건 등을 규정한 정부간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 : F/A) 설정 근거를 EDCF 운용관리규정에 신설하여 개별사업 승인 때 협정(Agreement : A/G)과 시행약정(Arrangement : A/R) 체결을 생략함으로써 승인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개발도상국 개발사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CPS) | 양·다자와 유·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국기별 맞춤형 원조전략으로,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중점지원국에 대하여 3~5년 단위로 수립한다.

업과 관련 부정적인 환경사회영향을 방지하고자 환경영향심사지침을 제정하여 EDCF 지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2008년에는 'OECD DAC 원조 조건에 관한 권고(The DAC Recom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를 준수하기 위하여 최빈국 지원 시 증여율이 모두 90%를 상회하도록 EDCF 차관 지원조건을 변경하였다. 이는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의 초석인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유상자금을 공급하면서도 최빈국의 채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2009년에는 유·무상 통합 평가체제와 통합국별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 CAS) 수립을 위한 통합 국별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국제기준에 맞는 원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EDCF의 비구속성 비중 목표를 2007년 기준 24%에서 2015년 기준 50%로 설정한 비구속성 원조 확대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OECD DAC 가입준비반 운영 1년 반 만인 2009년 1월 정부는 OECD DAC 가입신청서를 공식 제출하였다. 2009년 11월 25일 OECD 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는 회원국 전원합의로 우리나라를 24번째 회원국으로 승인하였다. 2010년 1월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이고, OECD 설립 이후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순수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였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킨 상징적인 이정표였다.

EDCF는 2011년부터 동래 회의와 작업반 참석, 개발협력 동향 파악 등 OECD DAC과의 원활한 협업 강화를 목적으로 주재원을 파견하였다.



OECD DAC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2009. 11. 25)

OECD DAC 가입조건과 이행 상황

(2007.7 기준)

가입조건	이행 상황(2007. 7)	비고
① 적절한 개발협력 조직, 전략 및 정책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 총괄/조정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정책 :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現 외교부) 등 - 집행 : 한국수출입은행(EDCF), KOICA 등 전략/정책 - ODA 중기전략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채택(예정) - ODA 기본법 : 제정 추진 중 - 향후 정책문서 채택 추진 예정 	충족
② 적절한 원조 수준 (총지출 2억 달러 이상 혹은 ODA/GNI 0.2%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년 ODA 규모는 4억 4,700만 달러 - ODA/GNI는 0.05% 	충족
③ 원조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DA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기 사업평가계획을 작성하여 평가 실시(예정) 	평가체계 구축 필요
DAC 채택 권고사항 조속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빈국 대상 원조의 비구속화 권고(2001년) - 우리 ODA의 최빈국 대상 비구속성 비중 낮은 상황(2005년 2.6%) 	개선 필요
ODA 연간통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5년 이래 매년 제출 	충족
④ 가입 시 이행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C 회의와 작업반 참석 상주 대표회의의 매년 참석 고위급 회의 및 통계작업반 회의 등 각종 작업반 회의 참석 	충족
원조제공 현황 등 보고서 매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C은 우리가 제출하는 통계를 기초로 원조제공 현황에 대한 간략한 요약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 필요 · 가입 후 보다 충실한 요약 보고서 제출
원조정책 심사 수검과 주심사국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시 참가(예정) 	-

※자료 : OECD DAC의 가입 로드맵(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의 보고자료

OECD DAC 가입에 따른 EDCF의 변화

OECD DAC 가입은 EDCF의 선진화를 위한 촉진제로 작용하였다. 먼저 OECD DAC 가입조건 준수를 위하여 우리 정부의 ODA 예산 증액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EDCF 지원규모 역시 가파르게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승인액 6,413억 원에서 2009년 1조 1,686억 원으로 EDCF 승인액이 약 2배 증대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 ODA 지원대상인 아시아 지역을 넘어 아프리카 지역의 자립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EDCF 승인액은 2006년 332억 원에서 2010년 3,964억 원으로 약 10배

증가하였다.

EDCF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선진화를 위한 노력 역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EDCF는 우리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의 무역과 투자활동 증진에 기여하는 인프라 구축을 확대함으로써 ODA가 촉매제(Catalyst)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개발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EDCF 중기지원계획(2010~2014)에 따른 경제 인프라(도로·교통 등)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국제규범 이행을 통한 EDCF 지원활동의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원조의 예측가능성과 상호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유·무상 통합 CPS 수립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성과 중심의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개발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와 중점지원국을 위주로 국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실행과정에 환류(Feedback)하여 사업결과의 평가와 모니터링 강화, 사업 실시과정에서의 암묵지 축적 등을 실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원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시 7명 수준이었던 EDCF 주재원을 증원하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중점협력국에 사무소를 신설하였다.

EDCF는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MDB)등과의 개발 파트너십 형성을 통하여 지원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형 인프라 사업 지원과정에 참여하여 수원국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였다.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 등 국제개발목표와 국별 개발계획에 근거한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는 MDB와의 협조용자 활성화를 통하여 EDCF 지원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MDB와의 정책협의를 사업발굴 등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OECD DAC 의장 면담(2011. 3. 24)

MDB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으며, MDB와의 협조용자사업을 위한 협의를 정례화하였다.

OECD DAC 통계보고 우수국가 선정

OECD DAC 가입 전까지 우리나라는 2003년 통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ODA 실적통계를 국가지정통계로 지정하여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가 ODA 통계작성을 주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실무를 담당하는 ODA 통계작성 체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OECD 가입 직전인 1995년부터 실시하여 온 DAC 통계보고에 대한 노하우를 살려 2006년 ODA 통계보고 시스템 구축, 2010년 국제개발통계시스템 구축 등 우리나라 ODA 통계보고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회원국으로서 매년 ODA를 포함한 개발도상국 앞 공공·민간 자금흐름에 대한 통계보고 의무를 부여받았다. 2010년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신규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ODA 통계의 효율적인 작성·관리와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을 우리나라 ODA 공식 통계기관으로 지정하였다. EDCF의 양허성 차관 관련 통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KOICA의 무상원조 통계까지 총괄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ODA 통계기관으로서 OECD DAC 통계 작성·제출, 관련 회의 참석과 의제 검토, 통계 보고·조회 시스템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여 OECD DAC 통계작성지침을 적시에 시스템에 반영하고 정확성 높은 통계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매년 ODA 시행기관의 통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OECD DAC의 통계지침의 주요내용, 개정사항과 시스템 입력 방법 등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작성단계에서부터 정확성 높은 데이터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OECD DAC 통계자료의 질은 2014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통계평가 최고등급을 달성하였다. ‘DAC Statical Reporting Issues in 2015 and 2016’에서 우리나라의 ODA 통계자료는 “의미 있고 전반적으로 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10년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 당시 OECD DAC이 작성한 ‘The Republic of Korea’s Readiness for Accession to the DAC : Secretariat Report(2009)’에서는 EDCF의 통계 작성 관리체계를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있으며, ODA 통계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하였다.

2017년 상반기에 신규 개발된 통계 시스템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기존 통계자료(모니터링·기타공적재원·민간재원)를 ODA 통계 시스템과 연계하였다. ODA 시행기관의 통계 작성 부담을 최소화하고, OECD DAC 지침과 맞지 않은 통계 오류를 시스템 자체에서 선별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높였다.

한편 2011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에 따라 ODA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모든 ODA 시행기관과 부처간 ODA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상황을 상호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행기관별로 사업 종료 전후에



ODA 모니터링 통계보고 시스템 설명회(2014. 2. 7)

해당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등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ODA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가 활용된다.

EDCF는 매년 국무조정실과 ODA 모니터링 시스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 관리를 위탁받아 시스템 개선과 부처간 정보공유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OECD DAC 동료평가 실시

OECD DAC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4~5년 주기로 동료평가(Peer Review)를 실시하여 대외원조 부문에서 국가별 개선과제를 파악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동료평가는 DAC 회원국의 의무사항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특별 동료평가를 요청하여 자문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2012년에 회원국으로서 처음 동료평가를 받았다.

2012년도 동료평가는 OECD DAC의 평가 틀에 맞추어 우리 제도를 점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국내적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원조통합의 필요성, 유·무상 원조간 논쟁, 원조의 분절화, 우리나라 개발경험의 ODA 사업화, 원조의



DAC 동료평가(2012. 12. 11)

질적 수준 등에 대하여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을 기반으로 통합 원조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조체계가 지난 5년간의 개선을 통하여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고, 분산·중복 정도는 오히려 낮다는 평가를 얻었다. 조직 분야 실사를 담당한 독일의 귀도 아쇼프(Guido Ashoff) 박사는 우리나라의 ODA 시스템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 제도를 변경(Shake-up)하면서 동시에 ODA 확대를 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동료평가단의 초기의견(Initial Impression)은 고채무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과 취약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 축소 검토에서 수원국 경제와 재정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유·무상 비율을 고려하라는 권고안으로 수정되었다. 이 내용은 G20 개발의제(2010),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2011), OECD 개발전략(2012) 등에서 주목하는 원조수요의 변화, 자립적인 경제성장,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개발금융, 민간부문과의 협력 등 새로운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실제 경험에 기초한 개발 지식과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OECD DAC 회원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특히 비교우위를 가진 영역으로 평가받았다. 벨기에, 일본 등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경험, 특히 역량개발과 관련한 경험의 주류화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우리 정부대표단은 경제발전경험공유(Knowledge Sharing Program : KSP)를 대표적인 지식

고채무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 HIPC)¹ 1996년 IMF와 WB가 보다 광범위하고 빠른 부채탕감정책을 위하여 최빈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과도한 채무를 안고 있는 국가들을 일정 기준을 적용하여 고채무빈곤국으로 정의하였다. 이것은 부채-연간수출액 비율(Debt-to-export Levels)이 150% 이상 혹은 부채-국가수입 비율(Debt-to-government Revenues)이 200% 이상 해당하는 채무국가들을 뜻한다. 2016년 기준 36개국이 고채무빈곤국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공유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원조효과성 원칙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원조공여의 역사가 짧은 우리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중기 예측가능성, 수원국 재정시스템 활용, 비구속화, 프로그램형 접근방식 등 여러 권고들이 아직 원조시행절차와 전략에 충분히 내재화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5년까지 양자원조의 75%를 비구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받았다.

그동안 OECD DAC 규범을 찾아가는 것을 원조선진화의 유일한 척도로 여겼던 우리는 2012년 동료평가 결과로 우리의 고유한 실행역량에 맞추어 실제 수요에 부응하는 원조방식을 체득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또한 동료평가에서 강조된 원조효과성 원칙들을 보완하기만 하면 우리나라의 원조 시스템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EDCF는 DAC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2015년 최빈국과 저소득국에 대한 EDCF 지원가이드라인 제정, 2016년 EDCF 세이프가드와 원공사업 사후관리 실무기준 제정 등 EDCF 지원제도 정비와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이어왔다. 아울러 원조효과성 원칙을 충분히 이행하기 위하여 수원국의 재정관리와 조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최빈국과 고채무빈곤국에 우선순위를 둔 원조의 비구속화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16년에는 비구속성 비중 52%를 달성하였다. 이외에도 DAC 권고사항에 포함된 ODA 규모와 자원배분, 원조효과성 부문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 두 번째 동료평가를 받게 된다. EDCF는 OECD DAC 동료평가가 단순히 우리나라의 원조현황을 평가한다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2017년 12월 동료평가를 계기로 ODA 추진방향과 실행 전반을 점검하여 향후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 유·무상 통합추진체계 출범

2010년 OECD DAC 가입 당시 우리나라는 ODA 규모의 양적 확대와 주요 제도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ODA 체계 정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고자 국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였고 유·무상을 총괄할 수 있는 ODA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통합추진체계 아래 유·무상 통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유·무상 공동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통합지원전략을 마련하였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OECD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는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원조규범에 부합하는 ODA의 선진화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OECD DAC의 '신규 회원국의 OECD DAC 가입에 관한 지침'은 OECD DAC 가입조건 중의 하나로 OECD DAC 권고 이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ODA 관련 전략과 정책, 제도적 장치 마련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선진 원조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정책의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25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였고, 2010년 7월 26일에 법이 발효되었다.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이를 위한 제반 제도 개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와 상호교류 증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에 대한 목적, 정의, 기본정신과 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과 수행체계 등도 명시하였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개발협력 분야 최고 정책기구로서의 위치를 공고

히 하는 기반이 되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은 국내적으로 보다 체계적인 ODA 정책과 시스템을 갖추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표명한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 강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대외원조 운영체계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ODA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2006년에 설치하였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외원조 총괄기구로 자리 잡았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ODA 정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ODA 집행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시행령을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제1차 기본계획 2011~2015, 제2차 기본계획 2016~2020)을 통하여 우리나라 ODA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은 연간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였다.

종합시행계획은 해당 연도의 ODA 정책방향과 추진사업 리스트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ODA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도 종합시행계획까지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별개로 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였다. 2016년도 종합시행계획부터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함께 하는 ODA' 정책방향에 따라 통합하여 작성하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합된 평가체계가 없어서 성과 중심의 원조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은 EDCF와 KOICA가 개별 평가지침을 운용하는 이원적 평가체계가 우리나라 ODA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 평가 체계가 부재하였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주관하는 평가전문위원회와 실무조직 설립을

논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9년 5월 제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

평가소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ODA 평가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평가계획 수립, 평가실시, 개별 시행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등을 수행하며, 주요 계획과 결과 등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한다. 또한 평가소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통합평가지침 및 매뉴얼'이 제정되어 실무 운영의 기틀을 잡았다.

2017년 현재 평가소위원회는 위원장(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 중 정부위원(5명)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국장급 인사로, 민간위원(9명 이내)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평가소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연 2회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기관별 연간평가계획을 확정하고 연간 피드백 결과를 심의하며 하반기에는 기관별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사업 2년 전 예비검토제를 도입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와 관련 기관 사이의 연계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사업 2년 전(n-2년) 예비검토제란 ODA 시행 기관 간 다다음해의 예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중복을 방지하여 사업의 연계방안을 사전에 논의하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특히 EDCF의 유상원조사업과 다른 기관의 무상원조사업 간의 연계논의가 예비검토제의 핵심이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2010년 12월, 제 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은 유상협력분야와 무상협력분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유상원조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지속성장과 우호적 대외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위하

여 CPS 수립, 사업발굴과 선정절차 개선, 유·무상 연계 확대, ODA 집행기관 역량강화 등 주요 추진사항을 포함시켰다.

2015년 9월 UN에서 새로운 국제개발계획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를 천명하면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도 SDGs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2차 기본계획(2016~2020)을 2015년에 마련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제2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유·무상 분야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였다는 점이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20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 0.2% 달성하기 위하여 ODA 재원규모를 확대하기로 의결하였다. 유·무상 비율은 2017년까지 제1차 기본계획과 동일한 4:6을 유지하되, 2018년부터는 국제사회의 ODA 현 대화 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심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중점추진 방향은 ‘통합적인 ODA’ 추진으로 유상·무상 통합 전략을 강화하고 2기 CPS를 함께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내실 있는 ODA’ 추진으로 종료 ODA 사업의 사후관리, ODA 평가와 환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공개대상과 항목 확대 등 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함께 하는 ODA’로 범국민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고, 개발금융과 민간금융수단을 이용하여 다양한 민간재원 활용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중점협력국 CPS 수립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ECD DAC의 유·무상 통합 CPS 수립 권고를 반영하고, 수원국별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원조역량을 감안한 맞춤형 ODA를 제공하기 위하여 CPS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간 유·무상 집행비율을 고려하여 2015년 4월 중점협력국별로 CPS 작성 주관기관을 지정함으로써 CPS 수립 조직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산관학(産官學) 작업반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지역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2015년에는 1기 CPS의 적용기간이 만료되어 2차 ODA 기본계획과의 연계차원에서 2기 CPS 수립을 추진하였다. 한편 같은 해 3월에 개최된 제2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대내외 원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CPS 작성대상인 중점협력국을 26개국에서 24개국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2기 CPS는 2016년 24개 중점협력국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관과 수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나라의 산업별 경쟁력을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수립하였다.

수립된 중점협력국 대상 CPS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였으며, 영문본을 발간하여 수원국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나 모잠비크 등 6개 국가를 위하여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버전을 별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수원국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국가협력전략 홈페이지 공개

3. KSP를 통한 경제발전경험 공유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국제개발협력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에 대한 지식공유 수요가 증가하자 우리 정부는 2004년 KSP를 출범시켰다. KSP는 협력대상국의 정책실현을 위한 역량강화와 지식공유 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개발협력 수단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자문,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EDCF 사업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KSP 사업을 EDCF 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등 KSP와 EDCF의 연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경제발전경험을 전수할 KSP 출범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새로운 대외경제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기존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발전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득국과 자원부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협력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 개발도상국과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독일 등 다른 공여국에 비하여 개발재원 규모와 다양성에서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반세기 만에 이룩한 경제발전경험을 새로운 개발협력의 모델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과거 선진국의 경제발전경험은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협력대상국의 사회·경제 제반 여건을 고려한 직접적인 제언을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하여 유용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경제발전을 달성하였고, 국제사회 공여국의 위치까지 성장하였다는 점에서 협력대상국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국제사회도 반세기 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하여 '한강의 기적'을 일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사례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발전 또한 선진국들의 지식공유를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특이점이 있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 KSP)은 수원국에게 우리나라가 과거 선진 공여국의 지식공유를 통하여 어떻게 수원국으로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는지에 대한 지식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경제정책으로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중소득국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수요에 부합하고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기획경제부는 2004년 KSP를 출범시켰다.

기존의 ODA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지원과 물적공여 등으로 절대빈곤을 완화하는 데만 집중하였던 반면, 이들의 자체적인 정책 역량강화에는 소홀하였다. 이에 비하여 KSP는 협력대상국의 정책실현을 위한 역량강화와 지식공유 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대외경제협력 개발수단이다. 또한 우리나라



KSP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전파 세미나(2013. 7. 10)

의 발전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에 맞춤형 정책연구와 자문,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지식집약적인 개발협력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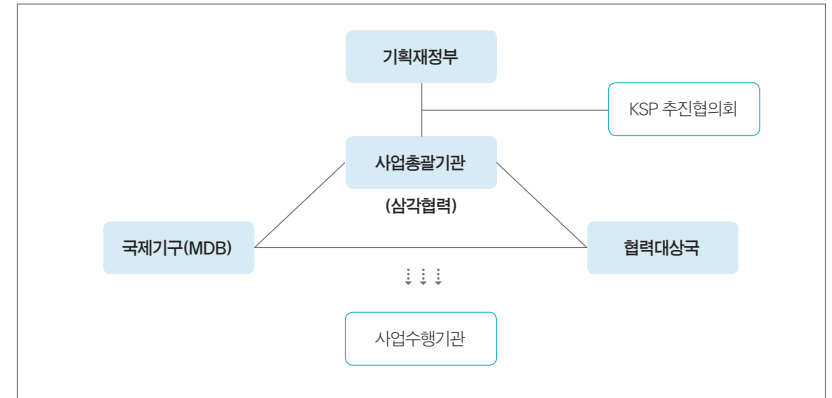
KSP는 우리나라와 협력대상국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그들의 주인의식을 고양시켜 자체적으로 중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준다.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해외시장 진출로 우리 기업의 세계화에 기여하며, 기존 ODA 사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국제사회의 공동 개발목표로 SDGs가 수립됨에 따라 물적 지원 위주의 전통적 원조효과성에 대한 의구심과 협력대상국 거버넌스와 정책역량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KSP와 EDCF 연계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KSP는 거시 정책자문에서 마스터플랜 수립, 제도 구축, 예비 타당성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업 발굴단계부터 협력대상국의 분야별 발전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EDCF 주도의 사업발굴과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KSP를 통한 EDCF 지원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KSP를 통한 EDCF 지원은 EDCF 사업의 위상제고는 물론 개발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개발대상국이 계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사업 담당

우리나라는 2004년 2개의 협력대상국으로 KSP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까지 50여 개국에서 다양한 정책자문과 지식공유, 정책실무자 연수 등을 수행하였다. KSP는 양자·다자간 대외경제협력을 주관하는 한편 과거 한국의 경제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KSP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우리나라 대외정책 부합 여부와 향후 대외경제협력 기반 확대 가능성 등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을 선정하고 전체 사업의 진행을 총괄 감독하고 있다.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추진체계



KSP사업은 크게 세 분야로 진행되고 있다. 정책자문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모듈화사업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기구 공동컨설팅(Joint Consulting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과 시스템컨설팅(국토인프라 정책자문사업 등)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 시작된 국제기구 공동컨설팅사업은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국제기구의 지역별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협력 모델이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진흥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KSP사업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였다.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첫째, 협력대상국이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이 향후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에 일조하고 있다. 셋째,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하여 국내 컨설턴트들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경력(Track Record)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컨설팅 발전에 도움을 주며, 마지막으로 국

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컨설팅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은 국제기구 기술협력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통하여 협력대상국과의 사업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KSP-국제기구-협력대상국간 상호학습과 이해도를 높인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7개 국제기구와 90여 개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IDB와 ADB 등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EDCF-MDB간 협조용자 사업을 발굴하였다.

국제기구 공동컨설팅사업을 통하여 가장 많은 협력사업을 수행한 국제기구는 ADB와 IDB로 2016년까지 각각 27건과 25건의 사업 실적을 올렸다. 국가별 사업도 주로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주요 협력 국제기구가 ADB와 IDB인 점에 그 원인이 있었다.

국제기구 공동컨설팅사업은 주로 고부가가치산업인 ICT와 교통 인프라 분야를 가장 많이 수행하였다. 이는 국제기구 기술협력사업 중 후속 투자사업 준비 성격인 사업준비기술(Preparatory Project Technical Assistance : PPTA) 사업과 연계된 측면이 강하였기 때문이었다.

KSP 사업기획과 관리기능 강화

KSP는 지난 10년간 양적성장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경제발전경험 공유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질적인 성장을 위하여 단년도 정책용역사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였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기획·관리가 미흡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KSP의 기획·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사업관리를 내실화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지침'을 2016년 6월 전면 개정하였다. 사업총괄기관(KDI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운영지침에 따라 개별 세부기준을 수립하였다. 지침과 세

부기준은 정책자문보고서의 완성도와 품질을 제고하고, 우수 연구진 확보를 위한 사업수행기관 선정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기준·절차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사업총괄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통일된 양식에 따라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KSP사업이 중장기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KSP 정책자문사업-콜롬비아 도시교통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수립(2016. 11. 21)



KSP 정책자문사업-미얀마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이행방안 수립(2017. 7. 20)

4. 혁신적 금융협력 수단 도입

2011년 EDCF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취와 개발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차관을 도입하여 2012년 EDCF 최초의 프로그램차관사업을 승인하였다. 또한 나날이 중요하여지는 민간부문과의 협력 증대를 위하여 민자사업차관, 보증, 민간협력차관을 도입하였다. 최근 개발금융 도입을 위한 내부 규정을 준비하면서 혼합신용, EDCF 차관, 저양허성 차관 등 다양한 차관상품을 활용하여 수원국 앞 다투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 개발계획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차관 도입

EDCF는 2011년 6월, 개발도상국의 종합 또는 부문별 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다수의 정책과제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지원(Budget Support) 방법으로 일괄 지원하는 프로그램차관을 도입하였다.

프로그램차관이란 수원국 정부의 주요 개발계획(거시경제 개혁, 빈곤감축, 기후변화대응, 구조조정 등) 추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수원국 정부 예산에 대한 지원으로, 재원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Earmark) 없이 수원국이 일반적인 개발목표와 특정분야 개발을 위하여 자국의 예산절차에 따라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차관이였다.

국제사회는 2005년 파리선언을 통하여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원조(Program-Based Approaches : PBA) 확대를 권고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

프로젝트원조와 프로그램원조 비교

구분	프로젝트원조	프로그램원조
지원 대상	개별 사업	다수의 정책과제
지원 방식	구속성·비구속성	비구속성
자금 집행	사업자 앞 지급	예산지원(Budget Support)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베트남 정부가 2020년까지 실행을 목표로 수립한 기후변화대응 국가목표 프로그램(National Target Program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 NTP-RCC)에 기초한 베트남의 기후변화 정책·전략의 개발과 실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일본국제협력기구)와 프랑스 AFD(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 프랑스개발청)가 2008년에 시작하였다. 1단계인 2009~2011년에는 제도와 조직체계 구축, 2단계인 2012~2015년에는 기후변화사업 시행과 확산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EDCF는 2011년 참여를 선언한 이후 WB, 호주 DFAT(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외교통상부, 구 AusAID)와 함께 원조기관으로 활동하였으며, 3차례에 걸쳐 기후변화 적응, 완화, 공통주제관련 분야의 정책과제 수립 및 모니터링 평가 등에 6,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특히, EDCF는 수자원,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관리 등 3개 분야를 EDCF 우선정책과제(Trigger Policy Actions)로 선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의 실행과 달성 여부를 평가한 후 차관을 지원하였다. (1차 3,000만 달러, 2차 2,000만 달러, 3차 1,000만 달러)

- 적응(Adaptation)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가뭄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역량 개발
 - 하수도 정비, 외래종 관리, 품종개량, 투수성 포장, 제방 보강, 대기오염 관리 강화,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등
- 완화(Mitigation)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기후변화 대응방안
 -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절약, 분리수거·재활용 등 폐기물관리, 식목·조림 활동 등
- 공통주제(Cross-Cutting)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주제가 논의되는 분야
 - 자연재해 예방, 자금흐름체계 정립 등 사용, 에너지절약, 분리수거·재활용 등 폐기물관리, 식목·조림 활동 등

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0. 12)과 시행계획(2011. 2)을 통하여 프로그램차관 도입 계획을 명시하였다. 이에 EDCF는 2011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3차에 걸쳐 베트남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차관을 최초로 지원하였다.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차관은 베트남의 기후변화대응 활동에 대한 공여국, 원조기관, NGO와 민간 부문의 정책·기술·재정을 원조와 조화시킴으로써 원조효과성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베트남의 지속적 경제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되는 기후변화에 베트남 정부가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조기관들이 지원함으로써 베트남의 안정적인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과의 공동투자를 위한 민자사업차관 도입

EDCF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민간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 PPP) 사업 전담팀을 신설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도를 개선하여 민자사업차관에 대한 비구속성 금리를 인하하였다. 아울러 PPP사업 발굴과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에 협력대상국(베트남, 필리핀)과 EDCF-한국수출입은행-개발도상국 정부의 협의 채널인 'SOC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또한 대내외 PPP 전문가와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글로벌인프라 개발협력 포럼(Glob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um: GIDF)을 개최하였다.

민자사업차관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PPP사업을 추진할 때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국가보조금과 출자금 등을 공급하거나 PPP 사업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의 사업성을 증진시키고자 도입하였다.

전통적으로 인프라는 공공부문에 의하여 공급되어 왔지만,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을 위하여 인프라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키면서 개발도상국 정부의 재정능력 한계와 거버넌스의 취약성을 보완하려면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인식 아래 PPP를 지원할 수 있는 차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게 되면 부족한 재원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술과 경영기법 등을 통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EDCF는 PPP사업 지원확대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정부가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에 제공하는 출자금, PPP에 부수되는 재정사업(개발도상국 정부 주도의 PPP사업 주변 연결도로와 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PPP의 지원의 대표적 사례로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과 베트남 남딘성 톤롱교량 건설사업이 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은 라오스 남부 태국 접경지역에 410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개발·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EDCF는 2015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심사출장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부지 전경

년 민자사업법인에 라오스 정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출자지분을 차관으로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생산된 전력을 태국전력공사와 라오스전력공사에 판매함으로써 라오스의 산업화를 위한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고, 외화수입 증가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간기업의 관점에서 PPP사업은 개발도상국과의 장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불확실성이 많은 사업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은 EDCF와의 협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PPP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해외사업 확대와 사업의 안정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에게 돌아가는 수력발전소 공사와 운영 수익 외에도 매년 평균 266억 원에 달하는 배당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단순한 공급형태에서 나아가 민관이 협력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라오스는 메콩강 등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자원과 수력발전소 개발경험을 제외하고는 설계, 시공, 금융조달 역량이 부족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투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업 추진은 라오스 정부의 외화수입 확보를 통한 정부재정 확충, 국가개발전략 이행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베트남 틴롱교량 건설사업 현장 실사(2012. 1. 29)

베트남 틴롱교량 건설사업은 PPP 형태로 추진되는 베트남 남딘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EDCF 연계사업으로 2014년에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되었다. 베트남 북부 하노이의 남동쪽 남딘 성으로 이어주는 닌코강 횡단교

량(829m)과 접근도로(1.8km)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닌코강으로 분리된 동서 지역 하이하우현과 니아흥현을 연결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베트남 해안도로축 완성으로 남딘 성 경제발전과 관광산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연계사업인 남딘 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필수적인 원·부자재, 인력 수송 등 물류이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대규모 발전소 구축에 필요한 부대 교통 인프라를 지원하여 민간사업자 유치와 수익성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베트남 정부와의 대외경제협력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솔로몬군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은 다양한 국제기구(WB, GCF, ADB)와 협력하여 대규모 PPP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이끌어낸 사업으로 2017년 승인되었다. 우리 기업이 PPP사업의 국제경쟁입찰을 거쳐 이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우리 기업이 지분투자,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전반에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이다.

최빈국에 추진되는 대형 인프라 사업의 경우 다양한 위험으로 상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고 한 기관의 단독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러 국제개발금융기구들과의 협조융자 방식으로 금융조달·사업설계·사후관리·사후평가 등을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지구온난화로 수몰 위험에 처한 남태평양 도서국인 솔로몬군

도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화력발전에 의존하던 에너지 생산에서 수력발전을 활용한 청정 에너지 생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는 사업이다. 솔로몬제도의 경제개발과 전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협력사업 보증제도 도입

WB와 ADB 등 주요 MDB는 민간투자자의 투자위험을 경감시켜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을 지원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부족한 개발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ODA 기관의 보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ODA 기관의 보증은 국가신용도가 낮은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 자본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PPP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3년 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EDCF의 협력사업 보증제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하며, 개발도상국 정부의 복보증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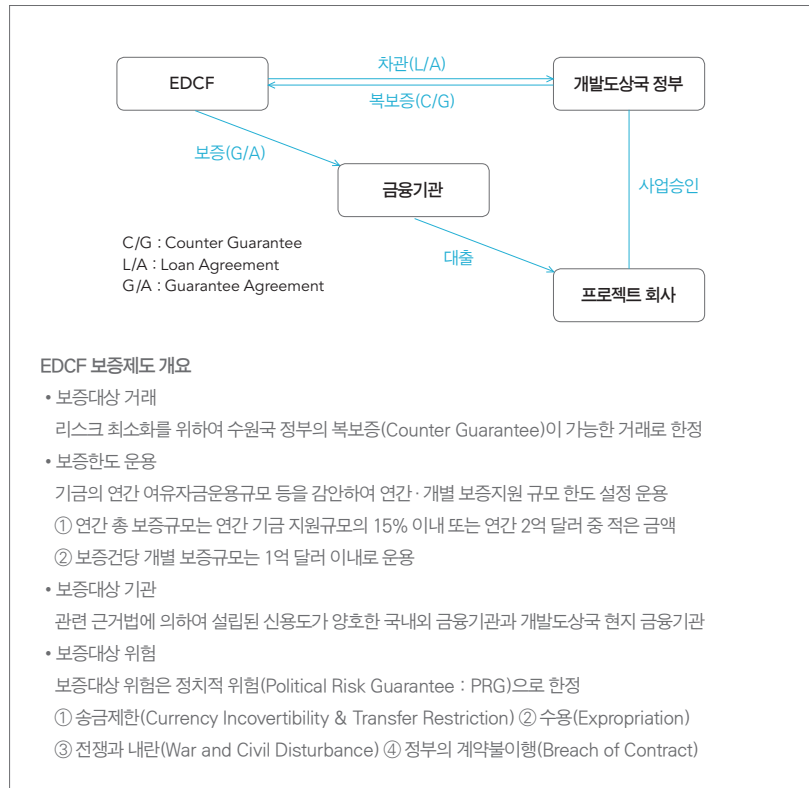
보증은 단순히 개발도상국 정부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업체의 선정절차, 사업수행능력, 사업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신용도가 낮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효과가 큰 PPP사업 등 대규모 투자개발형사업에 주로 제공될 목적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차관과 구별되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낮은 국가신용도나 정치적 위험 등으로 인한 민간 부문의 투자위험을 보증제도를 통하여 경감시켜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낮은 국가신용도로 한국수출입은행이나 민간금융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을 EDCF가 보증으로 보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개발도상국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협력(전대)차관 도입

EDCF는 수원국의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한 지원방식 선진화를 위하여 2014년 9월 민간협력차관과 민간협력전대차관 제도를 신설하였다. 민간협력차관과 민간협력전대차관은 민간부문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차관제도이다. 민간협력차관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ODA 적격분야사업을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법인에 지원하는 차관이며, 민간협력전대차관은 개발도상국 금융기관을 통하여 민간협력차관의 지원대상

EDCF 보증제도 개념도



인 개발도상국 법인을 지원하는 전대차관이다.

2016년에 EDCF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여성의 사회활동 제고를 목표로 캄보디아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최초의 민간협력전대차관으로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캄보디아 정부의 국가전략개발계획과 금융산업개발전략에서 목표로 정한 저소득층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캄보디아의 SDGs 달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서민금융의 지원여력을 확대하고 주요 수혜계층인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자립도 제고와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서민금융기관의 지원여력을 강화하여 저소득층과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공적부문 이외의 민간부문 지원으로 지원채널을 확대한 사례이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CSR)과 현지영업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금융 실행기반 마련

수원국의 인프라 개발수요는 매년 대폭 확대될 전망으로 더 이상 정부 재정을 사용하는 전통적 ODA 방식만으로는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2011. 11), 제3차 UN개발재원총회(2015. 7), UN개발정상회의(2015. 9) 등을 계기로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의 근본적 해소'를 위하여 민간금융 수단을 활용, 민간 재원의 유입을 촉진하는 개발금융에 주목하였다.

개발금융 | 정부간 개발협력 재원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수단으로 전통적인 양허성 차관 외에 준상업성 차관, 보증, 출자 등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개발금융의 운용과 관리 주체가 되어 수원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개발도상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의결(2013. 11, 대외경제장관 회의)하고, 개발금융 실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2016년 1월 우리나라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개발금융을 실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으로 개발금융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7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발금융 운용 방안'을 의결하여 본격적인 개발금융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2월에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금융의 ODA 활용방안'을 의결하여 ODA로서의 개발금융 위상과 원칙을 확립하였다.

EDCF는 새로운 개발금융 체계 아래 기존 차관 규모를 확대하고 저양허성 차관, 수출금융과의 혼합금융 등을 활용한 원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개발도상국 맞춤형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발재원 연계한 금융패키지 지원

EDCF는 2014년부터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KSP,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유상원조, 수출금융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한 금융패키지 지원으로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다. KSP와 사업타당성조사 등 개발 건설링 기능의 연계를 강화하여 EDCF 사업발굴에 활용하고, EDCF·개발금융·수출금융 등을 연계하여 사업 특성과 국별 소득수준에 맞는 최적의 금융구조를 마련함으로써 EDCF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특히 2014년 8월 베트남에 프로그램미션을 실시하고, 120억 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로 준고속철, 메트로, 에너지 등 다수의 대형 인프라 후보사업을 발굴하였다. 이어 2014년 10월에는 120억 달러 금융패키지에 대한 '한·베트남 금융협력 MOU'에 베트남 정부와 서명함으로써 이들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한 양국 협력을 구체화하였다.

양국은 금융협력 MOU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양국 차관급 정례협의체인 '한·베트남 금융협력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2015년 6월 제1차, 2016년 9월에 제2차 회의를 열고 메트로와 에너지 등 MOU에 명시된 분야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에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2016년 9월에는 송하우 석탄화력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과 베트남 국영 석유공사(Petro Vietnam : PVN) 간 금융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가시화하였다. 이와 함께 교통분야 KSP, 호치민 메트로 편선샷 공항연결구간 EDCF 사업타당성조사 등 교통분야 개별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준비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한편 준고속철사업 등 초대형 사업은 KOICA 연계로 중장기적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한·베트남 금융협력 MOU 체결(2014. 10. 2)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모델로 인도와 이집트에서도 각각 100억 달러와 30억 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 지원을 협의하였다. 인도가 그동안 G8 국가 이외의 원조와 구축성 원조를 거부하는 ODA 정책을 펼침에 따라 EDCF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었으나, 2015년 금융패키지 제안을 계기로 한·인도 금융협력의 물꼬가 트였다. 2015년 5월 한·인도 정상회담 때 스마트시티, 철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100억 달러 규모의 금융협력 패키지에 합의하였고, 이의 후속작업으로 양국 간 협정 체결을 협의 중에 있다. 협정 체결 이후에는 구체적인 후보사업에 대한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집트와는 2016년 한·이집트 정상회담 때 30억 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에 대한 '금융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카이로 메트로와 태양광 발전 등 구체적인 후보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시성이 높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공여국간 경쟁이 더욱 치열하

여지고 있는 환경에서, 금융패키지 지원 방식은 수원국 경제발전과 우리나라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EDCF의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형 국책사업 수주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5. 체계적 사업관리체제 강화

EDCF는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운용을 위하여 중기 관점의 지역별·국별 사전적 자원 배분체계와 중점지원국, 중점지원 분야를 운용하는 전략적 지원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중기 관점의 전략적 사업발굴과 포트폴리오 사업 관리를 위한 사업운영 체제로 EDCF 중기 및 연간 사업운영계획인 국별 프로그램 수립, 프로그램 미션, 정책협의로 이어지는 국별 프로그래밍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관리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관리 온라인 보고체계(PPMR, AAMR)와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원 사업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 대응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있다.

국별 프로그램 도입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경제협력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해외 시장진출과 경제교류를 확대하려는 선진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 원조기관들은 중기 재원과 중점 지원분야 등을 포괄하는 중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이들 국가에 대규모 원조자금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의 정책협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 전반에 관한 수원국의 참여를 촉진하고 수원국별 원조규모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EDCF도 운용규모가 증가하면서 개별 사업 중심의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중기 관점의 사업발굴과 포트폴리오 관리로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개발도상국 경제상황, 개발계획, 국제개발기구와 타국 지원동향을 토대로 5년 전후의 중기 프로그램인 국별 프로그램(Country Programme)을 도입하였다.

지원규모, 유망 분야와 유망 후보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개발도상국의 개발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정책협약에 반영하는 등 개발사업 준비 단계

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동향을 나타내는 국별종합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알맞은 국가별 차관지원 절차를 조사하여 국별사업시행 매뉴얼을 만듦으로써 지원 효율성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국별 프로그래밍 전담조직 신설

EDCF가 2013년 경험기획실에 신설한 프로그램팀이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CPS) 수립과 모니터링을 통합 관리하는 한편, 국별 프로그램을 전담하여 운용함으로써 중기 관점의 사업발굴과 포트폴리오 관리 추진체계를 내실화하였다. 국가별 최적의 중기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EDCF 정책목표에 맞는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개발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2013년 4월 필리핀, 9월 미얀마, 12월 콜롬비아에 프로그램 미션(Country Programme Mission : CPM)을 수행하여 수원국 수요에 부합하고 경제협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EDCF 중기 후보사업 목록(Mid-term Pipeline)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였다.

2014년에는 EDCF 주도의 사업발굴과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팀을 국별전략실로 확대 개편하고, 국별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EDCF가 지원하지 못하였던 메트로 사업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DCF의 유상원조,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KSP 등을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 미션을 도입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KSP사업과 무상원조로 실시하는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 T/A) 사업과의 연계, EDCF와 수출금융과의 복합금융, 다자개발금융기구들과의 협조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EDCF 유상원조와 한국수출입은행 수출금융의 유기적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국별전략실(EDCF)과 사업개발부(수출금융)로 이원화된 사업개발조직을 신시장개척단(2017년 해외사업개발단으로 변경)으로 일

원화함으로써 신규 수출시장 개척과 사업발굴 기능을 강화하였다.

국별 프로그램 활용한 중기지원 포트폴리오 정착

EDCF는 CPS를 근간으로 하는 국별 프로그램 방식의 사업발굴 관리체계를 통하여 EDCF 중기 및 연간 사업운용계획 수립, 프로그램 미션, 정책협의 등을 순차적으로 이행함으로써 CPS와 EDCF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구성되는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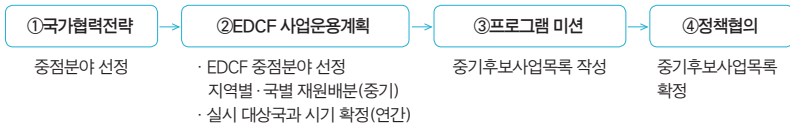
CPS는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개발수요를 반영하여 중점지원국에 대하여 3~5년 단위로 수립하는 주요 ODA 행정도구로 양·다자와 유·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국가별 맞춤형 원조전략이다. EDCF는 CPS와 기타 국별전략을 토대로 EDCF 중점분야, 지역별·국별 재원배분 등을 포함한 3년 단위의 중기 사업운용계획과 프로그램 미션, 정책협의 실시계획 등을 포함한 연간 사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DCF는 프로그램 미션을 통한 정책협의를 앞서 중기 재원배분의 틀 안에서 CPS에 명시된 중점지원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중기 후보사업 목록을 수원국과 협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조 총괄부처뿐만 아니라 원조 사용부처와 다른 공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포괄적 협의를 하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별 지원방향(규모, 중점분야)과 중기 후보사업 목록을 담은 EDCF의 전략문서인 국별 사업계획 초안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중기 후보사업 목록에 기존 EDCF 금융지원 이외에 사업 타당성조사, KSP, 협조용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사업준비 단계부터 금융지원까지 포괄하는 일관된 중기 프레임워크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미션을 통하여 수립한 국별 사업계획 초안을 기반으로 양국 고위급 정책협의를 거쳐 중기 후보사업 목록(Mid-term Pipeline)을 최종 확정하고 있다.

이러한 탑다운(Top-down) 형태의 중기 프로그램 방식 사업발굴을 체계화하여 개별사업이 아닌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과 개발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국별 프로그램 방식 사업발굴 체계



다년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개발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다. 동시에 EDCF는 수원국 정부, 사업실시기관과 다른 공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사업초기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함으로써 자금운용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지원수단 활용과 연계사업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분야 사업을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체계적인 사업관리체계 구축

EDCF는 2016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수원국-공여국 간 공동실행계획(Joint Action Plan : JAP), 사업관리 모니터링 보고체계(Project Performance Monitoring Report : PPMR), 사전조치 모니터링 보고체계(Advanced Action Monitoring Report : AAMR), 그리고 사업관리 신호등 시스템 구축 등 사업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2016년 2월부터 EDCF와 수원국 관계자가 개별사업별로 사업준비부터 완공까지 사업단계별 목표시한(Target Date)을 정하여 놓고 공동서명하는 JAP 절차를 도입하였다. EDCF와 수원국 간 사업단계별 추진일정을 사전합의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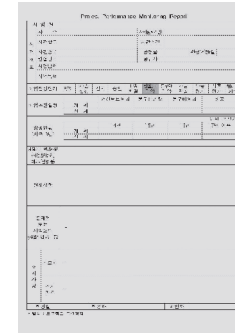
2016년 3월부터는 개별사업별로 사업현황, 추진일정, 문제점과 제약요인, 조치사항 등을 기술한 온라인 보고체계(PPMR)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진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지연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다. 나아가 2016년 4월에는 개별사업별로 사전조치(Advance Action) 목표시한, 조치일자, 미조치 사유 등을 기술한 온라

인 보고체계(AAMR)를 운영함으로써 승인사업의 사전조치를 제도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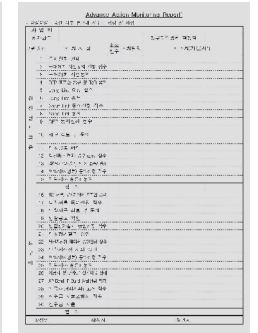
또한 EDCF는 2016년 7월 각 사업의 진행단계별 처리기한을 부여한 후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한 경과여부를 신호등 색깔(Green 정상, Yellow·Red 지연)로 표시하여 집중관리하는 사업관리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운영함으로써 지연사업을 조기 발견하여 적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이 EDCF는 2016년부터 다양한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지연을 예방하고 사업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PPMR 보고서 양식



AAMR 보고서 양식

6. 국내외 개발파트너십 확대

EDCF는 국내외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개발파트너십 확대를 선진 지원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EDCF 운용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EDCF 자문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포럼을 개최하여 공공과 민간부문 관계자들에게 정보공유의 장을 제공하였다. 또한 국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개발사업 공동 발굴, 기술협력, 네트워크 공유 등 상호협조의 길을 열어주었다. 국외의 경우에도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EDCF 워크숍을 개최하여 수원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였으며, EDCF-JICA 정례회의, 아시아개발포럼과 아시아 4개국 원조기관 회의, 국제농업개발기금과 농촌개발 관련 업무협약 체결, IDB 한국 총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EDCF 자문위원회 운영 | EDCF는 2000년대 중반 정책 수립과 업무 수행에 대한 자문으로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EDCF 운용자문위원회'와 'EDCF 사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는 2006년 11월 학계와 언론계, 경제계와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유력인사로 구성된 '대외경제협력 운용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위원회는 대외원조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 대외원조의 주요 과제를 인식하고, EDCF의 장·단기 운용전략과 발전방향, 제도개선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EDCF의 운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긍정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EDCF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2007년 1월 MDB 근무 경험자 등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EDCF 사업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EDCF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차관사업 관리와 지원효과 제고방안, MDB 협력 제고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이후 2010년 개발협력 부문의 최고위 총괄·조정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실무 자문협의체인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EDCF 자문위원회 활동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자문협의체 활동으로 통합되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2012년 OECD DAC 동료평가 결과 OECD DAC 사무국이 주요 이해관계자(국회, 시민사회, 학계, 일반국민 등)들과의 소통 강화를 6대 개선과제 중 하나로 권고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은 2013년 11월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민간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EDCF 자문위원회를 재개하였다. EDCF 설립 30주년을 맞는 2017년 현재까지 일곱 차례 개최된 자문위원회는 민간 각계 인사들에게 EDCF의 최근 운용현황과 향후 운용방향을 전파하고, EDCF 운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대내외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따른 EDCF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EDCF 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 향상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대내외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따른 EDCF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EDCF 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 향상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학계·시민사회와의 협업 강화 |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을 앞두고 실시된 2008년 OECD DAC 특별 동료평가에서 OECD DAC 사무국은 대국민 개발협력 인식증진 전략의 수립과 이행, 시민사회와의 대화 확대를 주요 개선과제의 하나로 권고하였다. EDCF는 광범위한 민간부문과의 소통을 위하여 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나갔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공동세미나(2013. 11. 18)



EDCF-아시아재단 미얀마 개발협력 동향 및 진출전략 세미나(2017.6.29)

EDCF는 우리나라가 OECD DAC에 가입한 2010년을 기점으로 학회, 대학, NGO 등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학회, 시민사회기관과 공동으로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동향과 우리 각계의 대응 방향을 전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포럼(GIDF) 발족 | 2012년 기획재정부와 EDCF는 개발협력 민간협력 협의체인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포럼(Glob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um : GIDF)을 발족하였다. 광범위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관계자들이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협업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GIDF 발족은 절대빈곤 탈피를 넘어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뛰어넘는 개발(Beyond Aid)’이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된 결과였다. 원조를 뛰어넘는 개발을 실현하려면 원조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 부문은 물론 투자실행역량과 사업 전문성 등을 갖춘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였다. GIDF는 민간기업, 협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 부문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개발도상국 인프라 개발에 민간 부문의 추가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2년부터 개최된 GIDF에는 MDB, 해외원조기관, 민간기업, 협회 등 국내외 PPP 관계자들과 개발도상국 공무원 등 개발도상국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과거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 사업이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면, GIDF는 EDCF와 같은 ODA 자금이 민간 부문과의 협력으로 민간의 개발도상국 투자를 유도하고,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GIDF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개발도상국의 자생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제1회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포럼(2012. 12. 9)

개발이라는 윈윈(win-win) 효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GIDF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향후 협력대상국 정부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계획이다.

국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 EDCF는 ICT, 환경, 도로, 건설 등 다양한 사업 지원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국민들의 개발협력 인식증진 등을 목표로 국내 전문기관들의 우수한 기술·인력·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들 기관과 개발사업의 공동 발굴, 기술협력, 정보교환, 네트워크 공유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1997년에 KOICA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까지 54건에 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EDCF-KOICA 간 업무협약식(2013. 7. 24)



SBS-한국수출입은행 업무 협약식(2013. 9. 23)

국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EDCF 워크숍 개최 | EDCF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 원조 수혜 과정의 경험을 전수하고, EDCF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원조정책 방향과 지원 절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EDCF 사업 접점에 있는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1995년 10월 최초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에콰도르 등 9개국의 개발협력 정책, 대외거래, 재무 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IMF 외환위기로 개최하지 못한 1998년과 1999년을 제외하고는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워크숍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 46개국에서 246명의 개발도상국 공무원이 참가하였다. 개발도상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MDB 관계자도 꾸준히 참가하여 지역별 개발협력 현황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용자와 인적교류 등 상호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여 왔다.



제20차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연수 개최식(2016.5.16-20)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EDCF 워크숍 개최 현황(1995-2016)

연도	참가국수	참가지수	연도	참가국수	참가지수
1995	9	9	2007	20	23
1996	12	12	2008	17	20
1997	12	12	2009	20	20
2000	10	10	2010	8	9
2001	10	10	2011	7	7
2002	10	10	2012	7	7
2003	10	10	2013	13	16
2004	14	18	2014	13	14
2005	16	21	2015	7	9
2006	16	21	2016	11	15

※주: 연도별 참가MDB와 참가자 수

1995년 ADB(1), 2005년 AfDB(1), 2006년 IDB(1), 2010년 IDB(1), 2013년 IDB(1), AfDB(1), 2014년 IDB(1), 2016년 AfDB(1)

EDCF는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워크숍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원대상국의 경제현황과 산업발전 계획 등 경제여건과 환경변화를 조기에 인지하고 분석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EDCF 지원제도와 국가별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신규 사업발굴 계획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EDCF 지원수요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경제발전을 통하여 공여국으로서 성공적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의 모범 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경제발전 체험프로그램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교통 인프라, IT서비스, 도시개발 등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경제성장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에게 인프라 개발을 위한 원조정책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지향과 인사를 육성하는 한편 호혜적 대외경제협력 의지를 공유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EDCF-JICA 정례협의 개최 | EDCF-JICA 정례협의는 우리나라의 유상원조기관인 EDCF와 일본의 JICA 양 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개발도상국 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상시협의 채널을 구축하기 위하

여 운영되고 있다. 2006년 10월 MOU 체결 이후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개최한다.

그동안의 정례협회는 기후변화대응, 혁신적 개발금융수단, 민간부문과의 협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경험공유와 의견 교환, 기관 동향 소개로 정보교류 성격이 강하였다. 최근에는 인력교류와 협조용자 사업 발굴 등 실질적인 협력 채널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16년 개최된 제9차 정례협회에서는 아프리카 협력방안과 주요 개발협력 의제 등을 논의하였다. EDCF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인프라 개발을 위한 유상원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일본 정부와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고, 개발도상국 인프라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사회영향 이슈에 대한 경험을 실무자간에 적극 공유하였다. 아울러 민간부문 개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양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여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베트남 6 Banks 협의체 참여 | EDCF는 베트남 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협업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요 6개 원조기관(WB, ADB, JICA, EDCF, KfW, AFD)으로 구성된 베트남 6 Banks 협의체(이하 6 Banks)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1999년 ADB, JBIC, WB 현지사무소간 협의체로 출발하여 2001년 AFD(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 프랑스개발청)와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 독일부흥금고)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5 Banks로 발전하였으며, 2007년 7월 EDCF가 참여하여 6Banks가 되었다.

6 Banks는 2011~2015년 베트남 전체 ODA 수원액의 약 94%인 263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공여하는,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공여국 협의체로서 각 공여국의 실질적인 대표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6 Banks 가입은 EDCF 중점지원 대상국이자 최대 수혜국인 베트남에서 선진 공여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면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과제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 원조기관들은 정례협의를 통하여 베트남 정부의 사회경제개발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 SEDP)에 입각한 기관별 지원전략과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교통과 도시개발 등 대규모 투자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협조용자 사업발굴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격년으로 6 Banks 지원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동성과보고서(Joint Portfolio Performance Review : JPPR)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 결과를 베트남 정부와 공유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의 ODA 운영위원회 설립 이후 2013년부터는 이 위원회와 JPPR 회의를 합동 개최하여 ODA 정책과 제도 개선 등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6 Banks는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제고와 공여국과 수원국 간, 그리고 공여국간 일치와 조화(Alignment & Harmonization)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라고 평가받고 있다.

EDCF는 6 Banks 활동으로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차에 걸쳐 프로그램 차관과 일반예산지원을 포함 6,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메콩 델타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에도 참여하여 밤콩교량 건설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 3,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앞으로 EDCF는 6 Banks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개발도상국별로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시아개발포럼(ADF) 개최 | 아시아개발포럼(Asian Development Forum : ADF)은 아시아 역내 공여국과 수원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회의체로 2010년부터 EDCF 주도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ADF는 공여국으로 발전한 아시아 국가들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서구 중심의 개발협력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써 아시아 차원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현재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역내 국가 정부와 집행기관을 비롯하여 ADB, WB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제1회 아시아 개발포럼(ADF)
(2010. 11. 19)

회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회 개최되었다. 주요 의제로 아시아 공여국의 역할(1, 2차), 녹색 성장(3차), Post-2015 아젠다 및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비한 아시아의 역할(4차), 아시아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도전과제와 전략(5차), SDGs 실행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및 국제협력 강화(6차) 등이 다루어졌다. 특히 제6차 회의에는 중국 정부가 최초로 참가하였으며, 그동안 참가하여 온 ADB뿐만 아니라 UN과 OECD 등 국제기구도 참가함으로써 ADF가 역내 대표 개발협력 협의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 4개국 원조기관 회의 개최 | 아시아 4개국 원조기관 회의는 한국 EDCF, 중국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China : CEXIM), 일본 JICA, 태국 경제개발협력청(Neighbouring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 NEDA)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기관 간 지원전략, 개발재원 조달과 운용, 개발도상국 지원사례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09년 12월 제4차 EDCF-JICA 정례회의에서 JICA가 한국, 중국, 일본 원조기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이후 3국의 사전 실무협약에서 2010년 10월 제1차



제6차 아시아 4개국 원조기관 회의(2016. 11. 30)

회의 장소로 태국을 결정한 것을 계기로 NEDA가 추가로 참여하여 아시아 4개국 원조기관 회의로 발전하였다.

회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회에 걸쳐 태국, 한국, 중국, 일본에서 순차적으로 열렸으며 환경

사회 가이드라인, 아시아 지역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SDGs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일본의 오랜 원조경험과 신흥공여국인 한국, 중국, 태국의 개발경험 간의 시너지를 활용하여 아시아 역내에서 구체적인 협업수단을 발굴하는 금융협력 플랫폼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순수 원조기관 간 협의체라는 점에서 정부협의체인 ADF와는 차별성이 있다.

EDCF-IFAD MOU 체결 | EDCF는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 IFAD)과 저소득국의 빈곤감축을 위하여 2014년 5월 '개발도상국 농촌개발을 위한 금융협력 MOU'를 체결하고, EDCF가 수립한 농촌종합개발모델의 공동 실행에 합의하였다. IFAD는 1977년 설립되었으며 국제금융기구 중 유일하게 농업과 농촌개발 전문 UN산하기구이다. 장기저리 차관과 보조금을 제공하여 농촌 인프라 건설, 주민조직 구축과 역량강화, 저장·가공·유통과정 개선, 축산·어업 관련 개발 사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EDCF 농촌종합개발 모델은 생산·수확·판매 등 농업활동 전 단계에 필요한



한국수출입은행-국제농업개발기금 MOU 체결(2014. 5. 9)

관련 영농교육센터, 관개시설, 농가도로 등 인프라를 사업지역에 일괄 구축하여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사업이었다. 실행과정에 우리나라 농촌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을 접목시켜 개발도상국 주민 주도의 자립형, 지속가능형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업무협약을 통하여 국제기구가 최초로 EDCF 농촌개발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새마을운동 국제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제56회 IDB 한국총회 개최 | 제56회 IDB 한국총회가 2015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44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IDB의 핵심 현안과제인 민간부문 지원조직 개편방안과 '2010~2020 기관전략'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민간 주도의 중남미 경제성장 촉진을 위하여 기존 미주투자공사(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 IIC)에 20억 3,000만 달러의 자본을 출자하여 IDB 산하에 흩어져 있던 민간부문 지원 조직을 하나로 합친 기구로 뉴코(NewCo)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3대 전략적 정책목표인 포용적 성

뉴코(NewCo)¹ IDB는 2015년 3월 부산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민간 주도의 중남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IDB의 민간부문 지원조직 개편 방안으로 기존 미주투자공사의 자본을 확대하여 뉴코(NewCo)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IDB 산하에 흩어져 있던 민간부문 지원 조직을 하나로 합친 뉴코가 탄생하였다. 우리나라는 뉴코에 지분 4%를 출자한 7대 주주이다.

장, 지속가능한 혁신, 역내 경제통합 설정을 의결하였다.

한편 이 총회를 계기로 정부는 중남미 지역과의 상호 윈윈하는 공공 번영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중남미 개발협력플랜'을 마련하였다. EDCF를 포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10억 달러 지원(EDCF 5억 달러, 수출금융 등 5억 달러) 계획을 마련하였고, 향후 2년간(2015.3~2017.2) 1억 달러 한도로 중남미 지역 인프라 개발사업에 IDB와 협조용자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제56회 IDB 한국총회 개최(2015. 3. 28~29)

7. MDB 협력 통한 지원효과 극대화

MDB와의 협력은 MDB의 분야별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개별 공여국이 지원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 또한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문제와 SDGs 달성 등 글로벌 공동 책임과 공동 대응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주요 MDB와 MOU나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굳건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특히 WB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지역 개발금융기구인 ADB, IDB, AfDB 등과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협조용자 후보사업 발굴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MDB와의 협력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도 활발하여질 전망이다.

MDB 협조용자 확대로 국제사회 위상 제고

2010년 OECD DAC 가입과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ODA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선진 원조국들의 원조규모가 감소하고 국제 원조기관들의 재원 확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원조기관 사이에 서로 협력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 예산제약에 따른 부족한 원조규모와 지역 정보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MDB)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MDB와 함께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MDB가 보유하고 있는 폭넓은 원조시장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원조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MDB 협조용자를 주목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주요 MDB와 중기 협조용자 규모, 정보공유와 인적교류, 정례 협의 등 포괄적 협력 방안을 포함한 MOU를 체결하여 MDB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EDCF-MDB 협조용자 MOU 현황

ADB	AfDB	WB	IDB	CABEI
6억 달러 (2015.5~2018.5)	6억 달러 (2014.1~2018.12)	3억 달러 (2015.4~2019.3)	1억 달러 (2015.3~2017.12)	1억 달러 (2017.1~2019.1)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체계적 협력체계인 MOU로 MDB와의 인력교류, 연례협의, 사업발굴 등이 활성화되면서 지속적으로 협조용자 성과가 가시화되었다. 또한 EDCF는 2016년에 WB, ADB와 사업발굴, 정보공유, 협조용자 유형 등 세부 실행 내용을 포함하는 실행약정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양 기관 간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

MDB와의 협력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6년 말까지 ADB, IDB, AfDB, WB 등 10개 기관과 39개 사업에 16억 5,200만 달러를 협조용자로 지원하였다. 특히 IDB와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2015년 3월 부산에서 열린 제56차 IDB 연차총회에서 1억 달러 규모의 EDCF-IDB 공동협력기금(EDCF-IDB Co-financing Facility)을 설립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국가에 대



솔로몬군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심사출장(WB 협조용자)

EDCF-IDB 공동협력기금(EDCF-IDB Co-financing Facility)지원 사례 ¹ 2013년 신탁기금(IDB 지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니카라과 정부의 최우선 국가 과제인 IT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니카라과 브로드밴드 프로그램'을 IDB와 공동으로 수립하였다. 2014년에는 KSP-IDB 공동컨설팅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기반한 ICT 시스템 구축과 브로드밴드 도입에 관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2015년 9월 최초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달러 규모의 니카라과 브로드밴드 구축사업이 승인되어 공동협력기금에서 2,500만 달러, IDB에서 2,5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인터넷 소외지역에 대한 브로드밴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성을 제고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 지원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는 ICT를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의 대외경제협력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었다.

공동협력기금은 1억 달러 규모 소진한도 방식의 협조용자로서 IDB가 사업 심사, 차관계약 체결, 구매, 자금 지출과 운용·회수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우리나라는 유망한 후보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IDB와 연례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 개발단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MDB 신탁기금과 EDCF 연계 강화

신탁기금이란 MDB 회원국 정부가 해당 MDB의 역내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준비 등을 목적으로 출연하고 사용하도록 위탁한 기금을 의미한다. 신탁기금은 용도에 따라 크게 협조용자신탁기금과 기술협력신탁기금으로 나뉜다. 협조용자신탁기금은 개발 프로젝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용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기술협력신탁기금은 수원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기술지원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 신탁기금의 설립 목적에 따라 세부 용도는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5년 12월부터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 업무협약을 맺고 기획재정부가 MDB에 출연한 단독(Bilateral) 신탁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

기금지원 요청사업에 대한 심사(사전 검토 포함) △기금과 기금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중간보고·결산·평가 등 관련 보고서의 검토 △국제금융기구 재원보충회의 지원 △기금 관련 협의와 회의 지원 △기금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 △기금 운용전략 수립 지원 △기금과 EDCF, KSP, 협조용자 등 ODA 사업 간 연계 지원 △기타 기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6년 11월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탁기금은 모두 15개로, WB, IDB, AfDB, ADB, EBRD 등 5개 국제기구의 5억 5,000만 달러 규모이다.

업무협약상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탁기금 사업제안서 승인 심사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MDB가 신탁기금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사업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한다. 기획재정부는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제안된 사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MDB 신탁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2005. 12. 16)

최근 전략적 ODA 정책 추진을 위한 원조의 연계성과 효과성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신탁기금과 EDCF 사업 간의 연계와 시너지 확대가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업발굴(KSP)에서 준비(신탁기금, 사업준비 기술지원), 시행(EDCF 차관, 개발금융)으로 이어지는 MDB 협력사업 추진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토털 솔루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최근 MDB 등 국제개발기구의 사업 규모는 날이 확장되어 가는 추세다. 국제조달시장 규모는 약 5조 달러로 추정되나 우리 기업의 수주 실적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국제경쟁입찰로 진행되는 국제조달시장 진입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EDCF는 KOICA,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해외건설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2012년부터 연 1~2회 '중소·중견기업의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EDCF, KOICA, MDB 등 주요 개발협력기관의 ODA 사업 구매조달 절차와 수주 전략 등 맞춤형 실무강의와 심화과정인 스터디 세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국제조달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또한 EDCF는 WB가 발주하는 해외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WBG(World Bank Group : 세계은행그룹)와의 파트너십 증진에 기여하고자 세계은행그룹과 공동주관으로 '세계은행그룹 협력사업 설명회'를 2015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세계은행그룹과의 조달정책과 사업입찰 정보 등을 소개하고 세계은행그룹인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국제금융공사),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 국제투자보증기구) 등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세계은행그룹의 각 분야별 프로젝트 담당자와 조달 전문가와 우리 기업의 1:1 면담을 주선하여 우리 기업의 MDB 조달시장 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교육(2015. 5. 27)



한국수출입은행-세계은행그룹 협력사업 설명회(2016. 3. 22)



제5차 KOAFEC 장관급 회의(2016. 10. 25)



제5차 KOAFEC 장관급 회의(2016. 10. 25)

KOAFEC을 활용한 금융협력 패키지 지원 확대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성된 KOAFEC은 성공적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와 풍부한 자원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번영의 길을 찾고자 2006년부터 격년제로 장관급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6년 10월 제5차 ‘한-아프리카경제협력회의체(Korea-Africa Economic Cooperation : KOAFEC)’ 장관급 회의에서는 ‘산업화 및 포용적 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농업의 질적 변환(Transforming Africa’s Agriculture through Industrialization and Inclusive Finance)’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경제발전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문화를 알려 참석한 아프리카 각국의 장관급 인사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특히 제5차 회의에서는 민관협력포럼이 신설되어 과거 관(官)·관(官) 협의체였던 KOAFEC을 민(民)·관(官) 협의체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아프리카 개발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와 관련하여 EDCF 차관, 인프라 건설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신탁기금과 KSP 등으로 구성된 10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금융협력 패키지가 발표되었다.

8.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유·무상 연계 강화

EDCF는 한정된 ODA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여러 ODA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유·무상 연계 노력은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주도의 통합적인 ODA 실적을 위한 다양한 연계 제도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KOICA와는 양 기관 사업 간의 개별적인 연계 단계를 벗어나 이제는 연계모델 구축, 기관 간 인력교류 등의 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 EDCF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개발효과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교육부·보건복지부 등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유·무상 협력체계 구축

2010년 OECD DAC 가입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ODA 체계의 선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한정된 ODA 예산을 감안할 때 EDCF, KOICA, 정부부처 등 시행기관이 다원화된 ODA 추진체계에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관 간 연계 활성화가 핵심과제로 자리 잡았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ODA 전략 수립과 통합 ODA 평가, 홍보, 통계관리 등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한 기본 틀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기관별 상이한 사업진행절차 등으로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에 국무조정실 주도로 ODA 시행기관의 사업발굴과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2011년 12월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에 따라 ODA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ODA 시행기관의 사업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2013년 8월에는 제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업 2년전(n-2년) 예비검토제 도입을 반영하여 예비사업정보를 등록하고, 사전적으로 연계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함으로써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2017년 상반기 ODA 합동 워크숍(2017. 2. 23)

또한 사전정보공유 활동을 강화하고자 2013년 3월부터 연 2회 ODA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 시행기관의 ODA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발협력 국제동향 소개, 사업추진 절차와 제도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2016년 6월부터는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유·무상 ODA의 양대 집행기관인 EDCF, KOICA 간 5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점협력국 조정, CPS 중간점검, 유·무상 연계사업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논의 결과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협력에는 유상차관이 적합하고, 기술협력에는 무상기관이 적합한 점을 고려하여 유상 원조와 무상원조의 기능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분업과 협업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금융협력과 기술협력이 유기적으로 조화된 패키지형 연계모델을 고안함으로써 사업단계에 따라 지원시기와 내용을 차별화한 맞춤형 기술 협력을 연계하여 EDCF를 통한 금융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유·무상 연계사업 실적



유·무상 연계지원 확대

유·무상기관의 노력으로 2016년 말까지 승인된 EDCF 사업(375건, 132억 달러) 중 유·무상 연계로 추진된 사업은 82건으로 전체 23%(중복기관사업 포함) 수준이었다. 특히 유·무상 연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시점인 2010년부터는 연평균 9건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원효과성을 제고하였다.

협력기관별로는 KOICA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10건), 기획재정부(9건), 미래창조과학부(6건), 환경부(6건)와 연계하여 개별 부처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였다. 연계 유형별로는 2016년 말 기준 사업타당성조사와 시범사업 등 사업 발굴단계에서 44건, 역량강화 등 사후관리단계에서 30건을 협력하였다.

EDCF-KOICA 간 협력 강화

우리나라의 ODA 집행 대표기관인 EDCF와 KOICA는 창립 초창기인 1990년대부터 협력을 시작하였다. 1995년 베트남 18번국도 개량사업을 첫 사업으로 연계 지원한 이후 KOICA와 2016년 말까지 40건을 연계하여 지원하였다. 이는 EDCF의 유·무상 사업 실적 82건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였다.

2013년에는 양 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원조효과를 제고하고자 상호 교류와 협력증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효율적인 협력을 위하여 양 기관의 경쟁력을 활용한 연계모델을 정립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KOICA가 사업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사업 건설은 EDCF가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두 번째 모델은 EDCF가 지원한 대규모 인프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KOICA가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세 번째 모델은 KOICA가 소규모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효과성이 높아 확대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EDCF가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네 번째는 동일 지역 내 유·무상 공동으로 종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이었다.

EDCF는 KOICA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CPS의 수립, 개발협력사업의 발굴, 시행과 사후관리 등 개발원조사업 전 과정에서 연계하기로 하였다. 정보공유를 위하여 직원 교류와 완공사업에 대한 공동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으며 비정기적으로 개최하였던 평가협의회도 분기별로 개최하여 국내외 ODA 동향과 평가 노하우 등을 공유하였다.

2015년 12월에는 분야별 구체적인 목표와 발전 과제를 담은 ‘협업 강화를 위한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구축하여온 협력관계를 보다 전략적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협업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공동지원, 개발도상국 농촌종합개발 협업, 사업지속가능성 제고, 대국민 ODA 인식 증진, 성과지향적 협업모델 구축을 5대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기관별 지원방향과 수단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조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2015년 9월 UN개발정상회의에서 공표된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유·무상 연계 모델

	유형	내용
모델1	마스터플랜/개발조사(무상) + 인프라 구축(유상)	무상원조로 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후, 유상원조로 인프라 시설을 건설
모델2	인프라 구축(유상) + 사업운영 지원/사후관리(무상)	유상원조로 인프라 건설, 무상원조로 초청연수, 전문가와 봉사단 파견을 통한 기술지원
모델3	시범사업(무상) + 대규모 확대사업(유상)	무상원조 소규모 시범사업 실시 후, 사업 확대 수요가 있는 경우 유상원조로 대규모 사업 지원
모델4	동일 지역 내 종합 인프라 구축	동일 지역에 유·무상 공동으로 종합 인프라 구축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 건설사업 심사출장
(2016. 9. 21)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 건설사업 현장

주요 연계사업인 호치민 메트로 5호선 건설사업,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건설사업, 라오스 사바나켓주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유·무상 협업으로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연계 모델을 확립하여 유사한 연계사업으로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EDCF는 또한 KOICA에서 주관하는 대국민 ODA 인식 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양 기관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원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류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9.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지원제도 확충

EDCF는 2016년 2월 체계적인 환경·사회영향심사 시스템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제정하였고, 수원국 정부의 사업 관련 환경·사회관리 이니셔티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국별 상황에 최적화된 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EDCF의 전략사업과 중점분야의 개발과 사업발굴을 위한 지침서인 분야별 모둠화 가이드를 제정하였다. 지원하는 사업의 효과성 확대와 최적투자가 가능하도록 수원국 정부에서 요구되는 사업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과지표 설정기준을 개선하고 수원국 공동평가 실시를 통하여 사업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EDCF 세이프가드 도입 필요성 대두

ODA 규모 증가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업에 따른 환경 파괴와 비자발적 이주문제 등 환경·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EDCF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ODA 기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였다.

WB는 1989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사회평가를 실시하도록 은행운영지침(Bank Operation Directives)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추가로 9개 정책을 개발하여 현재에 이르는 10가지 환경사회정책(Safeguard Policy)으로 완성하였다. 또한 대륙별 지역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MDB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유사한 환경·사회정책들을 수립하였다.

물론 국제금융기구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사회정책을 수립한 것은 아니었다. WB의 경우 브라질(고속도로 프로젝트)과 인도(댐 건설 프로젝트) 등 몇몇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프로젝트 지원 과정에서 환경문제와 비자발적 이주 문제로 국제적인 리더십과 대외적 평판에 위기를 맞았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WB는 사업 지원의사를 결정하기에 앞서 환경·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

하고, 이를 심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내부 전담조직 구성과 준법 감시 등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사업에서 환경·사회 영향을 고려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WB는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하였고 이것들이 사업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단계 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교훈으로 얻게 되었다.

WB 등 우수 국제금융기관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ODA 시장에서도 환경·사회 영향을 고려한 시스템 도입이 현실화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EDCF 업무에 대한 심사 등 포괄적인 업무를 수탁받아 지원 사업을 심사할 때에 자체적인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인 '환경영향 심사기준'(2006. 11 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EDCF가 지원하는 많은 수원국이 대규모 인프라 지원 사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EDCF 사업실시 과정에 환경·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나 비자발적 이주 등의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기존의 규정과 제도 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의 발굴·승인·시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지원한 고체폐기물 처리장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비자발적 주민이주 문제가 발생하였고, 도시 통근열차 사업에서 비자발적 주민이주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EDCF는 대규모 지원사업과 MDB 협조융자사업 추진 시 다른 선진 ODA 기관의 정책과 동등한 수준의 환경·사회영향 심사체계가 필요하였으며, 사업단계별 세부 적용원칙의 보완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EDCF는 기존의 내부 규정을 정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EDCF 세이프가드 도입과 사업 적용

EDCF는 주요 수원국가들에 대한 다른 ODA 기관의 세이프가드 적용사례와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ODA 기관의 환경·사회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가장 합리적 수준에서 이를 도입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부 수원

국의 경우 경험 미숙 등으로 세이프가드 적용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주민이주 등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선진 ODA 기관이 세이프가드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 원조, 전문인력 지원, 역량강화 등의 수단들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파악하였다.

EDCF 세이프가드는 EDCF의 경쟁력인 신속한 사업발굴과 승인 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도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진행절차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사업의 규모, 비용효율성, 역량 수준 등 상황에 적합하도록 탄력적인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 아래 새롭게 도입할 제도는 수원국 시스템 접근법(Country System Approach)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제 수준과 수원국 기준이 다를 경우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양 제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지원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2016년 2월, 체계적인 환경·사회영향심사시스템인 EDCF 세이프가드 제도를 제정하였다. 수원국 정부의 사업 관련 환경·사회관리 이니셔티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국별 상황에 최적화된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른 ODA 기관의 정책과 동등한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보전과 개발의 조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환경사회영향평가 등의 활용, 정보공개,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주요 기본 원칙으로 구성하였다.

본격적인 EDCF 세이프가드 도입을 계기로 2017년 8월 현재 총 15건의 환경 사회위험등급분류를 실시하였으며 9개 사업에 대한 환경사회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다. 특히 사업 관련 정보는 EDCF의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EDCF는 세이프가드 제도 수립 이후 수원국 시스템 준수와 수원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지원 사업(2016. 5. 9)

국 역량강화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한·미안파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의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곤강으로 단절된 미안파의 옛 수도 양곤의 북부 지역과 남부 달라 지역을 교량으로 연결하는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증대하고, 두 지역 간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시간과 운행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리 건설로 인적·물적·경제 교류를 활성화시켜 달라 지역의 빈곤감소와 생활여건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양곤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는 이 다리 건설로 인한 지형, 자연생태계, 자연경관의 변화에 대한 영향조사, 사회적·문화적 환경영향조사와 부정적 영향의 저감 대책 수립 그리고 지역주민, 정부, NGO, 시민단체 등과 이해관계자회의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정보공개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DCF는 수원국 정부의 환경사회영향 절차와 적절한 관리역량 개발, 현지 컨설턴트의 조사역량 강화로 세이프가드 적용 등에 대한 지식공유와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도 EDCF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이라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EDCF가 지원하는 사업의 부정적 환경사회영향을 관리하고, 수원국의 시스템을 준수 하되 부족한 부분은 기술전수와 역량강화지원을 통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이어나갈 것이다.

EDCF 분야별 모듈화 가이드 정립

EDCF 분야별 모듈화 가이드는 EDCF의 전략사업과 중점분야 개발과 사업발굴을 위한 지침서이다. 중점분야인 교통·인프라, 에너지, IT·서비스, 지역개발 등 4개 분야 13개 세부 섹터와 일반분야인 도로, 교량, 수자원개발, 건축 분야 등 4개 세부 섹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사업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사업의 규모와 구성, 사업분야별 해외경쟁력, 채용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수단, 사업의 실사례 등이다.

최근 원조경쟁 심화로 EDCF 주도의 사업발굴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원국 수요에 맞는 모듈화 가이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분야별 모듈화 가이드는 EDCF에서 수원국 정부와의 사업발굴, 사업개발 관련 협의에서 주요 사업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중점분야별 전략사업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강점분야별로 수원국에 비전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업 분야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와 여러 기관이 연계된 사업인 경우 MDB, KOICA, KSP 그리고 국내 관련 기관까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발굴 안내책자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분야별 모듈화 가이드는 EDCF가 지원하는 사업의 효과성 확대와 최적투자가 가능하도록 수원국 정부에서 요구되는 사업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매년 새롭

EDCF 분야별 모듈화 가이드 구성

구분	분야	주요 섹터	구성내용
중점분야	교통 인프라	메트로	1. 기본방향 2. 사업규모 및 구성 3. 사업분야별 해외경쟁력 4. 채용조달 패키지(예시) 5. 사업 발굴 시 주안점 6. [참고] 사업지원사례 또는 요소별 사업비 내역 등
		철도	
		공항	
		항만	
	에너지	태양광발전	
		송배전	
		전기차 충전인프라	
	IT·서비스	전자정부	
		보건	
		교육	
	지역개발	농촌종합개발	
		도시개발(상·하수도)	
		도시개발(폐기물 처리)	
일반분야	인프라	도로	
		교량	
	수자원	댐·하천·관개	
	건축	건축	

게 바뀌는 기술 트렌드, 구성, 항목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사업구성요소 발굴과 심사 등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개발도상국 및 다른 개발협력기관과 공동평가 실시

1990년대 들어 분야별원조, 국별개발원조, 협조용자 등 다양한 원조방식이 도입되면서 원조기관, 협력대상국, NGO 등 다양한 주체의 평가참여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DCF도 이러한 국제원조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2012년에 'EDCF 공동평가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그간의 평가경험을 바탕으로 OECD DAC 공동평가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만든 이 지침서는 협력대상국의 입장에서 평가와 환류로 원조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공동평가의 기본 취지에 맞게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팀 구성, 관리그룹 운영과 평가보고서 공개 등 공동평가 절차를 담고 있다.

EDCF는 2016년까지 수원국과 21건의 공동평가를 실시하였다. 2011년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평가를 협력대상국 정부와 공동평가로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캄보디아에 양질의 설비와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신규 직업훈련원을 건립하여 숙련기술자를 양성함으로써 캄보디아 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었다.

EDCF와 캄보디아 정부는 평가프레임워크 수립단계에서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합의하고 의사록(Aide Memoire)을 작성하였다. 양측은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을 향후 정책과 EDCF의 캄보디아에 대한 CPS 내용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지 평가 워크숍을 열어 현지 이해관계자가 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얻은 교훈과 제언을 반영하는 등 협력대상국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평가과정에 임함으로써 향후 상호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다.

수원국과의 공동평가 실시 외에도 2010년부터 OECD DAC EvalNet에 참여하여 공동평가 등 회원국 간의 협력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3년에는

EDCF 공동평가 지침서 주요 내용

- (정의) 공동평가란 다수의 개발협력기관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평가.
- (평가원칙)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과 OECD DAC의 평가 원칙인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 (고려사항)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석 지원이 필요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운영기관 주도로 워크숍 실시. 또한 워크숍에 논의된 내용과 협력대상국 의견을 최종평가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OECD DAC과 공동으로 ODA 국제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평가기준 활용사례와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수원국, 국제기구와의 평가정보 교류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성과평가지표 설정기준 개선

2011년 9월에는 제21회 대외경제협력기금업무 취급규정을 개정하여 평가의 종류를 평가주체, 평가시기, 평가대상에 따라 구체화하였다. 또한 사후평가 대상 사업을 기존 2,000만 달러 이상 사업으로 제한하던 기준을 완화하였다. 평가의 필요성과 비용 대비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후평가 대상 사업 이외에도 평가가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별, 분야별, 주제별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단순히 개별사업만 평가하던 범주에서 벗어남으로써 EDCF 국가와 분야 지원전략 수립에 필요한 교훈 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제별 평가로 사업의 단기적 성과는 물론 대상국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력까지 분석이 가능하였다. 아울러 평가결과 공개를 위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원조의 투명성과 대국민 책임성을 제고하였고, 환류 조항을 신설하여 평가에서 얻은 제언과 교훈사항 등을 동종·유사분야 사업의 심사와 관리, 제도개선 등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위한 기반 확립

2016년 8월 EDCF는 SDGs와 EDCF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성과평가지표 개선 필요성, 신성장 분야 지원 확대 기초와 다양한 분야 이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성과평가지표 설정기준을 개정하였다. 교육 관련 사업 지표를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분야로 세분화하였으며, 보건 관련 사업 지표를 EDCF 사업 대부분을 포괄하는 3차 의료기관 수준 지표로 개선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감안하여 EDCF가 주력하고 있는 전력·발전 분야 지표를 설정하였고, 전자정부 관련 사업 지표를 사업범위에 따라 기반시설 사업과 솔루션 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젠더 관련 지표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EDCF 사업 관련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완공 시점에서 당초 목표로 하였던 산출물 확인과 단기성과 달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담은 EDCF 완공점검표 작성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성과관리 강화와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완공점검표 작성 시의 현장점검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점검표 작성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과 위험요인 점검 사항을 추가하고, 사업시행 중에 발생한 환경·사회영향 점검을 위한 기준도 추가하였다.

이로써 EDCF는 사업승인에서부터 사후평가까지 단계별 성과관리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확립하였다. 개별사업의 단기성과와 산출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EDCF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측정 효과와 중장기 영향력 측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초선(Baseline) 자료로의 활용 가능성도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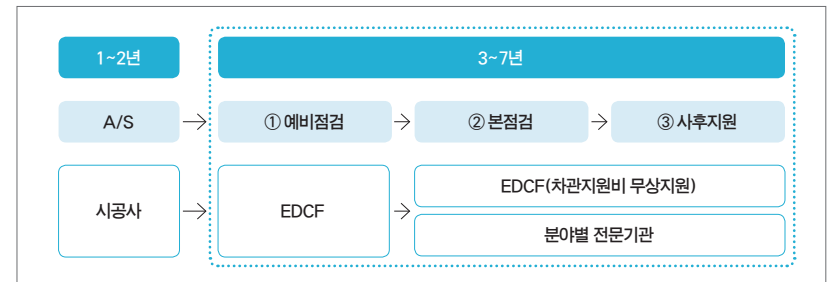
이와 같이 평가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EDCF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존 산출물 중심에서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였다.

EDCF 완공사업 사후관리 지원제도

EDCF는 완공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22일 'EDCF 완공사업 사후관리 실무기준'을 제정하였다. 사후관리 지원제도는 완공 후 3년 이상 7년 이하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사후관리 필요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절차는 예비점검, 본점검을 포괄하는 사후점검과 사후지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예비점검에서 사업자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본점검 필요여부를 파악하고, 예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담당부서와 협의 아래 최종 본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본점검은 예비점검에서 발견한 주요문제 사항들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수원국과 사후지원 계획 등을 협의한다. 본점검 결과 사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원국 정부가 EDCF에 사후지원 요청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사후지원을 실시한다.

사후관리 지원제도 체계



10. EDCF 인식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대외원조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한 대외원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원조 확대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EDCF는 다양한 지지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TV와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EDCF 인식제고에 힘을 쏟았으며, 유명 스포츠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였다.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EDCF 캠프와 개발협력 아카데미, 대학생 서포터즈, 국제개발경시대회, EDCF 인턴 등 단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외원조정책 수립과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학계·시민단체와 함께 관련 간담회·포럼·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EDCF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EDCF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민 지지기반 확보 필요성 대두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피폐하여진 민생을 살리기 위하여 식량원조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는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대외차관에 의존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87년 EDCF를 설립하여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OECD 가입 이후 유·무상 원조를 통한 경제협력을 점차 강화하였다. 특히 2010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확대와 원조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된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원조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높아진 대외 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NI 대비 원조비율은 OECD DAC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위상에 걸맞은 대외원조 규모 확대를 요구하는 대내외 목소리가 점차 커져갔다. 이에 정부는 2006년 8월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 및 VISION 2030'을 수립하여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를 2030년까지 OECD DAC 회원국 평균인 GNI의 0.3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

표로 설정하였다. 이후 단계적 실행으로 2010년 11억 7,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ODA 규모를 2015년에는 19억 1,539만 달러 수준으로 대폭 증가시켰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우리나라의 GNI 대비 원조총액은 0.13%로 여전히 OECD DAC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대외원조 규모를 GNI의 0.2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2015년 11월 수립하였다. 대외원조의 한 축을 담당하는 EDCF도 '2016~2020 대외경제협력기금 중기재정계획'을 2015년 12월 수립하여 원조규모를 확대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EDCF를 포함한 대외원조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EDCF가 지원규모를 확대하려면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한 대외원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원조 확대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약계층·청년고용 지원 등 국내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EDCF 지원 확대는 지원 필요성과 지원 효과 등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선행되어야 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1년 실시한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대외원조에 대한 지지도는 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52%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개발원조 지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선진국의 대외원조 사례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 확대와 비구속성 원조 등 질적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는 등 대외원조와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여

겨졌다.

이에 EDCF는 국민들이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TV와 신문·잡지 등의 매체와 토론회·설명회·사회관계망 활동 등을 통하여 대외원조 관련 국내외 동향, 주요정책과 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외원조의 외교·경제적 중요성과 효과 등을 설명하여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중매체를 통한 EDCF 인식 제고

EDCF는 국내의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고, OD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며, 민간기업과 국민이 참여하는 개발협력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체 선호도가 높은 TV와 주요 일간지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에 주력하였다.

2014년 2월에 걸쳐 SBS에서 방영된 '기적을 만드는 씨앗 EDCF'는 경부고속도로와 포스코 등 유상원조로 이루어진 국내 사업을 소개하며 유상원조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집중 조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원조경험이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유상원조를 통한 우리나라 경제발전경험을 환기시켰고, 청년층에게는 우리나라의 원조역사와 유상원조사업의 파급효과를 알렸다. 또한 라오스, 베트남, 스리랑카, 케냐, 세네갈 등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EDCF 사업을 소개하며, 유상원조로 변화된 수원국 주민의 삶과 우리의 경제성장을 닮아 가고자



SBS 방영, 기적을 만드는 씨앗 EDCF 다큐멘터리

하는 그들의 열망을 생생히 담아 변모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리고, EDCF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외원조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EDCF 사업이 단순히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사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EDCF를 활용하여 정치·경제 불안정성 등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신규 진출의 길을 열어주고 있음을 사례를 통하여 알렸다. EDCF 사업이 단순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퍼주기식 사업이 아닌, 원조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에게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새로운 무역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원조국-수원국 간 상호 윈윈(Win-Win)형 원조사업임을 보여준 것이다. 국민들의 유상원조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조사업의 신시장 선점효과 등 원조사업의 효용성을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8월에는 MBC에서 방영된 광복 7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원조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에서 원조받던 가난한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지위를 전환한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를 재조명하였다. 특히 1950년대에 이루어진 의료 원조, 1970년대에 이루어진 도로와 철강 등 인프라 원조가 가져다 준 사회·경제 발전상을 재조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의료와 인프라 등 우리가 원조받던 분야가 이제는 세계 각국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원조하는 분야로 바뀐 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의 변화된 위상과 제2의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발도상국의 열망을 담아 우리나라가 이룩한 극복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수많은 개발도상국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2016년 10월 총 6편의 시리즈로 KBS에서 방영된 '슈퍼 아시아'는 기존 원조사업의 효과와 필요성 등을 부각시키는 방식을 탈피하였다. 대신에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률로 2050년 세계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돈과 사람이 몰리는 젊은 대륙 아시아에서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의 해답을 찾고 그 과정 중 대외원조사업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다루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의 국가가 경쟁적으로 대규모 원조사업을 지원하여 빠르

기획기사 게재 내역

연월	신문사	게재 내용
2011.05	조선비즈	원조로 국가이미지-기업실리 한손에
2012.12	한국경제	개발원조 + 수출금융 새기법, 한국수출입은행 라오스서 빛 봤다
2013.01	한국일보	ODA 패러다임을 바꿔라
2014.02	중앙일보	동남아에서 싹트는 또 다른 한강의 기적
2014.07	매일경제	중일, 동남아 아프리카서 원조외교전 후끈.. 한국은 걸음마
2015.03	전자신문	IT인프라 수출 2조 원 돌파.. 개발도상국 진출 비단길 연 EDCF

특별기고 내역

연월	신문사	기고내역
2010.07	내일신문	베트남 원조의 원원전략
2012.06	한국일보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 벤치마킹
2014.09	머니위크	ODA 민간기업 투자 징검다리 역할 되어야
2016.10	한국경제	10년의 약속, 100년의 동행

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대외원조 또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원조국 간의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리고, 정체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EDCF는 TV 외에도 주요 일간지의 기사연재, 전문가 대담, 기고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원조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원조를 통한 국익 추구 실상을 알리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원조방향을 모색하는 등 일반 국민에게 원조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수원국 공무원의 EDCF 차관사업에 대한 소감,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워크숍 참가자의 우리나라 경제발전 상황과 EDCF에 대한 평가, 국내의 대외원조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한 각계각층의 입장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하는 등 다양한 특별기고를 통하여 외부에서 보는 EDCF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EDCF 중장기 운용전략, 제도개선 사항, 사업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외원조의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우리 기

업의 해외진출 설명회, 대외원조 정책세미나,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연수 개최 등의 EDCF 행사 소식을 EDCF에 관심이 있는 이해당사자들과 공유함으로써 함께하는 ODA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DCF 홍보대사 위촉

대외원조를 자주 접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대외원조는 어렵고 나와 동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EDCF는 국민에게 잘 알려진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대외원조가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고, 또한 나와 세계를 이어주는 하나의 다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체조 역사를 새롭게 쓴 양학선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양학선 선수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체조에 대한 강한 집념과 끈기로 자신의 이름을 딴 기술을 세계에 선보이며 우리나라 체조 첫 올림픽 금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였다. 양학선 선수가 보여준 불굴의 도전정신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부단한 도전과 노력을 통하여 최빈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그대로 투영하였다.

특히 양학선 선수의 주종목인 도마와 같이 경제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 도약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부각하여 국민들이 EDCF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양학선 선수는 비빔 훈련과 경기 일정 중에도 EDCF 대학생 캠프, 개발협력 아카데미 등에 참석하여 우리 경제의 주축이 될 청년층에게 쉽고 재미있게 EDCF를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4년에는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를 EDCF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힘겨워하던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박찬호 선수의 도전정신과 성공신화는 개발도상국에 경제발전과 노



박찬호 선수 EDCF 홍보대사 위촉식(2015. 7. 25)

하루를 전수하여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EDCF의 열정과 완벽히 일치하였다. 이러한 EDCF의 열정을 우리 국민들과 나누기 위하여 재능기부, 강연, 광고, EDCF 사업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EDCF가 우리의 꿈과 희망을 개발도상국에게 전수하는 활동임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청년층 참여 확대

EDCF는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담당하며 미래세대 오피니언 리더로서 대외원조 확대에 큰 축을 담당할 청년층의 ODA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을 대외원조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EDCF는 우리나라의 원조경험과 대외원조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유하는 한편, 국제원조 동향, 지원정책과 개발협력 발전방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로 청년층이 EDCF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YES(Young EDCF Story)'로 불리우는 청년층 대상 EDCF 인식증진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대외원조에 대한 이해수준과 관심을 고려하여 EDCF 캠프와 개발협력 아카데미, 대학생 서포터즈, 국제개발경시대회, EDCF 인턴 등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운영은 청년층의 토크 튀는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EDCF 대학생 캠프는 대학·대학원 재학생 50여 명이 방학기간 중 2박 3일간 그룹토의와 퀴즈대항 등 학생들이

EDCF 청년층 참여 프로그램(Young EDCF Story : YES)

프로그램	내용	시기
EDCF 대학생 캠프	ODA, EDCF 집중 특강(2박 3일)	여름/ 겨울방학 (연2회)
EDCF 청년인턴	국내· 해외사무소 파견 (10개월)	1~2월경
한경 개발협력아카데미	개발협력 전문가와 현직자 특강	5월/10월경 (연2회)
EDCF 대학생 서포터즈	온· 오프라인 ODA, EDCF 홍보(6개월)	2월/8월경
국제개발 경시대회	국제개발 정책 관련 논문공모	11월경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꾸며졌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국제기구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강연과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꿈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년 5월과 10월에는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개발협력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ODA와 개발협력과 관련한 재미있는 사례와 실제 경험 중심의 생생한 강연을 통하여 학업에 바쁜 청년층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즐겁게 참여하여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년층을 주축으로 구성되는 EDCF 서포터즈는 국민들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ODA와 EDCF 활동을 설명하는 페이스북과 블로그 운영, UCC(User Created Contents : 사용자제작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이 좀 더 쉽게 대외원조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연수, 국제회의와 포럼 지원, 개발협력분야 명사 인터뷰, 개발원조 관련 책·영화 소개 등의 다양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개발협력을 향한 꿈이 커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서포터즈들이 작성한 블로그 기사 내용을 한권의 책으로 묶은 'ODA 훈민정음, EDCF 서포터즈 ODA를 이야기하다'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ODA와 EDCF 사업을 어려운 경제용어나 복잡한 모델이 아닌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와 그래픽으로 설명하여 청소년과 일반인들도 쉽고 재미있게 EDCF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ODA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EDCF 캠프, 개발협력 아카데미, 서포터즈가 청년층의 EDCF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위한 입문과정이라면 국제개발 경시대회와 EDCF 인턴은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발협력 전문가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심화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국제개발 경시대회는 향후 우리 사회를 주도할 대학(원)생들에게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의 상생협력,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개발 효과성 제고, 시장재원과 금융수단을 활용한 ODA 확대 등 ODA 관련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하여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수 참가자들에게는 상금과 함께 해외 사업현장 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대외원조사업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YES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EDCF는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EDCF 사업 비중이 큰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요 개발도상국에 이들을 파견하여 학교에서 접할 수 없었던 대외원조사업의 생생한 현장과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EDCF 청년인턴으로 활동한 이후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EDCF 인턴을 통하여 익힌 실무경험을 접목하여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국제노동기구)와 OECD 등 국제기구로 진출하는 청년들을 배출하는 등 EDCF 인턴은 국제기구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훌륭한 교두보 역



EDCF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2013. 5. 31)



EDCF 해외인턴 발대식(2016. 3. 29)

할을 하고 있다.

YES 프로그램 외에도 EDCF는 스마트폰이 익숙한 청년층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블로그·페이스북·카페 등 SNS를 활용하여 EDCF와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형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미래사회 ODA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청년층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학계·시민단체·국내 기업과 함께하는 ODA

EDCF는 교육부와 학계 등과 함께 초·중·고 교과서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내용을 수록·보강하여 국제적인 빈곤과 환경파괴 등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ODA와 국제외교·정치·경제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정부의 ODA 추진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외원조정책 수립과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학계·시민단체와 함께 대외원조 관련 간담회·포럼·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개발협력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정사업에 대한 EDCF의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EDCF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유도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ADB 등과 함께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조달시장 진출 설명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OECD 수출진흥협약과 권고사항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도 원조사업에 참여하면서 단기적 수익창출에 집착하기보다는 원조사업의 수행 주체로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기업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원조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제4장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도

1. SDGs 체제 등장과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
2. 개발협력의 환경변화와 당면과제
3. EDCF 중장기 발전방향

1. SDGs 체제 등장과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SDGs가 제시되었다. SDGs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중심의 목표가 아닌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 국제사회의 공동 개발 목표로 경제개발, 기후변화, 평화와 안보, 국내외의 불평등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아우른다. SDGs의 후속조치로 개최된 세 차례의 개발재원 총회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한 민간재원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개발도상국에 유입되는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공적재원의 노력도 ODA로 인정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원조 활동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적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IATI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2016년 8월 원조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MDGs의 성과와 한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가 종료된 시점에서 평가하자면, MDGs는 개발협력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 기념비적 목표이다. 주요 성과를 보면 절대빈곤층 규모를 절반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는 절대빈곤층 비중이 1990년 47%에서 2010년 22%로 대폭 감소함으로써 달성되었다.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유아사망률 감소, HIV/AIDS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퇴치 등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성평등과 일부 목표는 달성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미 달성된 빈곤퇴치의 경우도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의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달성되었으나 실제로 MDGs가 빈곤퇴치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었다.

특히 MDGs가 끝난 시점에서는 MDGs가 제시한 목표 달성여부를 떠나 목표 설정과 방법론상의 한계도 지적되었다. MDGs가 교육·보건·사회 문제 등 아주 기초적인 인간욕구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최저 수준 이상의 소득과 인간개발

을 달성한 그 외의 세계 인구에는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빈곤감축과 교육, 보건, 빈곤퇴치 등을 통한 인간 개발 의제가 인간의 기초욕구를 충족시키는 원조를 통하여 저개발국을 연명시켜주는 하지만 자생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수원국의 경제개발은 등한시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이후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에 주요 고려사항으로 반영되었으며, 현재 국제동향이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프라 개발과 무역 등을 통한 개발도상국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주된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개발목표 SDGs의 도래

2015년 9월 제70차 UN 총회에서 전 세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국제사회가 달성하여야 할 새로운 개발목표로 SDGs가 채택되었다. SDGs는 공통의 지속가능 발전 위협요인들을 동시적으로 완화하여 나가기 위한 17개의 보편적인 목표와



MDGs와 SDGs 비교

구분	새천년개발목표(MDGs)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기간	2001~2015	2016~2030
구성	8개 목표, 21개 세부목표 ①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③양성평등 촉진과 여성권리 보장 ④유아사망률 감소 ⑤모성보건 증진 ⑥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⑦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⑧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①빈곤종식 ②기아종식과 지속가능 농업 ③보건증진 ④양질의 교육 ⑤양성평등 ⑥수자원/위생 ⑦에너지 보급 ⑧성장/고용 ⑨인프라/산업화 ⑩불평등 해소 ⑪도시화 ⑫지속가능한 생산/소비 ⑬기후변화 ⑭해양자원 ⑮육상생태계 ⑯평화증진 제도구축 ⑰글로벌 파트너십
분야	사회·인간개발 중심 (빈곤, 교육, 보건 등)	MDGs + 경제개발·평화·안보·환경 통합 고려 (경제개발, 기후변화, 평화·안보, 불평등 등)
이행대상	수원국 중심	공여국, 수원국 모두 이행
참여자	공여국·수원국 정부, 국제기구 중심	공여국·수원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개발재원	ODA	Beyond ODA ODA + 기타공적재원(OOF) + 민간재원(PF)

169개의 세부목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별 종합적 행동과 글로벌 협력 아젠다를 포함한다.

SDGs는 수원국의 목표이행에 초점을 두었던 MDGs와 달리 공여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 국제사회의 공동 개발목표로서의 의의가 있다.

또한 SDGs는 빈곤, 교육, 보건 위주의 사회·인간개발 중심의 목표로 구성되었던 MDGs를 승계하는 동시에 경제개발, 기후변화, 평화와 안보, 국내외의 불평등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개발 목표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극심한 빈곤과 기아퇴치의 경우 기아와 식량문제, 영향상태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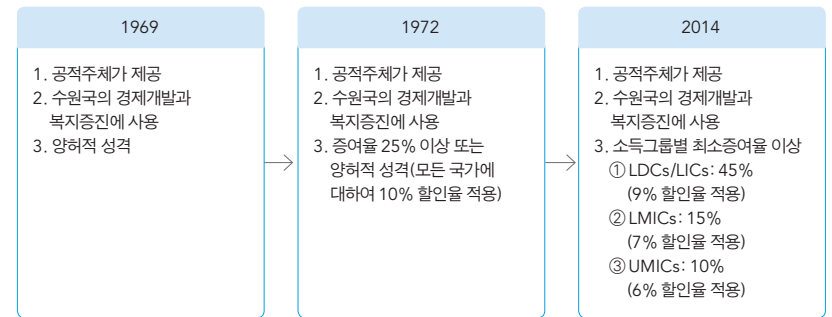
한 논의로 더 세부적으로 구분되었고, 빈곤퇴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논의가 새로 포함되었다. 보건 분야의 경우, HIV/AIDS, 말라리아, 모성보건 등 선별적으로 제시되었던 목표에 더하여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과 웰빙 보장 등으로 확대되었다. 교육 분야의 경우 기존 목표가 초등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SDGs에는 포괄적으로 모든 계층의 교육 보장과 평생 교육의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 분야의 경우도 '아젠다 21'과 '코펜하겐 협약'을 바탕으로 'Rio+20'에서 논의된 환경이슈가 대거 등장하고 기존에 비하여 세분화되었다. 또한 SDGs에는 MDGs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경제부문 발전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향한 목표가 새로 추가됨으로써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이 빈곤감소의 주요 동력이라는 전 세계적 공감대가 반영되었다.

한편 EDCF는 2017년 4월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유상원조 사업의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SDGs 관련 교육, 보건, 공공행정, 수자원, 교통, 에너지, 개발과트너십, ICT로 구성된 8개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SDGs 성과지표에 기초한 성과프레임워크를 수립하였다. 각 분야별 비전과 미션을 수립함으로써 SDGs와의 정책 적합성과 일관성 제고, 성과 중심의 체계를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EDCF는 SDGs 달성과 연계하여 공항, 교통 등 관련 경제 인프라 구축과 우리 기업 현지법인의 기술이전 등 수원국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EDCF 차관 지원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ODA 현대화에 대응한 국제사회 논의

최근 개발재원(Development Finance)의 지형은 공여국 정부가 원조기관을 통하여 ODA를 개발도상국 정부에 제공하던 전통적 형태의 개발재원 흐름이 공여국 정부가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 DFI)과 국제금융기구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민간기업(Enterprises)을 지원하는 형태의 흐름으로 확대되는 등 다변화하고 있다.

OECD DAC의 ODA 정의 변천



2012년 기준 OECD DAC 회원국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재원규모는 약 4,740억 달러로 이 중 28%인 1,350억 달러가 ODA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OECD DAC이 ODA 개념을 최초로 정의하였던 1960년대 후반,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총재원 대비 ODA 비중이 50%에 달하였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는 공적재원을 통하여 동원되는 개발도상국의 민간 재원 유입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논의의 배경에는 Post-2015 SDGs 목표 달성을 위하여서는 현재의 제한된 ODA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 형성이 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일부 공여국의 재정위기 등으로 제한된 공적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재원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SDGs의 후속조치로 개최된 세 차례의 개발재원총회(Financing for Development : FfD)에서는 SDGs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민간재원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ODA 적격기준과 측정방식도 변화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공여국의 노력을 OECD DAC 통계체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2년 ODA 아닌 자금(非 ODA)의 OECD DAC 통계 보고 필요성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4년부터 공식화된 'ODA 현대화(Modernising ODA)' 논의로 이어졌다.(도표 OECD DAC의 ODA 정의 변천 참조)

국제사회는 그동안 비(非) ODA 흐름으로만 여겨졌던 민간재원의 개발협력에 대한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고, 위험이 높은 개발도상국 시장에 유입되는 민간금융을 유인하는 공적재원의 노력을 ODA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DCF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재원조달과 금융 기능의 연계를 통해 공적재원과 민간재원을 모두 활용한 금융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DFI의 잠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OECD DAC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이미 DFI와 비슷한 활동 내역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었다. 실제 유럽 DFI의 해외투자 금융지원 활동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금융과 지분투자와 기능과 목적 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보였다. 향후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같은 기관의 DFI 기능을 살려 개발도상국 민간지원을 강화한다면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지원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원조투명성을 위한 IATI 정보공개

우리나라 ODA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국회, 시민사회, 학계 등으로부터 ODA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요구가 증가하였다. 아울러 OECD, UN 등에서 각국의 ODA 투명성 제고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국제적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 우리나라는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첫걸음으로 2016년 8월 11일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운영위원회 참석(2015. 12. 4)

:IATI)에 우리나라 원조정보를 최초로 공개하였다. 2015년 11월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OECD DAC 29개 회원국 가운데 14번째로 IATI 정식 회원이 되었다. 그 후속조치로 IATI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정보공개를 실시하였다. 현재 IATI 관련 행정절차는 외교부가 담당하고, 원조정보의 취합과 보고는 ODA 통계기관인 EDCF가 담당하고 있다.

IATI에 공개되는 원조정보는 기관정보와 사업정보 등 4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2016년 8월 우리나라는 IATI 정보공개 기준에 따라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EDCF와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가 개발도상국에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프로젝트 사업 약 740건의 13개 필수항목(사업명, 수원국 등)을 우선 공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 4월, 2차 IATI 정보공개를 실시하였다. 공개기관으로는 1차 정보공개에 참여한 EDCF와 KOICA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외교부,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참여하였다. 공개항목에 사업정보 5개(협력형태, 흐름형태, 재원형태 등)를 추가하여 약 2,020건 사업의 18개 항목을 공개하였다.

IATI 정보는 진행 중인 최신 ODA 사업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년도 ODA 지원 실적을 공개하는 OECD DAC 통계와 차별성이 있다. 아울러 원조정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¹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공여국, 국제기구, 민간기관 등이 참여하여 ODA 관련 정보 공개 등 투명성 증진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는 이니셔티브(initiative)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발적 협의체

1차, 2차 IATI 정보공개 내용 비교

구분	공개 기관	공개 항목
1차 공개	EDCF, KOICA	13개
2차 공개	기획재정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EDCF, KOICA	18개

※주 : (기관) 기관ID, 기관명, 보고기관명

(사업) 사업ID, 보고기관명, 사업명, 사업설명, 참여기관, 사업현황, 사업일자, 수원국, 수원지역, 분야, 사업협력형태(양자·다자 등), 흐름형태(ODA·OOF·민간NGO 등), 재원형태(출연·차관 등), 원조형태(프로젝트·기술원조 등), 자금거래(약정·지출액, 일자)

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강화하여 수원국의 원조총량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원조효과성과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DCF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원조정보 공개범위와 주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예정이며, 시민사회와 학계 등의 참여로 우리나라 국제개발 협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2. 개발협력의 환경변화와 당면과제

과거 개발협력은 주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원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며 빈곤종식과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하여는 인간·사회개발을 넘어 경제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협력 패러다임 또한 '원조'를 넘어 경제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등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개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개발협력 각계에서는 개도국의 경제개발수요에 맞추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개발협력 활동을 주류화하여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개도국 분화에 따른 개발수요 스펙트럼의 확장 |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협력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감축하고 사회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원조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3%에서 3% 사이의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던 개도국들은 2000년대에 들어와 연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였고, 글로벌 경제에서 전에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모든 개도국들이 동일한 성장 궤도를 달린 것은 아니다. 저개발 시기에 있는 개도국에서는 여전히 기아퇴치, 기초보건, 식수공급, 지역개발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욕구(basic human needs) 충족을 위한 빈곤 탈출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 성장국면에 진입한 개도국은 경제성장 국면에 안착하기 위하여 양질의 유형(시설구축)·무형(정책자문, 제도수립) 인프라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개도국 경제 간 개발수요 차이가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등 일국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글로벌 이슈들이 증가하며 개발수요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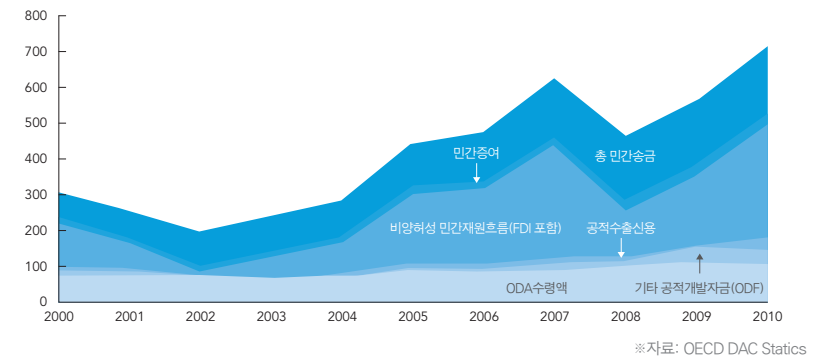
국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약 | 개도국 분화와 더불어, 2015년 국제사회에서 다뤄진 일련의 개발 공약과 협의체는 최근의 개발협력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2015년 9월 제70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SDGs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개도국의 포용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MDGs가 추구하던 빈곤감축에서 나아가 인간중심(People), 환경(Planet), 경제(Prosperity), 평화(Peace) 그리고 파트너십(Partnership)을 5대 축으로 하는 개발목표간 연계성을 강화할 것을 구체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SDGs는 극빈곤층과 취약계층을 개발과 경제성장의 플랫폼에 진입시키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leave no one behind) 가장 소외된 계층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reach the furthest behind first) 방식의 개발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2015년 7월)과 파리 기후협약(2015년 12월) 또한 포괄적 개발재원 이슈,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기후변화 대응 등을 다루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글로벌 컨센서스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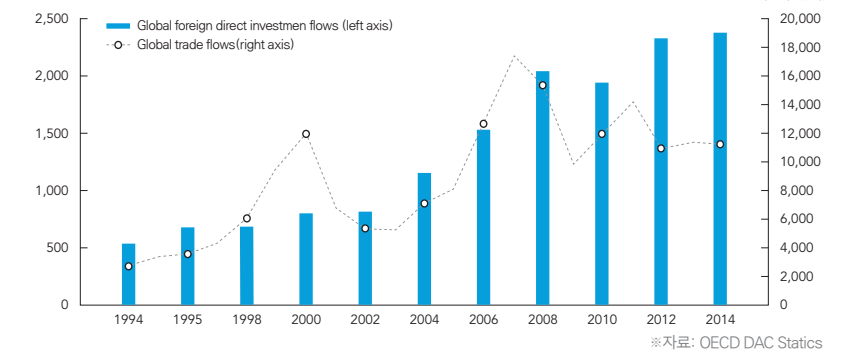
개발재원 수요 증가 : 촉매제로서의 ODA 역할 | 개발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막대한 개발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해졌다. SDGs 달성을 위해 매년 약 3.9조 달러 규모의 개발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현재의 투자규모는 매년 1.4조 달러에 불과하다.¹⁾ 한편, 선진공여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적 개발협력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도국으로 유입된 국제재원 중 ODA의 비중은 점차 감소 중으로 1960년대에는 유입된 재원 중 50%를 차지하던 ODA가 2015년에는 20%까지 감소하였고²⁾, 증가폭 역시 당분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 UNCTAD (2014),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Investing in the SDGs: An Action Plan, United Nations Publication.
2) OECD DAC Statistics

2000년 이후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국제재원 구성 (단위: 억 달러)



국제무역/투자흐름(1994~2014)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전통적 ODA 확대를 넘어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포괄적 개발재원 동원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활동이 포괄적인 성장과 고용, 혁신의 주요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간 참여형 개발협력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위한 혁신적 채원조달 및 금융 지원, 개발과제에 대한 시장기반 해결책 제시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ODA는 민간부문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 민간투자 재원을 레버리징 하는 촉매제(catalyst)로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원조기관들은 고도화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혼합금융(blended finance) 등을 활용한 민간재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금융협력 방식을 고안하고 있다. 독

일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와 프랑스 Agence Francaise de Development와 같은 개발금융협력기관들은 재정재원 외에도 채권 발행과 시장차입 등의 민간재원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금융재원을 조달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소득수준과 상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금리와 상환구조가 상이한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연대의식 강화 필요 | 세계 각국에서 보호주의 기조가 확대되면서 정부 간 정책공조가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온실가스 감축, 평화와 안보 이슈 등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들은 확대되고 있다. 근시안적인 자국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각국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연대의식을 강화하여 개발재원을 확보하고 개발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3. EDCF 중장기 발전방향

SDGs의 수립,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 글로벌 이슈의 등장,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수요 등은 EDCF의 전략 목표와 지원 방식상의 변화를 요구한다. EDCF는 지난 3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변화하는 국제 개발협력환경에 걸맞은 개발금융협력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화해야 하는 중장기적 과제를 안고 있다. EDCF는 수탁운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협력 및 경제협력 노하우를 심분 활용하여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금융 전문성을 제고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SDGs 가치를 반영한 사업 추진

글로벌 개발의제로 채택된 SDGs는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정의의 가치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 동력인 민간부문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개발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SDGs가 제시하는 가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하여, 지원 사업들이 수원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환경·사회가치의 주류화 | SDGs 체제는 기후변화 대응, 양성 평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환경·사회 가치를 협력 활동 전반에 확산시켜 성장과 분배,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EDCF는 기후변화 주류화 전략을 수립하여 수원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을 반영한 개발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 전 분야에 걸쳐 기후영향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구상, 계획 및 이행에 기후변화 대응 요소를 반영하여 긍정적인 환경

영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2016년에 전면 도입한 젠더 주류화 전략과 세이프가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며 EDCF의 역량 제고와 수원국의 성숙한 협조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하고, 환경사회 문제가 초래되지 않는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양성평등, 노동권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깊이 고려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들도 수원국과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다.

빈곤층과 취약층에 대한 지원 강화 | 개발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에 보다 집중하고, 개발사업의 혜택이 빈곤층과 취약층에 크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EDCF는 상하수도, 전력, 서민금융, 지방도로, 산악터널 등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되고 소득창출 기회를 증진시키는 사업들에 주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계층의 최하위층(bottom of the pyramid)은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발의 주체이자 수혜자로서 이들을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것이다. 이들에게 환영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주체에 대해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대형 인프라 사업의 혜택을 지역사회가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협력기관들과 연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 성장 생태계 구축 지원 | 수원국 민간부문의 성장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것 또한 SDGs 시대에 EDCF가 다뤄야 할 주요 과제이다. 그간 EDCF는 산업기반시설에 투자를 요하는 수원국의 공공사업에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왔다. 앞으로는 수원국 민간부문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직접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EDCF뿐 아니라 정책자문, 기술협력 등을 추진하는 여타 개발협력기관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DCF 파트너십 활동은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추

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별 비교우위를 고려한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 앞으로 꾸준히 금융협력을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성장이 인프라 부족으로 제약받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사업지원방식 다양화

개도국은 각종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부족한 국내 재원을 보완할 외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장기 양허성 차관은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중장기 재정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한편, 개도국이 경제성장 궤도에 진입하면서 개발수요가 다양화되었고, 필요한 재원의 성격도 다양해져 사업의 성격이나 주체의 특성에 맞는 개발금융 수단을 활용하고, 다양한 수단 간의 연계를 통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단순한 자금의 융통이 아닌, 지식협력과의 연계, 민간 투자재원과 연계 등을 통해 개발금융의 가치사슬을 연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최빈국에서는 여전히 ODA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많은 개도국들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양허성 차관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EDCF는 이 점을 고



려하여 개발재원의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메우는 데 양허성 차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한 최적 금융협력 | EDCF는 양허성 차관 중심의 여신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발금융 수단 및 지원방식을 활용하여 개발사업 맥락에 최적화된 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준비차관을 통해 수원국이 대규모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섹터개발차관을 통해 특정분야 다수 사업에 대한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다. 보증 및 지분투자 방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금융 구조화에 기여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도 촉진시켜야 한다. 아울러, MDB 등 해외 개발금융기관과 공동사업도 확대 추진하여 비전통적 금융수단에 대한 EDCF의 전문성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맞춤형 금융 패키지 | 높은 개발과급효과에도 불구하고 개발재원 확보가 어려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유연한 금융협력방식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할 개발 과제이다. EDCF는 시장조달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양허성 차관(개발금융), 전통적인 고양허성 차관, 수출금융 등을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원국이 고양허성 차관을 마중물로 하여 가용한 개발재원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 관계가 투자 사업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지식협력 및 소프트웨어 연계 | 유형 인프라 구축 사업은 견고한 정책·제도가 뒷받침되고,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이 결합됨으로써 그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EDCF는 정책자문-사업추진-운영·관리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개발협력 지원구조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지식협력 및 정책

자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수원국이 우리 발전경험을 현지 맥락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프라 관련 인력양성,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등 소프트웨어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개발효과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연대를 통한 개발사업 확장

파트너십은 개발사업의 과급효과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EDCF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G2G(정부간) 또는 B2B(민간간) 등 유사 그룹간의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접근방식을 견지했던 반면, 미래의 EDCF는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재원을 동원하고 혁신적인 솔루션 도출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국 주도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층위, 그룹과의 파트너십 심화 | EDCF는 수원국의 각급 정부, 민간기업, 주민 등 다양한 현지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수원국이 주도적으로 개발과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차관 지원, 중기 후보사업 협의(국별 프로그래밍) 등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친 수원국의 장기 개발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지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사업관리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여 사업수혜자 그룹의 의견이 사업추진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양·다자 개발금융기관들과 리스크 분담 및 전문성 공유 |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해외 금융협력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상호 전문성을 보완하고 리스크를 분담하는 공동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EDCF는 다양한 기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

다. 이를 통해 지역 연결성 강화에 기여하는 초국경 사업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공공재 투자를 위한 공동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

민간부분의 자원과 전문성 활용 | 민자투자 사업이 활성화되면 이는 개도국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자형 개발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간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양허성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지속되어야 한다. EDCF는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부분의 자원과 전문성이 동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금융협력을 펼쳐 나가면서 개발과급효과 극대화에 금융지원의 초점을 맞추어 상업적 이익 추구하고 개발목적성 간의 상충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전 달성을 위한 자원 확보 | EDCF는 개도국의 포괄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개도국과 지속적으로 협력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다양한 개발금융 수단을 활용하고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GNI 대비 ODA 목표와 발맞추어 EDCF의 연간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증가하는 업무량을 소화하면서 동시에 금융협력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 보강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사업내용 다각화에 따른 지원분야별 기술 전문성을 갖추고, 금융협력 방식 고도화와 개발양상 다원화에 맞추어 거시경제·금융 전문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EDCF 발전방향이 제시하는 여러 행동방침들이 실질적인 개발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역별·국별 사무소를 확대하고 역량을 보강함으로써 현장 실행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비전 달성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알림으로써 대내외적 지지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EDCF는 SDGs 성과과지표에 기초한 성과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이를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충

실히 적용하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신뢰가 가는 성과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시켜 EDCF가 하는 활동에 대한 신뢰를 쌓고,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와의 연계를 실시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다양한 정보 수요에 부응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공개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꾸준히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EDCF는 지난 30년간 변화하는 국제 개발협력 환경과 호흡하며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에 기여해왔다. 이제 지난 3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선진 개발금융협력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화해야 하는 중장기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EDCF의 역할 확대와 협력방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EDCF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향후 EDCF의 지원전략은 분야별·주제별·정책목표별 정합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이며, EDCF는 다양한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과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더 큰 협력과 지지를 얻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자료로 보는 EDCF

1. 국제개발협력의 개념과 역사
2. 수원국과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초기 경험(1945~1987)
3. EDCF 조직 운용과 변천
4. 숫자로 보는 EDCF

1. 국제개발협력의 개념과 역사

ODA의 개념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IDC)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과 빈부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국제개발협력에 사용되는 개발재원은 ODA, 기타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 OOF), 일반 민간자금(Private Flows at Market Terms : PF), 민간부문에 의한 무상원조(Net Private Grants)로 구분할 수 있다.

ODA란 공여국의 공적기관(정부부처와 공공기관 포함) 또는 이 기관의 집행

ODA 인정 기준

공여주체	공여국의 공적기관(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포함) 또는 이 기관의 집행기관 - 상업차관, 무역신용, 해외직접투자 등 민간부문에 의한 자금이전과 NGO 등 민간단체에 의한 자발적 지원은 제외
공여대상	OECD DAC이 인정하는 ODA 적격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국제 NGO, PPP, Networks(단 공여국이 개발도상국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자국 NGO에 지원하는 자금은 포함) - OECD DAC은 ODA 적격 국가 목록(DAC List of Aid Recipients)을 개발도상국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3년마다 결정하며, ODA 적격 국제기구 목록은 당해기구의 설립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
공여목적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 및 복지(Welfare) 증진
공여조건 (양허성)	수원국이 국제자본시장에서 상업적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보다 유리한 양허적 조건
	(현행)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상환액의 현재가치와 액면금액의 차이가 액면금액 대비 (=증여율) 25% 이상인 경우
	(개정) 수원국 소득그룹별 차등화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율이 소득그룹별 최소 증여율 이상인 경우로,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자금흐름부터 적용할 예정(2014년 12월 OECD DAC 각료급회의(High Level Meeting : HLM) 결과) • 적용 할인율 : 최빈개발도상국·기타저소득국(9%), 하위중소득국(7%), 상위중소득국(6%) • 최소 증여율 : 최빈개발도상국·기타저소득국(45%), 하위중소득국(15%), 상위중소득국(10%)

※자료 : OECD DAC 통계지침

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제공하는 증여율 (Grant Element : GE) 25% 이상의 양허적(Concessional) 자금의 흐름을 의미한다. 다만 최근에는 소득그룹별로 상이한 최소 증여율을 설정하는 등 ODA 개념정의가 변경되었다.

ODA의 유형

ODA는 자금을 지원하는 상대방에 따라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구분된다. 양자간 원조는 공여국과 원조자금을 제공받는 개발도상국 간의 거래를 의미하지만, 원조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NGO에 대한 지원이나 공여국 내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기타 비용(이자 보전, 개발원조에 대한 인식증진 활동비용, 채무재조정, 행정비용 등)도 포함한다.

ODA 원조유형 구분 및 내용

구분	내용	
양자간 ODA	예산 지원	일반 예산지원 분야별 예산지원
	NGO, PPP지원 및 프로그램원조	국내·국제 NGO에 대한 지원 및 PPP 지원
		국제기구(다자기구, INGO)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합동기금(Basket funds/pooled funding) 지원
	프로젝트원조	프로젝트원조(사업타당성조사 포함)
	기술협력원조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기타 기술협력(세미나·워크숍 개최, 리서치 등)
		개발도상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채무구제	채무면제, 채무전환, 채무스왑, 채무환매, 채무상환재조정, 채무재융자
	행정비용	개발협력 수행과 관련된 행정비용
	기타 공여 국내 지출	개발에 대한 인식 확산 공여국 내 난민 지원
출연		국제기구 앞 출연금, 분담금, 기부금
다자간 ODA	출자	국제기구 가입 및 지분확대 목적의 납입 출자금
	양허성 차관	ODA 조건(양허적)으로 국제기구 앞 공여된 차관

※자료 : OECD DAC 통계지침

다자간 원조는 공여국이 OECD DAC에서 정한 ODA 적격 국제기구에 출연·출자하거나 양허성 차관으로 지원한 금액을 의미한다. 국제기구는 각국 정부가 회원이 되며, 공여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원을 개발도상국의 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출연·출자금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한 지원이거나 공여국 또는 공여기관이 이 자금의 사용에 일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는 양자간 원조(Multi-bi 또는 Earmarked)로 분류한다.

ODA의 주요 지원 수단으로는 증여(Grants), 대출(Loan),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 등이 있으며,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의 상환의무 존재 여부에 따라 상환의무가 없는 무상원조와 상환의무가 있는 유상원조로 구분된다. KOICA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적기관이 증여를 통한 무상원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는 EDCF를 통하여 대출, 보증, 지분투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ODA의 역사

냉전구도에서의 동서 원조경쟁(1945~1950년대) | 국제개발협력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지구촌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전쟁피해국과 신흥독립국 재건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인식 확산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이 1947년 유럽 재건을 위하여 실시한 마셜플랜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국제개발원조 정책의 틀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마셜플랜은 미국의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 ERP)으로 유럽 동맹국 경제 재건을 위하여 1947년부터 1951년까지 4년간 13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하였다.

1950년대에는 미국과 소련의 동서 원조경쟁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원조수혜국 지위에 머물렀던 유럽도 원조공여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영국은 1951년부터 7개 회원국(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으로 발족한 콜롬보계획

(Colombo Plan)에 참여하여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공동개발을 위한 회원국 간의 기술협력과 개발원조사업을 협의하였다. 또한 일본도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전후배상차원의 엔차관공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각국의 노력은 오늘날 개발도상국 원조정책의 발단이 되었다.

남북문제 대두와 선진국 원조기관 설립(1960년대) | 1960년대 들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경제적 격차 확대에 따라 남북 불균형 시정이 세계사적 과제로 인식되었다. 국제사회의 여론이 무르익자 1961년 제6차 UN총회는 1960년대를 'UN개발 10년(UN Development Decade)'으로 설정할 것을 주창하였다. 한편 선진국들은 1961년 OECD DAC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재원 공여방안을 모색하였다. OECD DAC의 설립은 1960년대 초반 주요 원조기관의 출범을 촉진하여 1960년에는 WB의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IDA), 캐나다의 대외원조국(External Aid Office), 1961년에는 미국의 USAID, 독일의 경제협력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BMZ)와 KfW, 일본의 OECF, 1962년에는 일본의 해외기술협력청(Overseas Technical Cooperation Agency : OTCA), 1964년에는 영국의 해외개발부(Overseas Development Ministry: ODM) 등이 설립되었다.

남북문제 심화와 기초생활분야 원조 확대(1970년대) | 1970년대 들어 개발도상국의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선진국의 GNI 대비 1% 개발재원 이전목표 미충족 등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격차가 더욱 심화되면서 제1차 'UN개발 10년'에 대한 실망이 커졌다. 그러자 1970년 제25차 UN 총회에서 제2차 'UN개발 10년'을 채택하자 체계적 원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개발에서의 사회·경제구조 변화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등 개발원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색되었다.

그럼에도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와 선진국의 원조 삭감 등은 개발도상국 개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1974년 제6회 UN 특별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선언을 선포하였고, 같은 해 말 UN 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지위 강화를 위한 취지로 '경제권리의무헌장(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불합리한 국제경제질서 개혁이라는 개발도상국 요구를 수용하는 듯 보였으나 사실상 선진국의 원조가 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치우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비산유 개발도상국,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등이 심각한 에너지 문제에 직면하면서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어 개발도상국은 석유수출국, 신흥공업국, 저개발국, 최빈국 등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제1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심화된 남북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빈곤 퇴치를 목표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원조가 강조되었다. 세계은행(WB)은 성장과 재분배에, ILO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UNDP)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 : BHN) 충족에 초점을 맞추었고, OECD DAC은 '경제성장과 BHN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여 이후 서방 선진국 원조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 원조 패러다임 도입(1980년대) | 1980년대에는 제3차 'UN개발 10년'을 앞두고 국제개발전략의 기본 노선에 대한 여러 수정 논의가 대두되었고, 1980년 2월에 발표된 브란트위원회 보고서는 개발원조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불가결한 비용임을 강조하며 선진국의 협력을 요구하였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선진국 경기 후퇴와 개발도상국의 자력개발 지연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의 채무 부담은 증가되었다. 1982년 여름 멕시코 정부의 채

무상환불능 선언을 시작으로 개발도상국 부채의 심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표면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선진국들은 파리클럽을 통한 최빈국 공적 채무 경감을 도모하였으며, 민간 채무에 대하여서도 '브레디 계획(Brady Plan)' 등 각종 대책을 통한 긴급 자금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원조 패러다임이 도입되었다. 개발원조가 빈국의 원조의존성을 강화시킨다는 비판 아래 '원조피로(Aid Fatigue)' 현상이 심화되었고, WB와 원조공여국들은 기존의 개별 사업 단위 개발 프로젝트 중심의 원조보다는 프로그램원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WB의 '구조조정 융자(Structural Adjustment Lending)'였다. 또한 1984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식량위기에 대한 국제기구와 원조공여국의 노력이 미미하였으나, NGO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각국 정부는 NGO를 개발원조의 새로운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체제 붕괴로 원조수요 증대와 범지구적 과제 대두(1990년대) | 1990년대에는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자 구소련체제의 전환국들인 CIS국가들은 시장경제에 기초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원조자금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OECD는 중·동부 유럽과 CIS 국가에 대한 시장경제화와 민주화 지원 등을 위하여 1990년 '유럽 시장경제이행 협력센터(Centre for Cooperation with European Economies in Transition : CCEET)'를 설치하였다.

또한 1992년 'UN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를 계기로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개발과정 중 광범위한 개발도상국 주민 참여를 요구하는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과 개발도상국 정부의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강조하는 '건전한 국가행정(Good governance)' 등이 개발원조의 주요 과제 분야로 정립되었다. 이 밖에도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1996년 '고채무빈곤국 이니셔티브(HIPCs Initiative)' 형성을 비롯하여, 아

동, 교육, 인권, 인구, 여성, 식량 등에 관한 국제 결의문이 채택되어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MDGs 수립과 원조효과성 제고(2000년대) | 21세기의 시작을 앞두고 선진 공여국은 개발도상국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공동의 글로벌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OECD DAC은 1996년 '21세기 개발협력 전략'을 발표하여 개발의 사회·경제·정치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공동의 로드맵을 최초로 제시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여국 간의 플랫폼을 처음으로 형성하였다. 이후 2001년 WB, IMF, UN, OECD와 일부 선진 공여국이 모인 회의에서 OECD DAC의 7개 개발목표에 글로벌 파트너십 목표를 추가하여 8개의 MDGs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MDGs 주요 목표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사회발전 또는 인간개발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을 정립하였다.

MDGs에 대한 합의 이후 ODA를 GNI 대비 0.7%로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UN 개발재원 국제회의'에서 UN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여섯 가지의 개발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몬테레이 합의문(Monterrey Consensus)'에 동의하였다. 이후 2006년 빈곤과 질병 퇴치를 위한 항공권 연대기금 연구 등 새로운 재원 조달의 개념인 '혁신적 개발재원(Innovative Finance for Development)' 확보 노력이 이어졌다.

한편 2003년 2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MDGs와 몬테레이 합의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로마선언(Rome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로마선언은 원조효과성 제고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하였으며 원조공여국들 간의 공동원조 실행과 원조정책 조율 등 원조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다자간 개발원조기구들은 두 차례에 걸쳐 원조효과 극대화를 위하여서는 '성과중심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나아가 2005년 2월에 파리에서 열린 '고위급포럼(High Level Forum)'에서는 기존 국제원조사회

의 합의사항들을 모두 포괄하여 원조효과 제고를 목표로 하는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그 후 2007년 2월에 다자간 개발원조기구들은 제3차 성과회의를 개최하고 성과관리를 위한 감시와 평가기법, 성과관리를 위한 예산 배분 방법 등 개발성 과관리 기법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였다. 하지만 원조효과성에 대한 개선이 두 드러지지 않음에 따라 새로운 이행약속보다는 실천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2008년 9월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제3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에서는 파리선언에서 합의된 이행 사항들을 점검하고,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원조효과 성 합의를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는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을 채택하였다.

SDGs 체제 대두(2010년대) |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는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개발환경을 반영하여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일부 공여국의 재정위기 등으로 제한된 공적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신흥 공여국, 시민사회, 의회, 민간기업 등 새로운 개발협력주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014년 12월 OECD DAC 각료급회의(HLM)를 통하여 ODA 현대화 작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면서 ODA 재정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TOSSD)’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ODA 재정의는 양허성 차관의 ODA 인정 때의 소득그룹별 최소증여율과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TOSSD는 ODA 이외의 개발도상국 개발에 제공되고 있는 광범위한 공적개발재원의 범주 정의와 측정 방식에 대한 것으로, ODA를 대체하지 않는 보완적 성격의 지표이다.

2015년에는 국제개발협력 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공동 개발목표였던 MDGs의 시한이 종료되었다. 2015년 9월 UN총회의 개발정상회의의 결과 ‘2030 지

속가능한 개발의제’가 채택되면서 UN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새로운 개발목표인 SDGs를 달성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된 SDGs는 지난 15년간의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당면과제를 반영하여 사회개발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과 환경 지속가능성, 평화, 안보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발목표로서 국제사회 개발재원 흐름과 개발환경 변화의 신규 이정표로 기능하게 되었다.

2. 수원국과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초기 경험(1945~1987)

우리나라의 수원국 역사

우리나라는 8·15 광복 이후부터 개발원조를 받았으며 수원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 1999년까지 선진 공여국과 국제원조기구로부터 331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양자간 원조는 118억 달러로 36%, 다자간 원조는 213억 달러로 64%에 달하였다. 331억 달러 중에서 무상원조는 69억 달러로 21%를 차지하며, 유상원조는 262억 달러로 79%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원조수혜 규모는 광복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198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무상원조는 광복 이후 1957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여 연간 3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유상원조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과 함께 급증하기 시작하여 경제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마련된 1980년대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유상원조는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기구를 통한 대규모 유상원조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 대한 유·무상 원조 금액 비중(1945~1999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양자간	다자간
유상	5,709(48.4%)	20,527(96.2%)
무상	6,077(51.6%)	815(3.8%)
합계	11,786(100.0%)	21,342(100.0%)

※주 : 원조공여국의 양자간 ODA, 국제개발기구의 증여 및 차관, 개발지원 성격의 기타공적자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1950년대 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양적으로 감소함과 동시에 질적으로는 유상원조로 전환하였다. 이에 미국 이외의 선진국에서 자본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고, 이승만 정권 말기인 1960년 1월에는 '외자도입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적극적 외자도입 노력은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다.

기간산업 육성과 사회간접자본 정비, 수출 증대에 중점을 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부족한 국내저축을 보완할 외자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외자도입촉진법'을 전면 개정하고 관련 방침과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차관 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투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자본으로 충당되었고, 이는 공업부문 발전의 바탕이 되는 석유정제·비료·시멘트 등의 기간산업과 전력·운수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쓰여졌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1967~1971) 중에는 외자도입법 정비와 외교 노력으로 외자도입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연평균 9.7%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지만, 국제수지 악화와 대외 의존도 심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1976)과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7~1981) 기간 중에는 중화학공업 건설에 의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개발 전략이었던 만큼 왕성한 투자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해외차입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해외차입은 지속적 고도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었으나 농작물 흉작, 제2차 석유파동 등의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1979년 이후 성장은 주춤한 가운데 외자도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외채무잔액이 크게 팽창하였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2~1986)은 그간 고속성장이 초래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플레이션 억제, 계층간의 소득격차 시정, 복지 증진, 민간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기치로 1984년 이후를 제2의 도약기로 설정하였고 다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외채무잔액이 1985년 말 세계 4위(46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무거운 채무상환 부담을 안게 되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채무위기에 빠진 중남미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1986년 채무위기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일관적으로 추진하여온 수출지향형 성장노선과 1980년 초부터 실시된 안정화 정책, 그리고 구조조정의 정책적 대응이 채무위기의 극복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85년부터 시작된 소위 '3저 현상', 즉 석유가격 저하, 금리 저하,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도 우리나라 채무위기 극복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황폐화되었던 우리나라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원조가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초기 전후 복구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공여국의 무상원조 도움으로 국가기틀을 잡을 수 있었고, 1970~1980년대의 급격한 경제성장도 대규모 유상차관 도입을 통한 산업발전이 주요 동력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조공여국 역사

우리나라는 원조수원국이었던 1960년대부터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면서 공여국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1963년 미국 USAID의 원조계획과 자금으로 개발도상국 공무원 연수훈련 사업을 위탁 수행한 것이 우리 개발원조활동의 최초 사례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까지 주로 UN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방식의 원조활동을 추진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65년 개발도상국 훈련생 초청사업을 시작으로 정부재정을 활용한 개발원조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경제성장에 따라 정부부처들이 분야 전문성을 활용한 개발원조사업을 실시하면서 원조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갔다. 1970년대 중반까지 우리 원조사업은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기능공 초청연수, 산업기술 전문가 개발도상국 파견 등 기술협력이 주를 이루었다. 1977년에는 외무부의 주관 아래 비동맹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통한 대북 이슈 우위 확보 등 외교적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10만 달러 규모의 우리

기자재를 14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최초의 물자공여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까지 우리의 원조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며,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그 효과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는 개발도상국과의 정상외교 채널을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2년에는 KDI가 개발도상국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우리의 개발경험을 교육하는 '국제개발연찬사업(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 IDEP)'을 시작하면서 KDI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 전수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우리 경제는 1986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외채 경감과 국제수지 흑자를 실현하였다. 이에 따라 자금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대외경제협력을 실시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과 대내적 필요성이 마련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괄목할 만한 국력 신장을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 호혜적 대외경제협력 관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원조 활동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1987년 양자 유상원조 전담기금인 EDCF를 설치하여 양자원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필요한 장기 저리의 공공차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대외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EDCF 설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공여국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에는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원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처하고자 1991년 4월, 외무부 산하에 무상원조기관인 KOICA를 출범시켰다.

KOICA의 출범과 함께 정부는 다수의 무상원조사업을 상호 연계할 수 있게 되어 개발원조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다.

1996년 우리나라는 OECD 가입과 함께 보다 높은 국제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OECD DAC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원조 노력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0년대에는 9·11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발발, 이라크전 발발, 남아시아 쓰나미 발생 등을 계기로 원조공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어 원조규모의 급격한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특히 2005년에는 IDB에 가입하고, 2006년에는 AfDB와 공동으로 제1회 KOAFEC를 개최하는 등 MDB와의 협업을 통하여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과의 대외경제협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06년 국제개발협력 분야 최고위 정책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요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심의와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 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어 2010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ODA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책 일관성과 원조효과성의 증진을 이루었으며, 같은 해 OECD DAC 회원국에 가입하는 등 우리나라는 성숙한 공여국으로 도약하였다.

우리나라의 ODA 공여 관련 주요 사건

구분	연도	내용	주관부처
1960년대	1963	미국국제개발처(USAID) 개발도상국 공무원 연수 위탁수행	외무부
	1965	자체 연수생 초청사업 시작	과학기술처
	1968	기술공여사업 시작	과학기술처
1970년대	1975	개발도상국 기능공 초청연수 시작 (1975~1982년 과거처 위탁, 1983년 노동부 실시)	노동부
	1977	기자재 등 물자공여사업 시작	외무부
1980년대	1981	공동 연구사업 시작	KAIST
	1982	국제개발연찬사업 시작	KDI
	1983	건설기술자 초청연수 시작	건설부
	1987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설립	재무부
1990년대	1991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외무부
	1996	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
2000년대	2000	EDCF, 미주개발은행(IDB) 협조용자 최초 승인	재정경제부
	2005	한국, 미주개발은행(IDB) 가입	재정경제부
	2006	한-아프리카경제협력협의체(KOAFEC) 장관급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	국무총리실
	20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
		한국,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

※자료 : EDCF 20년사; 국가기록원 '국제개발협력단 파견' 집필내용 참조

3. EDCF 조직 운용과 변천

EDCF 본부 조직

1986년 12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제정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EDCF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으면서 1987년 6월 한국수출입은행은 경제협력기금부를 설치하고 EDCF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후 개발도상국의 차관지원 요청이 증가하자 1991년 1월 경제협력기금부를 경제협력기금1부와 2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경제협력기금1부는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차관과 해외투자 지원 업무를, 경제협력기금2부는 그 밖의 지역 업무를 담당하였다.

1997년 1월에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에 따른 EDCF 지원규모의 확대, 각종 기획·조사기능의 확충, 정보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경제협력기금부 내의 경협기획팀을 경협기획실로 확대 개편하였다. 경협기획실은 기획·조사, 기금운용계획, 지원사업의 사후평가와 효과분석, OECD 관련 업무 중 ODA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1997년 말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경협기획실을 경협지원부 소속으로 전환하였으나, IMF 외환위기의 극복과 함께 사업이 확대되면서 기금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중국에 대한 전략적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경제협력기금부와 경협기획실을 경제협력기금1부와 2부로 개편하였다.

2004년 1월에는 본부제를 도입하여 기존 2부 체제를 1본부 2실 체제로 개편하였고, 본부 직속으로 기획팀을 설치하여 기금 기획 기능을 강화하였다. 2005년 5월에는 기금정책과 관련된 대정부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기금 기획·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 기획팀을 경협기획실로 개편하여 기금 기획, 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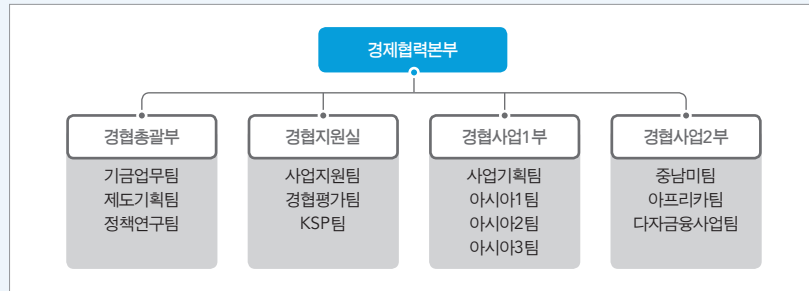
평가, 예·결산, 사후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007년 1월에는 경협개발실을 신설하여 사업타당성조사 실시와 MDB 협력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MDB 협조용자 확대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2009년 1월에는 경협사업1실과 2실을 통합하여 경협사업부를 설치하였다.

2010년 1월 OECD DAC 가입 이후 EDCF 업무가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2010년 12월에는 경협사업부를 경협사업1부와 2부로 분리·확대하였고, 2011년 6월에는 EDCF의 정책과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제협력본부를 경협기획본부와 경협사업본부로 분할하여 2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하였다.

한편 ODA 규모의 증가에 따라 기존 개별사업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국가별 전략적 자원배분과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개발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3년 1월 프로그램팀을 신설하여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CPS) 수립과 모니터링을 통합관리하는 한편, 국별 중기 자원배분과 지원계획 수립, 국별 프로그램미션 실시를 통한 중기 포트폴리오 구성 업무 등을 전담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중기 예산과 국가별 자원배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다른 부처와 기관 연계사업 확대, 비구속성 사업 확대, 중소기업 참여 강화 등 정책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6월에는 국별 프로그램 체계 정착을 위하여 프로그램팀을 국별 전략실로 확대하였고, 2015년 1월에는 EDCF의 기획·총괄기능을 담당하는 경협기획실을 경협총괄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2011년 6월 이후 기금 기획업무 중심의 경협총괄본부와 사업 중심의 경협사업본부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체제를 2016년 11월 EDCF 기획 업무와 사업 심사·집행 업무 간 유기적 협력 강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제협력본부로 통합하였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과 EDCF 간 사업개발업무 일원화를 통한 신규 수출시장 개척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별전략실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업개발부와 통합되어 신시장개척단이라는 한국수출입은행 조직으로 신설됨으로써 EDCF 업무 조직은 1본부 3부 1실 체제(경제협력본부 내

한국수출입은행 내 EDCF 업무조직 현황



경협총괄부, 경협사업1부와 2부, 경협지원실)로 전환되었다.

EDCF 해외사무소

EDCF의 차관 승인액은 2002년 UN 몬테레이 개발재원 정상회의 이후 국제적인 원조확대 흐름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EDCF는 2006년 2월과 3월에 최우선 지원국이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각각 주재원을 파견, 개발도상국 요청에 의한 수동적인 사업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EDCF 주도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사업발굴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2007년 1월에는 필리핀에 추가로 주재원을 파견하였다.

이후 아프리카 대륙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신흥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아프리카 차관 활성화를 통한 대외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탄자니아에 주재원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는 중남미 지역 최초로 파나마에 주재원을 파견하여 EDCF의 해외 네트워크를 중남미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2011년에는 급부상 중이던 신흥 시장 지원과 OECD DAC 가입에 따른 국제 규범을 이행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의 가나와 OECD 대표부에 주재원을 신규로 파견하는 한편, 주요 지원국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3개국 주재원을 사무소로 확대·전환하였다. 이후 EDCF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2012년 우즈베키스탄 주재원, 2013년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주재원, 2014년

EDCF 해외사무소 조직 현황

구분	아시아							CIS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국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가나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OECD 대표부
인원	4	2	2	2	1	2	2	2	2	2	2	2	2	1

방글라데시 주재원을 신규로 파견하였고, 모잠비크와 가나에 사무소를 신설하였다.

한편 EDCF 지원규모 확대에 인하여 사업발굴과 관리 등 현장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인 사무소와 주재원의 증원, 사무소 전환을 추진하여 2014년에 콜롬비아와 미얀마 주재원, 2015년에는 캄보디아 주재원을 사무소로 확대·전환하였다. 2016년에는 기존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중점 사무소이던 티슈켄트사무소와 EDCF 우즈베키스탄 주재원을 통합하여 EDCF 업무 중심 사무소로 개편하고, 경제개발에 따라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던 아프리카 지역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에티오피아사무소를 신설하였다. 또한 스리랑카 주재원을 사무소로 확대하는 등 해외 네트워크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충한 결과 2017년 1월 기준 14개 사무소에 28명의 주재원을 둔 해외사무소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4. 숫자로 보는 EDCF

EDCF의 자원 조성

EDCF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정부출연금,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장기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다.

1987년에 최초로 정부출연금 300억 원이 납입되었고, 1988년에는 정부출연금 200억 원, 1989년에는 정부출연금 500억 원에 재특차입금 400억 원 등 모두 900억 원이 조성되면서 1989년 말에는 기금 조성 누계액이 1,500억 원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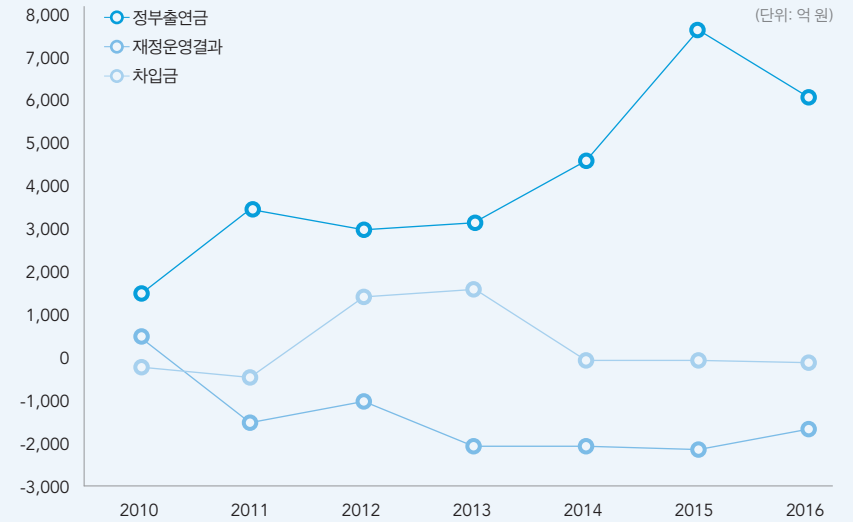
1990년대 초반에는 EDCF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과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에 따라 기금 조성이 주춤하였다. 그러나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이 본격 논의됨에 따라 1997년 말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 동안 3,900억 원의 정부출연금이 납입되었

연도별 EDCF 조성현황

(단위: 억 원)

연도	198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정부출연금	13,799	1,500	3,500	2,990	3,100	4,590	7,664	6,100	43,242
차입금	960	-177	-410	1,430	1,551	-70	-70	-70	3,145
재정운영 결과	9,940	412	-1,513	-1,147	-2,088	-2,076	-2,188	-1,677	-337
기금조성액	24,699	1,736	1,577	3,273	2,563	2,444	5,406	4,352	46,050

※주 : 1) 2011년부터 용자회계준칙을 적용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에 용자보조비용을 반영
 - 용자보조비용은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계상하기 위한 상대 계정으로,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경우
 용자금의 원금에서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 가치를 차감하여 용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인식
 2) 2008 회계연도까지는 당기순이익, 2009 회계연도부터 재정운영결과(단, 재정운영결과 기표시 부호는 반대로 조정함)



고, 1,950억 원의 재특차입금과 2,25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더하여 모두 7,977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1996년 말에는 기금 조성 누계액이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하였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정부의 EDCF 재정 출연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중단되었으나, IMF 외환위기의 진정과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정부의 재정 출연이 2003년 8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정부의 재정 출연에 힘입어 기금 조성 누계액은 2007년 2조 원, 2012년 3조 원, 2015년 4조 원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DCF 운용 승인현황

EDCF는 설립연도인 1987년에 8개국 15개 사업에서 약 1억 2,000만 달러의 차관 지원을 요청받았으며, 이 중 최초로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과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 등 2건, 179억 원을 같은 해 12월에 승인하였다. 이후 승인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최초로 연간 승인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고, 2005년 3,000억 원, 2007년 6,000억 원, 2009년

1조 원을 돌파하였다.

EDCF 승인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2010년 OECD DAC 가입 이후였다. 2010년 이후의 승인실적이 기금 누적 승인금액의 약 64%를 차지하는 등 지원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조 7,460억 원을 승인하여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1987년 기금 설치 후 2016년까지 모두 375개 사업에 15조 1,957억 원의 누적액을 승인하였다.

OECD DAC 가입 이후 수원국의 대규모 인프라 수요, 지원효과 등을 감안하여 대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 승인규모는 OECD DAC 가입 이전 평균 2,300만 달러 수준에서 5,200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EDCF 집행현황

1987년 최초의 차관사업을 승인한 이후 정부간 협정 체결, 차관공여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1989년에 최초로 12억 원의 차관자금을 집행하였다. 사업승인 후 다년간에 걸쳐 자금이 집행되는 EDCF 차관사업의 특성상, 누적 승인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차관자금의 집행 규모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7년 말의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 출연이 중단되는 등 원조 제공 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OECD 가입 준비과정에서 증가한 지원 결정사업에 대한 집행을 진행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7,40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에는 처음으로 연간 집행 규모가 2,000억 원을 넘어서기도 하였다.

연간 집행 규모는 1999년과 2000년 승인금액 급증의 영향으로 2002년에 2,050억 원으로 최고 금액을 기록하였으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연평균

EDCF 승인 및 집행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1987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인액	179	238	1,060	2,428	3,006	12,369	10,922	12,848	14,095	15,438	14,865	17,460
집행액	-	71	345	1,012	1,643	4,107	5,097	5,779	6,148	6,308	7,343	7,454

1,500억 원 가량이 집행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2006년에는 그간 승인금액의 점진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집행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이는 차관사업 구매 절차의 선진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구매 절차가 장기화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다시 2,000억 원을 돌파한 집행 규모는 이후 매년 1,000억 원 가량씩 증가하여 2011년에는 5,0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하여 2016년에는 7,454억 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2016년 말 기준 누적 집행금액은 6조 5,453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자체수입의 확충

EDCF의 자체수입은 차관원금과 이자 회수금액, 여유자금 운용 이자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자체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차관원금 회수금액으로 1987년 최초의 차관사업이 승인된 이후 1995년 처음으로 차관 원금 9억 원을 회수하였다. 이후 누적 승인과 집행 금액의 증가에 따라 원금 회수 금액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883억 원을 회수하는 등 누적 회수금액은 8,73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원리금 회수액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금 지출예산의 확대로 인하여 총지출예산 대비 자체수입 조달비율은 10%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 다만 2000년대 후반 큰 폭으로 증가한 승인사업과 집행사업의 원금 회수가 본격화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자체수입의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자체수입을 통한 조달 비중 확대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DCF 자체수입 추이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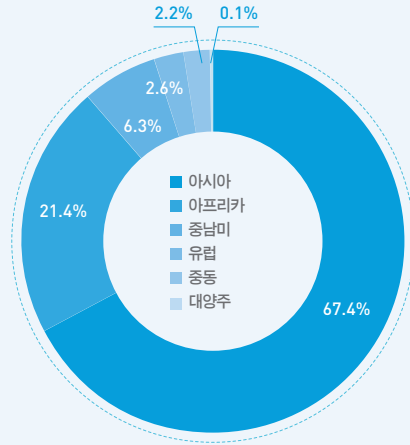
구분 ¹⁾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체수입 ²⁾	1,060	2,428	3,006	12,369	10,922	12,848	14,095	15,438	14,865	17,460

※ 주 : 1) 2017년부터는 추정치

2) 차관 원리금 회수, 여유자금 운용 수익, 대출취급수수료 등

지역별 지원현황

아시아 지역은 지리적·역사적·문화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오고 있다. 이에 EDCF는 아시아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16년 말 기준 상위 10대 지원국 중 8개 국가가 아시아 국가이다. 앞으로도 경제·외교적인 중요성을 감안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점 기조는 유지하되, 높은 경제성장세와 풍부한 자원 등 대외경제협력 잠재력과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 등을 감안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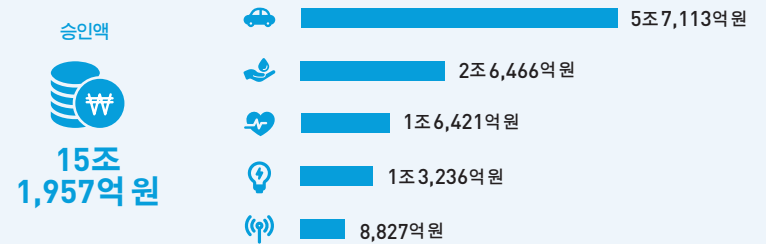
지역별 지원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중동	대양주	합계
승인금액	102,349	32,567	9,617	3,996	3,337	91	151,957
비중	67.4	21.4	6.3	2.6	2.2	0.1	100.0

분야별 지원현황

기금설립 초기부터 도로와 철도 등 교통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온 결과 교통 분야에 대한 승인액이 5조 7,113억 원으로 전체 승인금액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수자원·위생과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져 전체 승인금액 중 각각 17.4%와 10.8%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EDCF는 대형 인프라(고속철, 메트로, 공항 등), 서비스산업(보건, 교육, ICT 등) 등 수원국의 경제개발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분야별 지원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교통	수자원·위생	보건	에너지	교육	기타	합계
승인금액	57,113	26,466	16,421	13,236	11,091	27,630	151,957
비중	37.6	17.4	10.8	8.7	7.3	18.2	100.0

부록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조직현황 | 조직변천 | 연도별 기금조성
연도별 기금수입 및 지출현황 | 국가별 승인현황 | 국가별 집행현황
지역별 승인 및 집행현황 | 자금종류별 승인현황 | 자금종류별 집행현황
정부간 기본약정(F/A) 추진현황 | MOU 국내 체결현황 | MOU 국외 체결현황
연도별 사업승인 내역 | 연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제정 : 1986. 12. 26 법률 제3863호
- 개정 : 1987. 12. 04 법률 제3982호
(자금관리특별회계법)
- 개정 : 1993. 12. 31 법률 제4675호(국채법)
- 개정 : 1996. 12. 12 법률 제5170호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 개정 : 1997. 12. 13 법률 제5454호(정부조직법)
- 개정 : 1998. 02. 28 법률 제5529호(정부조직법)
- 개정 : 1999. 12. 31 법률 제6075호(국채법)
- 개정 : 2002. 12. 30 법률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 개정 : 2006. 12. 30 법률 제8135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개정 : 2008. 02. 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 개정 : 2010. 05. 17 법률 제10303호(은행법)
- 개정 : 2011. 05. 02 법률 제10622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개정 : 2016. 01. 27 법률 제13816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이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산업구조 등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5.2.]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五受金)
6. 기금의 운용수익금 [전문개정 2011.5.2.]

제5조(장기 차입)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은행 등이나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

제6조 삭제 <1993.12.31.>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6.1.27.>

1.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예 필요한 자금의 대출(어음 할인, 채무 보증 또는 유가증권 인수를 포함하며, 이하 "융자등"이라 한다) 또는 출자
2.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업의 시험적 실시예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3. 개발도상국의 경제 안정을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4. 그에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모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전문개정 2011.5.2.]

제8조(기금의 지원요건)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일반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11.5.2.]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그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

제11조(일시 차입)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은행에의 예치 또는 단기 대여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1.5.2.]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할 기금수입집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이사와 기금지출인행위 담당 이사를,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이사는 기금수입집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인행위 담당 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5.2.]

제14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填)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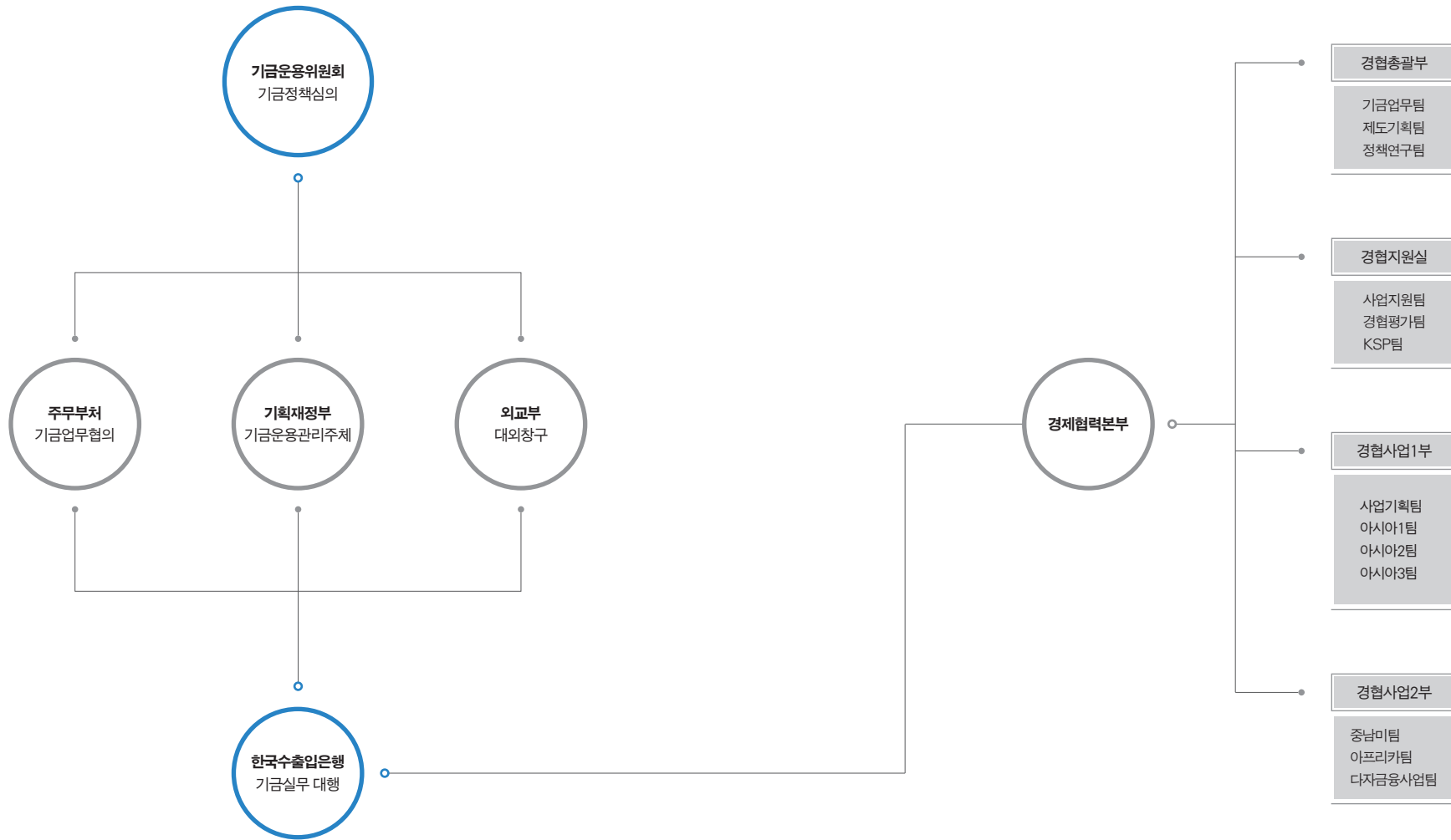
제15조(감독 및 명령)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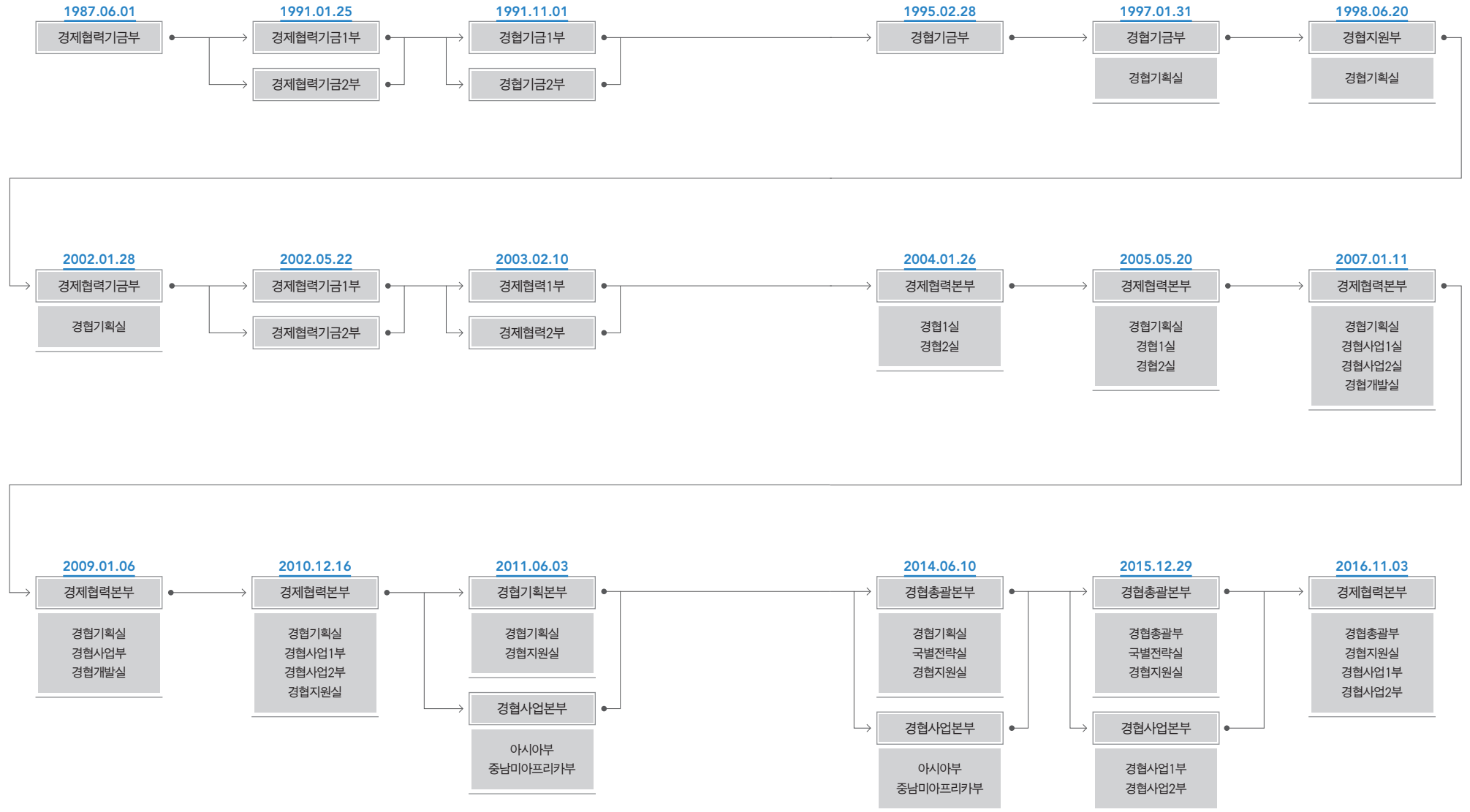
부칙 <제13816호, 2016.1.27.>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직현황



조직변천



연도별 기금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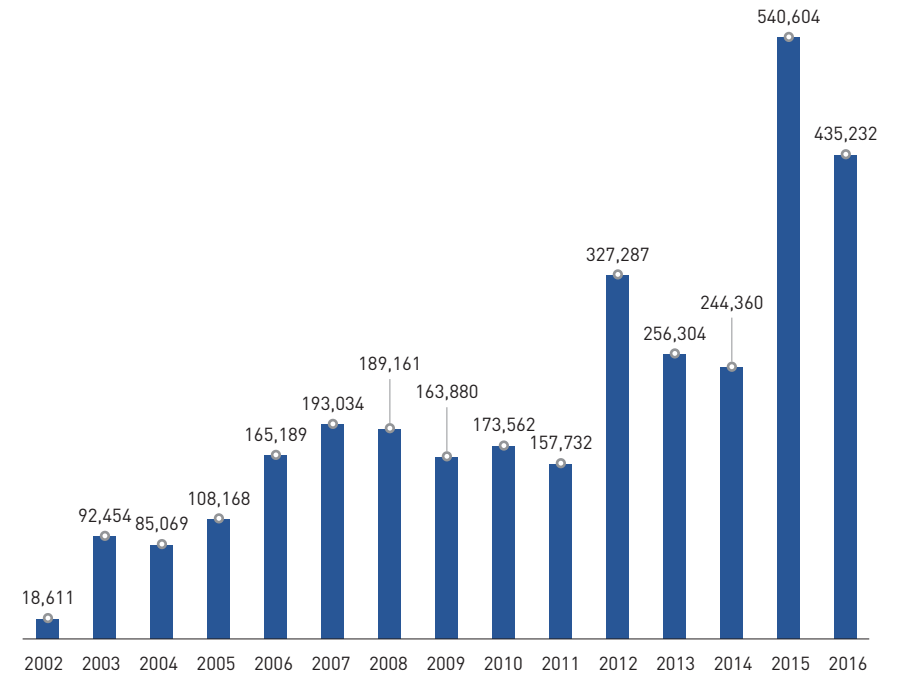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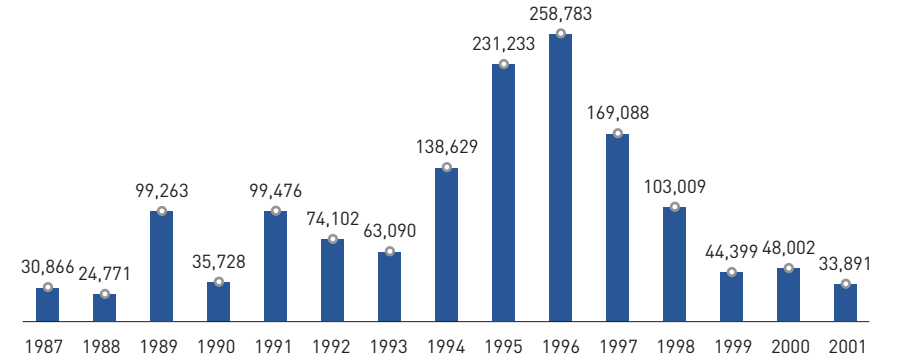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연도	정부출연금	공자예수금 ¹⁾	공자예수상환 ²⁾	당기순이익	계
1987	30,000	-	-	866	30,866
1988	20,000	-	-	4,771	24,771
1989	50,000	40,000	-	9,263	99,263
1990	10,000	-	-	25,728	35,728
1991	10,000	50,000	-	39,476	99,476
1992	-	10,000	-	64,102	74,102
1993	19,870	10,000	-	33,220	63,090
1994	85,000	20,000	-	33,629	138,629
1995	120,000	70,000	2,670	43,903	231,233
1996	130,000	70,000	4,002	62,784	258,783
1997	55,000	35,000	6,000	85,088	169,088
1998	-	-	6,670	109,679	103,009
1999	-	-	7,336	51,735	44,399
2000	-	-	8,668	56,670	48,002
2001	-	-	13,336	47,227	33,891
2002	-	-	18,002	36,614	18,611
2003	80,000	-	20,334	32,787	92,454
2004	70,000	-	20,332	35,400	85,069
2005	100,000	-	20,332	28,499	108,168
2006	150,000	-	20,332	35,520	165,189
2007	170,000	-	20,332	43,365	193,034
2008	160,000	-	20,332	49,493	189,161
2009	120,000	-	20,332	64,212	163,880
2010	150,000	-	17,665	41,228	173,562
2011	350,000	-	40,996	-97,425 ³⁾	157,732
2012	298,975	150,000	7,000	-114,689	327,287
2013	310,000	162,140	7,000	-208,836	256,304
2014	458,958	-	7,000	-207,598	244,360
2015	766,415	-	7,000	-218,812	540,604
2016	610,000	-	7,000	-167,768	435,232
총누계	4,324,218	617,140	302,668	-33,716	4,604,975

주 : 1) 차입금리 : '96~'97년 차입금은 매분기별 기획재정부 고시금리 적용('16년 4/4분기 현재 0.8%) / '12년 차입금 1,500억 고정금리(3.27%) / '13년 차입금 1,000억 고정금리(2.396%), 621억 고정금리(3.426%)
 2) 상환기간 : 5년 거치 후 15년 균등분할상환, 단 '12년, '13년 차입금은 7년 거치 후 일시상환
 3) '11년부터 융자회계준칙 적용(융자보조원가충당금 계상)으로 당기순손실 기록
 4) '11년 기초순자산(적립금 및 잉여금)에서 차감된 '10년 융자보조비 소급분 53,846백만원 차감 반영

연도별 기금조성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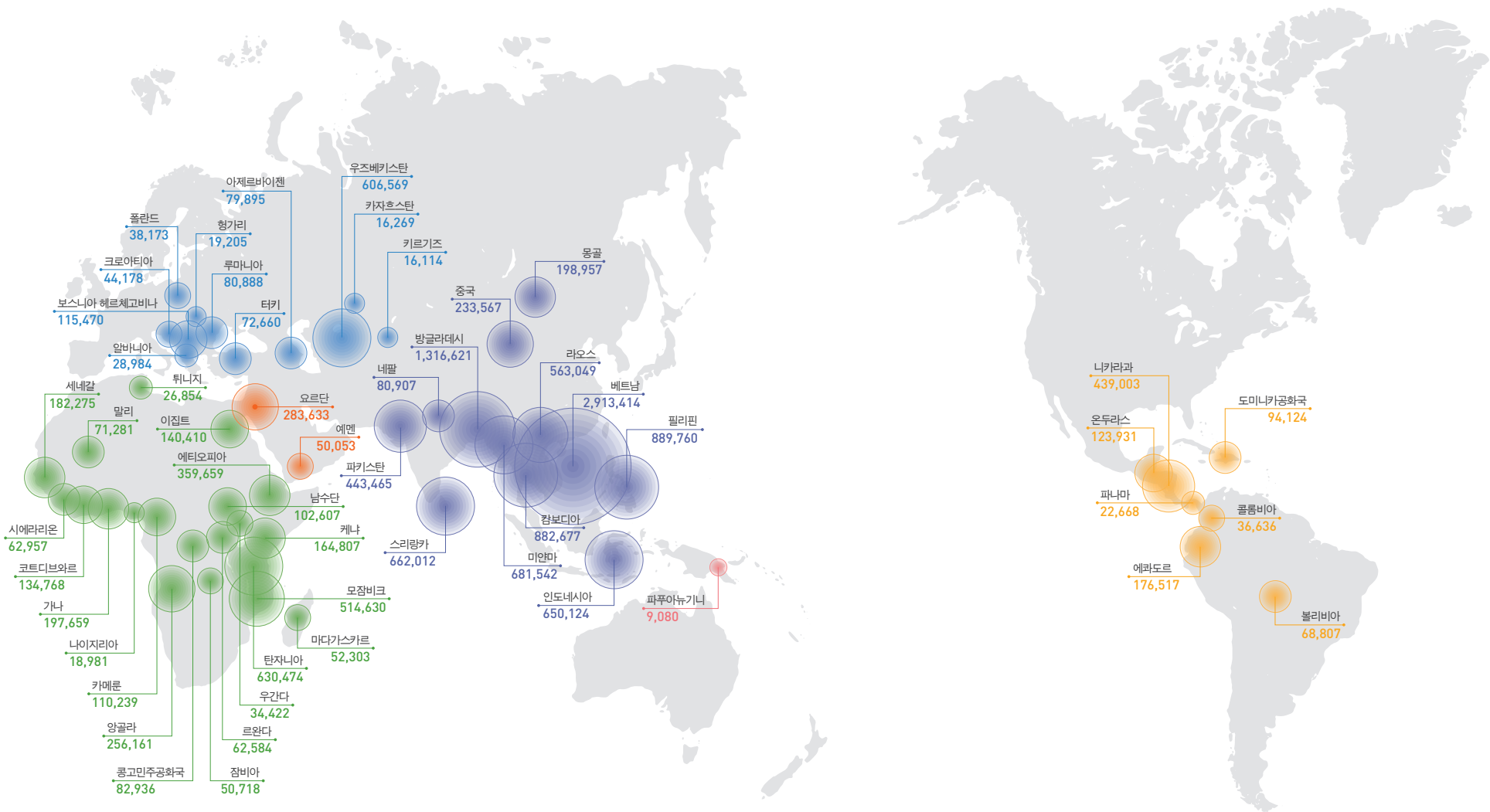
연도별 기금수입 및 지출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합계	지출						합계	수입					
		대개발도상국 차관	해외투자자대출	운영비용	ADB탄소펀드	공자예수상환	자금운용		전기이월금	정부출연금	공자예수금	운용수익	대출금회수	기금채권
1987	30,247	-	-	150	-	-	30,097	30,247	-	30,000	-	247	-	-
1988	23,909	-	-	200	-	-	23,709	23,909	-	20,000	-	3,909	-	-
1989	151,583	1,208	-	1,004	-	-	149,372	151,583	53,806	50,000	40,000	7,777	-	-
1990	186,439	6,441	618	2,430	-	-	176,950	186,439	149,372	10,000	-	27,067	-	-
1991	279,579	4,928	-	4,724	-	-	269,927	279,579	176,950	10,000	50,000	42,629	-	-
1992	342,192	11,216	978	5,727	-	-	324,271	342,192	269,927	-	10,000	62,265	-	-
1993	393,679	56,247	-	7,346	-	-	330,086	393,679	324,271	19,870	10,000	39,538	-	-
1994	485,236	30,200	-	7,395	-	-	447,641	485,236	330,086	85,000	20,000	50,150	-	-
1995	688,994	34,502	-	8,994	-	2,670	642,829	688,994	447,641	120,000	70,000	50,466	887	-
1996	915,447	65,395	-	13,655	-	4,002	832,395	915,447	642,829	130,000	70,000	71,240	1,378	-
1997	1,025,479	72,447	-	15,811	-	6,000	931,222	1,025,479	832,395	55,000	35,000	100,116	2,968	-
1998	1,106,576	142,574	-	20,656	-	6,670	936,676	1,106,576	931,222	-	-	122,804	52,550	-
1999	1,019,993	126,749	-	17,904	-	7,336	868,005	1,019,993	936,676	-	-	78,948	4,369	-
2000	947,514	101,224	-	17,801	-	8,668	819,822	947,514	868,005	-	-	72,582	6,927	-
2001	903,622	165,288	-	15,642	-	13,336	709,356	903,622	819,822	-	-	68,932	14,868	-
2002	781,976	204,961	-	15,312	-	18,002	543,701	781,976	709,356	-	-	54,600	18,020	-
2003	692,418	137,039	-	13,417	-	20,334	521,628	692,418	543,701	80,000	-	49,042	19,675	-
2004	661,238	155,500	-	12,426	-	20,332	472,981	661,238	522,345	70,000	-	46,075	22,819	-
2005	642,173	164,250	-	11,521	-	20,332	446,070	642,173	474,603	100,000	-	38,847	28,723	-
2006	168,077	136,079	-	11,617	-	20,332	50	668,211	446,945	150,000	-	45,115	26,151	-
2007	755,789	155,335	-	12,554	-	20,332	567,569	755,789	500,729	170,000	-	49,939	35,121	-
2008	833,180	237,136	-	12,661	-	20,332	563,051	833,180	567,569	160,000	-	59,194	46,418	-
2009	809,500	312,814	-	12,562	-	20,332	463,792	809,500	563,051	120,000	-	78,346	48,102	-
2010	449,767	410,698	-	15,235	6,095	17,665	74	718,270	463,792	150,000	-	59,183	45,295	-
2011	570,427	509,716	-	14,329	5,311	40,996	75	768,873	268,577	350,000	-	52,331	97,965	-
2012	758,773	577,942	-	18,242	5,360	7,000	150,229	758,773	198,521	298,975	150,000	53,631	57,646	-
2013	748,584	614,818	-	21,981	5,301	7,000	99,485	748,584	150,229	310,000	162,140	52,208	74,006	-
2014	700,109	630,845	-	27,227	-	7,000	35,036	700,109	99,485	458,958	-	53,739	87,927	-
2015	939,272	734,280	-	31,867	-	7,000	166,125	939,272	35,036	766,415	-	44,927	92,893	-
2016	908,766	745,445	-	33,447	-	7,000	122,874	908,766	166,125	610,000	-	44,335	88,3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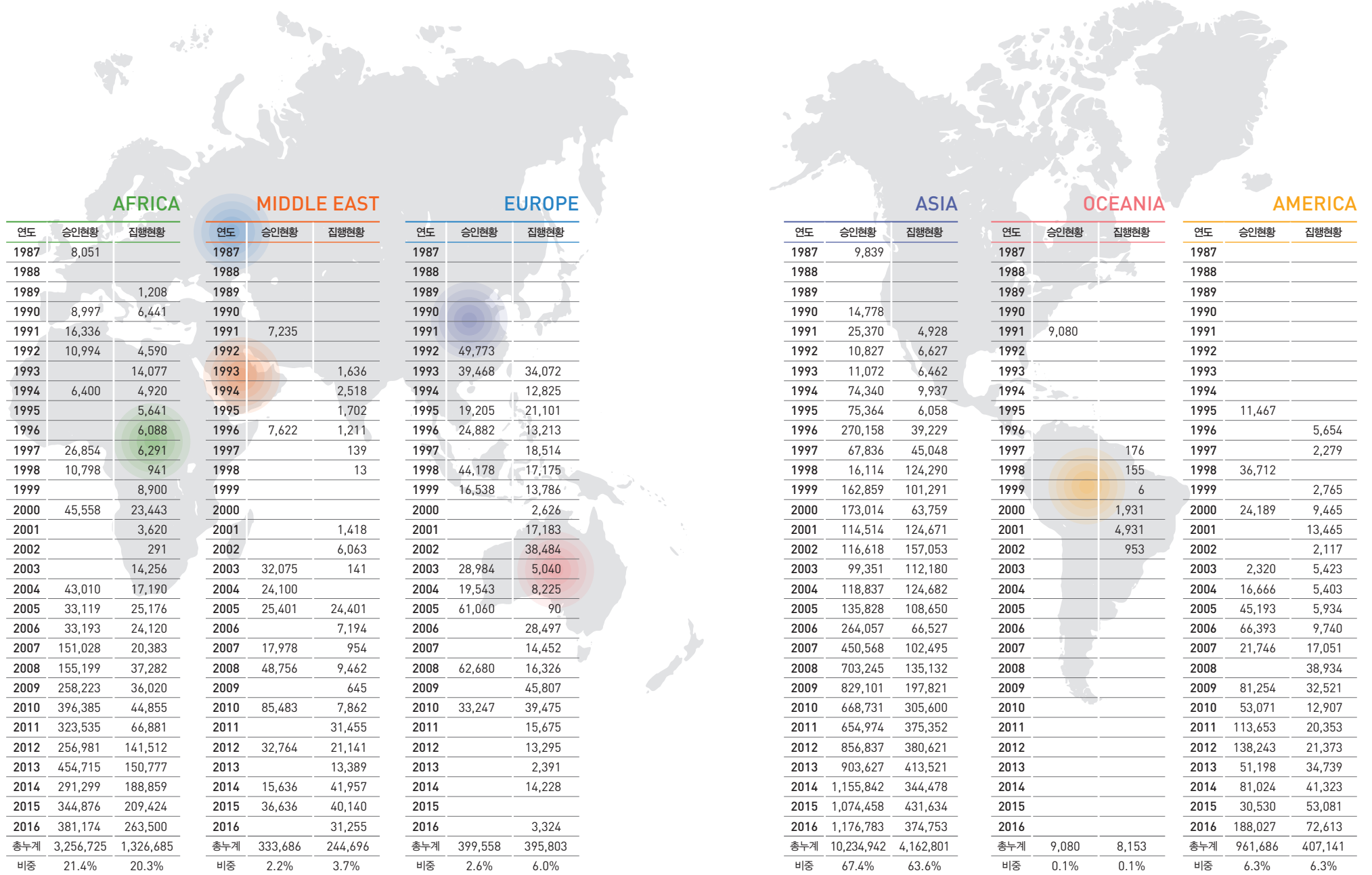
국가별 승인현황

(단위: 백만 원)



지역별 승인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 원)



자금종류별 승인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개발사업차관		기자재차관		기금전대차관		프로그램차관		민자사업차관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준비차관		해외투융자		합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1987	9,839	1	8,051	1	-	-	-	-	-	-	-	-	-	-	-	-	17,890	2
1990	23,157	3	-	-	-	-	-	-	-	-	-	-	-	-	618	1	23,775	4
1991	39,902	4	10,930	1	7,189	1	-	-	-	-	-	-	-	-	-	-	58,021	6
1992	54,893	3	15,723	2	-	-	-	-	-	-	-	-	-	-	978	1	71,594	6
1993	50,540	2	-	-	-	-	-	-	-	-	-	-	-	-	-	-	50,540	2
1994	36,347	4	44,393	5	-	-	-	-	-	-	-	-	-	-	-	-	80,740	9
1995	63,025	4	43,011	4	-	-	-	-	-	-	-	-	-	-	-	-	106,036	8
1996	172,945	13	129,717	8	-	-	-	-	-	-	-	-	-	-	-	-	302,662	21
1997	26,854	1	67,836	5	-	-	-	-	-	-	-	-	-	-	-	-	94,690	6
1998	23,156	2	84,646	4	-	-	-	-	-	-	-	-	-	-	-	-	107,802	6
1999	162,331	7	17,066	1	-	-	-	-	-	-	-	-	-	-	-	-	179,397	8
2000	129,376	5	113,385	6	-	-	-	-	-	-	-	-	-	-	-	-	242,761	11
2001	85,009	3	29,505	3	-	-	-	-	-	-	-	-	-	-	-	-	114,514	6
2002	75,418	3	41,200	2	-	-	-	-	-	-	-	-	-	-	-	-	116,618	5
2003	94,248	3	68,482	4	-	-	-	-	-	-	-	-	-	-	-	-	162,730	7
2004	176,696	10	45,460	2	-	-	-	-	-	-	-	-	-	-	-	-	222,156	12
2005	209,479	8	91,122	3	-	-	-	-	-	-	-	-	-	-	-	-	300,601	11
2006	334,447	14	29,196	1	-	-	-	-	-	-	-	-	-	-	-	-	363,643	15
2007	573,799	16	67,521	3	-	-	-	-	-	-	-	-	-	-	-	-	641,320	19
2008	814,864	18	155,016	7	-	-	-	-	-	-	-	-	-	-	-	-	969,880	25
2009	1,098,010	20	70,568	9	-	-	-	-	-	-	-	-	-	-	-	-	1,168,578	29
2010	1,193,377	21	43,540	2	-	-	-	-	-	-	-	-	-	-	-	-	1,236,917	23
2011	1,048,825	21	43,337	4	-	-	-	-	-	-	-	-	-	-	-	-	1,092,162	25
2012	1,251,616	16	-	-	-	-	33,209	1	-	-	-	-	-	-	-	-	1,284,825	17
2013	1,323,928	18	64,133	2	-	-	21,479	1	-	-	-	-	-	-	-	-	1,409,540	21
2014	1,454,927	21	77,687	6	-	-	11,187	1	-	-	-	-	-	-	-	-	1,543,801	28
2015	1,117,944	12	269,884	6	-	-	-	-	98,672	1	-	-	-	-	-	-	1,486,500	19
2016	1,666,909	19	37,304	3	-	-	-	-	-	-	3,053	1	38,718	1	-	-	1,745,984	24
합계	13,311,861	272	1,668,713	94	7,189	1	65,875	3	98,672	1	3,053	1	38,718	1	1,596	2	15,195,677	375
비중	87.6%	72.5%	11.0%	25.0%	0.0%	0.3%	0.4%	0.8%	0.7%	0.3%	0.0%	0.3%	0.3%	0.3%	0.0%	0.5%	100.0%	100.0%

자금종류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개발사업차관	기자재차관	기금전대차관	프로그램차관	민자사업차관	민간협력전대차관	해외투자	합계
1989	-	1,208	-	-	-	-	-	1,208
1990	-	6,441	-	-	-	-	618	7,059
1991	4,928	-	-	-	-	-	-	4,928
1992	8,619	2,597	-	-	-	-	978	12,194
1993	47,512	8,735	-	-	-	-	-	56,247
1994	29,479	721	-	-	-	-	-	30,200
1995	27,654	6,848	-	-	-	-	-	34,502
1996	30,379	35,016	-	-	-	-	-	65,395
1997	48,881	23,566	-	-	-	-	-	72,447
1998	52,925	86,190	3,459	-	-	-	-	142,574
1999	75,174	51,574	-	-	-	-	-	126,749
2000	61,244	39,980	-	-	-	-	-	101,224
2001	55,079	110,209	-	-	-	-	-	165,288
2002	134,757	70,204	-	-	-	-	-	204,961
2003	100,939	36,100	-	-	-	-	-	137,039
2004	109,073	46,427	-	-	-	-	-	155,500
2005	117,453	46,797	-	-	-	-	-	164,250
2006	87,434	48,644	-	-	-	-	-	136,079
2007	136,312	19,024	-	-	-	-	-	155,335
2008	207,273	29,863	-	-	-	-	-	237,136
2009	261,356	51,458	-	-	-	-	-	312,814
2010	295,180	115,518	-	-	-	-	-	410,698
2011	385,346	124,370	-	-	-	-	-	509,716
2012	475,594	69,140	-	33,208	-	-	-	577,942
2013	551,127	42,213	-	21,479	-	-	-	614,818
2014	602,234	28,611	-	-	-	-	-	630,845
2015	653,468	842	-	11,186	68,783	-	-	734,280
2016	698,643	45,598	-	-	-	1,204	-	745,445
합계	5,258,065	1,147,895	3,459	65,873	68,783	1,204	1,596	6,546,875
비중	80.3%	17.5%	0.1%	1.0%	1.1%	0.0%	0.0%	100.0%

정부간 기본약정(F/A) 추진현황

2016년 4월 말 기준

구분	지역	국가	기간	한도	비고
기체결 (13개국)	아시아 (8개국)	미얀마	2014~2017	5억 달러	갱신(10억 달러, 2017~2021) 수원국 협의 중
		인니	2016~2020	6억 달러	-
		방글라데시	2015~2017	3.5억 달러	갱신(5억 달러, 2017~2020) 수원국 협의 중
		파키스탄	2015~2017	5억 달러	-
		캄보디아	2016~2018	3.5억 달러	-
		스리랑카	2016~2018	3억 달러	갱신(5억 달러, 2017~2019) 수원국 협의 중
		라오스	2016~2019	3억 달러	-
		몽골	2011~2018	3억 달러	-
	에티오피아	2016~2018	5억 달러	-	
	아프리카 (3개국)	탄자니아	2014~2016	2억 달러	갱신(3억 달러, 2017~2020) 수원국 협의 예정
	가나	2017~2019	2억 달러	-	
	중남미 (1개국)	볼리비아	2015~2019	2.5억 달러	-
	CIS (1개국)	우즈베키스탄	2016~2018	4억 달러	-
신규추진 (4개국)	아시아 (3개국)	베트남	2016~2020	15억 달러	수원국 협의 중, 기체결 F/A 만료(2015년)
		필리핀	2017~2022	10억 달러	수원국 협의 중, 기체결 F/A 만료(2013년)
		인도	-	-	A/G 문안 협의 중
	아프리카 (1개국)	이집트	-	-	30억 달러 금융패키지(2016. 3 체결)

*정부간 기본약정(F/A, Framework Arrangement)
중점협력국에 대해 통상 3~4년간 예상 지원한도를 포함하여 체결하는 정부간 약정으로,
동 기간과 한도 내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정부간 시행약정(A/R)을 생략하여 지원소요기간과 절차를 단축

MOU 국내 체결현황

체결일자	협약명	체결기관
1997. 07. 29	업무협약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05. 09. 06	업무협약서	해외건설협회
2005. 12. 16	국제개발은행 신탁기금 운용, 관리 협약	재정경제부
2006. 01. 13	업무협약서	조달청
2006. 01. 13	업무협약서	소프트웨어진흥원
2006. 02. 17	업무협약서	관세청
2006. 02. 17	업무협약서	소프트웨어진흥원
2006. 12. 12	업무협약서	한국도로공사
2006. 12. 19	업무협약서	환경관리공단
2006. 12. 28	업무협약서	소프트웨어진흥원
2007. 11. 26	업무협약서	한국수자원공사
2007. 12. 05	업무협약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08. 03. 18	업무협약서	한국조폐공사
2009. 01. 19	업무협약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9. 02. 26	업무협약서	전자통신연구원
2009. 03. 02	업무협약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09. 03. 18	업무협약서	조달청
2009. 03. 19	업무협약서	한국농어촌공사
2009. 03. 20	업무협약서	한국수자원공사
2009. 03. 24	업무협약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9. 03. 26	업무협약서	한국플랜트산업협회
2009. 03. 30	업무협약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09. 04. 06	업무협약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04. 09	업무협약서	한국교통연구원
2009. 04. 14	업무협약서	한국산업인력공단
2009. 04. 15	업무협약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04. 23	업무협약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09. 04. 27	업무협약서	한국환경산업협회
2009. 04. 29	업무협약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9. 05. 08	업무협약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9. 05. 19	업무협약서	한국광물자원공사
2009. 05. 27	업무협약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체결일자	협약명	체결기관
2009. 06. 02	업무협약서	소프트웨어진흥원
2009. 06. 04	업무협약서	한국도로공사
2009. 06. 05	업무협약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09. 06. 10	업무협약서	교육개발원
2009. 06. 11	업무협약서	해외건설협회
2009. 06. 15	업무협약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02. 24	업무협약서	서울메트로
2010. 04. 27	업무협약서	부산교통공사
2010. 06. 21	업무협약서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2010. 07. 14	업무협약서	국제개발협력학회
2011. 07. 07	시행약정서	한국농어촌공사
2011. 09. 08	업무협약서	산업연구원
2012. 10. 15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ULTURAL EXCHANGE	한국방송공사
2012. 11. 13	중소·중견기업 EDCF/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 협의체 구성 업무협약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2. 11. 13	중소·중견기업 EDCF/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 협의체 구성 업무협약서	해외건설협회
2012. 11. 13	중소·중견기업 EDCF/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 협의체 구성 업무협약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 11. 13	중소·중견기업 EDCF/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 협의체 구성 업무협약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11. 13	중소·중견기업 EDCF/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 협의체 구성 업무협약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 11. 13	중소·중견기업 EDCF/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 협의체 구성 업무협약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2012. 11. 22	업무협약서	가나안농군학교
2013. 07. 24	국제개발협력사업분야에 관한 업무협약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3. 07. 24	EDCF-영남대 업무협약서	영남대학교
2013. 09. 23	SBS와 한국수출입은행간 업무협약서	(주)SBS
2015. 03. 11	국제금융기구 연계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	기획재정부
2015. 03. 31	한국수출입은행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간 업무협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04. 02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간 업무협약	한국방송공사

MOU 국외 체결현황

단위: 백만원, (2016년 4월말 기준)

체결일	협약명	체결기관	소재지	주요내용	유효기간
2006. 10. 31	Memorandum of Understanding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일본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 협조용자 및 인적교류	영구
2011. 03. 28	Memorandum of Cooperation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볼리비아	대 볼리비아 EDCF지원 활성화	영구
2011. 05. 17	Aide Memoire	KfW Entwicklungsbank	독일	우선순위 분야 협조용자 사업 공동 발굴 등 업무협력	영구
2011. 05. 18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Agence Francais de Development (AFD)	프랑스	PPP 사업협의 등 업무협력	2016. 05. 18
2011. 07. 07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Ministry of Finance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콩고민주공화국	SOC건설 자원개발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의무 및 협력방안 마련	영구
2011. 07. 08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EDCF 지원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영구
2011. 11. 21	Memorandum of Understanding	Philippines Department of Agriculture	필리핀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댐 건설사업에 대한 양국간 EDCF 상호협력	2014. 11. 21
2012. 10. 15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ultural Exchange	Government of South Sudan	남수단	한류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방영을 통한 EDCF 홍보추진을 위해 남수단 정부 및 KBS와의 문화교류협약 체결	영구
2013. 09. 09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inistry of Transport of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베트남	땀땀-연륙 도로건설사업의 EDCF 지원에 대한 양국간 상호협력	영구
2014. 05. 08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국가 및 사업에 대한 지식, 경험 및 전문성 공유 협조용자 후보사업 발굴 인력교류 	2018. 05. 08
2014. 09. 22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llaborative Financing	Asian Development Bank (ADB)	필리핀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2차) 협조용자를 위한 업무협력	영구
2014. 09. 22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llaborative Financing	Asian Development Bank (ADB)	필리핀	스리랑카 콜롬보 중앙직업훈련원 및 감파하 기술대학 건립사업 협조용자를 위한 업무협력	영구
2014. 10. 02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베트남	호치민-나짱 고속철 사업, 하노이·호치민 도시전철 사업, 발전 사업 등 지원을 위한 120억불 규모의 금융협력 합의	영구
2015. 03. 05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Enhancement to Cofinancing	Abu Dhabi Fund for Development	아랍에미레이트	EDCF-ADFD 간 금융협력을 통한 협조용자사업 추진	영구
2015. 03. 28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니카라과	EDCF-IDB 협조용자 퍼실리티 시범사업인 니카라과 브로드밴드 구축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증진 합의	영구
2015. 07. 20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sian Development Bank (ADB)	필리핀	EDCF와 ADB의 방글라데시 교육 분야 지원 사업 협력 및 원조효과성 제고	영구
2015. 11. 16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미얀마	미얀마 및 당행 간 협력 강화 및 정보공유를 위해 MOU 체결	2017. 11. 16
2016. 03. 03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inistr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집트	양 기관 간 주요 인프라 분야에 대한 30억불 (EDCF 7억불, 수출금융 23억불) 규모의 금융협력 합의	영구
2016. 03. 15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orld e-Governments Organization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WeGO)	한국	도시 전자정부 사업 부문 상호협력 강화 및 정보 공유	2019. 03. 17
2016. 05. 26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Cooperation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에티오피아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인프라 사업 및 기술협력 포괄 패키지에 대하여 최대 1억불 지원	영구
2016. 05. 29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Ministry of Finance,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of Uganda	우간다	농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양허성 차관 최대 5천만불 및 사업타당성조사를 위한 차관지원비 5십만불 범위 내 지원	2021. 05. 29
2016. 05. 31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ies of The Republic of Kenya	케냐	농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최대 5천만불의 양허성 차관 제공	영구
2016. 05. 31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enya	케냐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타당성조사 지원, 양허성 차관, 타 원조기관과의 협조 용자 등	영구
2016. 09. 28	Financing Protocol between Uzbekistan Government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Uzbekistan Government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공항프로젝트 및 데이터센터 사업 지원	영구
2017. 01. 18	Action Plan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CABEI)	온두라스	EDCF-CABEI 협조용자 퍼실리티의 조속한 활용 추진	영구

연도별 사업승인 내역

단위: 백만 원(승인액, 집행액)

연도	국명	사업명	승인액	집행액	차관종류	
1987년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	8,051	8,051	기자재차관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9,839	9,774	개발사업차관	
	소계	2건	17,890	17,825		
1990년	가나	정유제품저장소 건립사업	8,997	8,997	개발사업차관	
	스리랑카	콜롬보-골간 도로개보수 사업	10,370	9,836	개발사업차관	
	필리핀	1차 전화망 확충 및 현대화 사업	3,790	3,790	개발사업차관	
		생건사제조 해투사업	618	618	해외투융자	
	소계	4건	23,775	23,240		
1991년	나이지리아	기관차현대화사업	10,930	10,930	기자재차관	
	요르단	폐수처리시설 1차사업	7,235	7,218	개발사업차관	
	우간다	지방전화망 확충사업	5,406	5,406	개발사업차관	
	인도네시아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18,181	16,994	개발사업차관	
	파키스탄	산업설비 대여사업	7,189	3,459	기금전대차관	
	파푸아뉴기니	Wewak 홍배수로 확충사업	9,080	8,153	개발사업차관	
	소계	6건	58,021	52,160		
	몽골	주사기공장 건설사업	4,123	4,048	기자재차관	
	미얀마	전화통신망 확충사업	5,726	5,726	개발사업차관	
	인도네시아	생건사제조 해투사업	978	978	해외투융자	
1992년	케냐	기술훈련소 설립사업	10,994	10,994	개발사업차관	
	터키	Gaziantep시 상수도관 현대화사업	11,600	11,592	기자재차관	
	폴란드	OPOLE주 통신망 현대화사업	38,173	38,173	개발사업차관	
	소계	6건	71,594	71,511		
	루마니아	PRAHOVA주 통신망 현대화 사업	39,468	39,468	개발사업차관	
	방글라데시	제2차 송배전사업	11,072	10,809	개발사업차관	
1993년	소계	2건	50,540	50,277		
	가나	LPG용기 제조공장 건립사업	6,400	6,400	개발사업차관	
	미얀마	송배전망 확충사업	13,587	13,586	개발사업차관	
	인도네시아	실업교육 개선사업	8,111	7,098	개발사업차관	
	1994년	중국	천진시 남항대교 건설사업	12,038	10,785	기자재차관
			산둥성 옹구항 확장사업	6,420	4,981	기자재차관
		길림성 연길비행장 확장사업	8,025	8,025	기자재차관	
	필리핀	민다나오 송전설비 확충사업	8,645	7,846	기자재차관	
	소계	루손 송전설비 확충사업	9,265	5,885	기자재차관	
		2차 전화통신망 확충사업	8,249	8,204	개발사업차관	
		소계	9건	80,740	72,811	
	1995년	베트남	Thien-Tan 상수도 사업	19,885	19,885	개발사업차관
		에콰도르	18번 국도 개량사업	18,355	18,336	개발사업차관
		지방통신망확충사업	11,467	11,164	개발사업차관	

단위: 백만 원(승인액, 집행액)

연도	국명	사업명	승인액	집행액	차관종류	
1995년	인도네시아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13,318	13,203	개발사업차관	
		길림성 연길시 상수도 사업	6,922	6,913	기자재차관	
	중국	요녕성 한중국제교류센터사업	3,846	3,822	기자재차관	
		호남성 통신망 확장사업	13,038	13,038	기자재차관	
	헝가리	제철소 현대화 사업	19,205	19,201	기자재차관	
	소계	8건	106,036	105,562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12,441	12,399	기자재차관	
	루마니아	ALBA주 및 BUZAU주 통신망 현대화사업	24,882	24,879	개발사업차관	
	몽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6,290	6,290	개발사업차관	
	미얀마	양곤항 콘테이너 야적장 건설사업	11,793	11,793	개발사업차관	
미얀마	철도차량 구매사업	16,588	16,588	기자재차관		
1996년	방글라데시	철도기관차 구매사업	27,294	27,293	기자재차관	
	베트남	Ba Ria 복합화력 발전설비 구매사업	41,516	41,516	기자재차관	
		병원시설개선사업	9,849	9,830	개발사업차관	
		Horana 지방 전화망현대화 사업	11,725	10,064	개발사업차관	
		Gampaha 지역 통신망 현대화사업	11,725	11,082	개발사업차관	
	스리랑카	송배전망 개선사업	6,449	6,254	개발사업차관	
		의료기기 구매사업	8,171	7,814	기자재차관	
		Ratnapura-Bandarawela간 도로개보수 사업	24,512	24,512	개발사업차관	
		공무원주택 건설사업	8,171	8,165	개발사업차관	
	요르단	Madaba시 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7,622	7,622	개발사업차관	
	우즈베키스탄	통신망 현대화사업	12,486	12,450	개발사업차관	
	중국	영하회족 자치구 은천 하동공항 건설사업	4,657	4,586	기자재차관	
		안산시 고체 폐기물처리 시범사업	2,117	2,116	기자재차관	
농업부 종합 농업 개발 사업		16,933	16,924	기자재차관		
카자흐스탄	통신망 현대화사업	16,269	16,140	개발사업차관		
필리핀	라곤딩간 공항개발사업	21,172	21,172	개발사업차관		
소계	21건	302,662	299,490			
1997년	인도네시아	칼리만탄병원 개선사업	27,534	27,367	기자재차관	
		흑룡강성 목단강고속도로건설사업	13,466	13,466	기자재차관	
	중국	감숙성무위시상수도건설사업	4,444	4,443	기자재차관	
		운남성 곤명시고가도로건설사업	4,489	4,470	기자재차관	
	튀니지	올림픽스타디움 건설사업	26,854	24,874	개발사업차관	
	파키스탄	송변전설비 확충사업	17,903	17,890	기자재차관	
	소계	6건	94,690	92,510		
	1998년	니카라과	전력망 확충사업	7,042	7,041	개발사업차관

연도별 사업승인 내역

단위: 백만 원(승인액, 집행액)

연도	국명	사업명	승인액	집행액	차관종류
1998년	앙골라	어선건조사업	10,798	10,798	기자재차관
	온두라스	송배전망 확충사업	7,002	7,002	기자재차관
	크로아티아	리예카항 현대화사업	44,178	44,169	기자재차관
	키르기즈	통신망 현대화 사업	16,114	16,113	개발사업차관
	파나마	의료-보건 현대화사업	22,668	22,463	기자재차관
소계	6건	107,802	107,587		
1999년	루마니아	ALBA & BUZAU 주 통신망 현대화 사업 PHASE II	16,538	16,537	개발사업차관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보충용자	934	934	개발사업차관
	몽골	정부통신망 현대화사업	6,983	6,959	개발사업차관
		지방통신망 확장사업	18,561	17,608	개발사업차관
	베트남	백신생산공장 건설사업	34,728	34,727	개발사업차관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39,251	38,481	개발사업차관
	인도네시아	병원폐수 처리시설 확충사업	45,336	44,913	개발사업차관
	중국	사천성, 면양남공공항 건설사업	17,066	16,581	기자재차관
소계	8건	179,397	176,740		
2000년	가나	Buipe-Bolgatanga간 송유관(265km) 건설사업	45,558	45,200	개발사업차관
	미얀마	B형 간염백신공장 건립사업	16,355	16,354	개발사업차관
	방글라데시	지방배전망 확충사업(2단계)	20,908	16,282	기자재차관
		Thien-Tan 상수도 사업(보충)	8,009	7,190	개발사업차관
	베트남	Ba Ria 복합화력 발전설비 구매사업 (보충)	8,470	8,462	기자재차관
	볼리비아	파일론-산혼세 교량건설 사업	24,189	23,753	개발사업차관
	스리랑카	의료장비 구매사업	3,171	3,170	기자재차관
		Galle광역시 상수도개발사업	35,265	35,256	개발사업차관
	인도네시아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34,369	32,902	기자재차관
	중국	흑룡강성 모단강-계서간 도로건설사업	39,829	36,749	기자재차관
	내몽고자치구 생태환경 개선사업	6,638	6,638	기자재차관	
소계	11건	242,761	231,957		
2001년	방글라데시	통신망 현대화 사업	35,259	35,082	개발사업차관
	베트남	하이퐁 고체폐기물 처리사업	23,400	18,759	개발사업차관
		하북성, 천진~보정간 도로건설사업	23,657	16,177	기자재차관
	중국	감숙성 감숙농업대학교 농업기술연구소 건립사업	2,490	2,489	기자재차관
		상해시 정안구 공업 입체주차장 건설사업	3,358	3,357	기자재차관
	캄보디아	행정전신망 구축사업	26,350	26,028	개발사업차관
	소계	6건	114,514	101,893	
2002년	방글라데시	철도현대화사업	35,295	35,254	기자재차관

단위: 백만 원(승인액, 집행액)

연도	국명	사업명	승인액	집행액	차관종류
2002년	스리랑카	발란고다~반다라웰라간 도로개보수사업	19,003	19,003	개발사업차관
	중국	중경시 팡수 도로건설사업	5,905	5,523	기자재차관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36,230	36,226	개발사업차관
		캄포트-트라판로포 도로 개보수 사업	20,185	20,177	개발사업차관
	소계	5건	116,618	116,184	
2003년	알바니아	송변전시설 개선사업	28,984	28,984	개발사업차관
	예멘	통신망 확충 사업	32,075	32,075	개발사업차관
	온두라스	범죄예방사업	2,320	2,316	기자재차관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개발 사업	30,495	14,561	기자재차관
		4개성 벵농사 기계화 시범단지 건설사업	25,476	24,152	기자재차관
	중국	신강위구르자치구 Korla시 외부순환도로 건설사업	10,191	10,190	기자재차관
	필리핀	남부마닐라 통근철도사업(PHL-7)	33,189	33,183	개발사업차관
	소계	7건	162,730	145,460	
	니카라과	Juigalpa 상수도 확충사업	16,666	16,665	개발사업차관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방국립대학교 설립사업	23,133	22,586	개발사업차관
2004년	미얀마	전자정부 구축사업	12,794	12,792	개발사업차관
	베트남	닌빈 고체폐기물 처리사업	25,887	25,848	개발사업차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병원현대화사업 1차	19,543	19,490	기자재차관
		Galle 광역시 상수도개발사업(2차)	15,499	15,498	개발사업차관
	스리랑카	전자정부 확충사업	14,534	14,433	개발사업차관
	요르단	암만 남부 폐수처리시설 사업	24,100	24,099	개발사업차관
	인도네시아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	19,438	19,312	개발사업차관
	케냐	도로보수용 장비 교체사업	25,917	25,917	기자재차관
	탄자니아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	17,093	15,940	개발사업차관
	필리핀	라킨단간 공항개발사업 보충용자	7,552	1,516	개발사업차관
소계	12건	222,156	214,098		
2005년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시스템 전산화사업	22,108	20,841	개발사업차관
	방글라데시	인터넷정보망 확충사업	34,689	34,039	개발사업차관
	스리랑카	함반토타 행정단지 건설사업	19,040	18,990	개발사업차관
	앙골라	농업현대화사업	33,119	33,024	개발사업차관
	온두라스	Atlantida 병원건립사업	23,085	22,994	개발사업차관
	요르단	나우르 폐수처리사업	25,401	1,028	개발사업차관
	인도네시아	종합병원 개선사업	27,500	23,717	기자재차관
	중국	산둥성 곡부시 오수재생처리사업	2,562	2,561	기자재차관
	캄보디아	크라폰리강 수자원개발사업	28,996	28,995	개발사업차관
	터키	전동차 구매사업	61,060	57,655	기자재차관

연도별 사업승인 내역

단위: 백만 원(승인액, 집행액)

연도	국명	사업명	승인액	집행액	차관종류
2005년	필리핀	GSO 도로확장 및 긴급준설사업	23,041	22,614	개발사업차관
	소계	11건	300,601	266,457	
	니카라과	직업훈련소 확충사업	14,886	14,847	개발사업차관
	몽골	울린바타르 지능형교통망 사업	17,327	17,324	개발사업차관
		긴급구난정보망 구축사업	18,469	18,466	개발사업차관
	방글라데시	재난구조선 구매사업	29,196	29,196	기자재차관
	베트남	티엔탄 상수도사업(2차)	28,880	16,286	개발사업차관
	스리랑카	골광역시 상수도 개발사업(2차) 보충용자	6,744	6,743	개발사업차관
		니아가미 국립직업훈련원 개선사업	9,594	9,216	개발사업차관
	2006년	앙골라	앙골라 국가정보처리센터 구축사업	33,193	33,137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시 상수도확장사업	51,507	51,499	개발사업차관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	34,838	33,842	개발사업차관
인도네시아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	14,747	14,124	개발사업차관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사업	19,362	19,103	개발사업차관
캄보디아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 2차 사업	19,094	5,212	개발사업차관
		지방행정정보망 확충사업	29,084	28,125	개발사업차관
소계		3번 국도 개보수사업(2차)	36,722	36,568	개발사업차관
		15건	363,643	333,689	
니카라과		후이갈파 상수도 확충사업(2차)	21,746	21,735	개발사업차관
리우스	GMS 북부도로 개선사업	28,395	28,386	개발사업차관	
	리우스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52,247	51,934	개발사업차관	
마다가스카르	리우스 SEA 게임 주경기장 연결도로 개선사업	3,001	2,998	개발사업차관	
	틀리아라주 35번 국도 개보수사업	17,243	11,684	개발사업차관	
방글라데시	철도기관차 구매사업(3차)	32,750	32,691	기자재차관	
	투아티엔체 종합병원 건립사업	38,049	37,251	개발사업차관	
2007년	베트남	GMS 남부해안 연결도로사업	56,719	54,722	개발사업차관
		닥농성 종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5,918	5,913	기자재차관
	락지아 우회도로 건설사업	99,395	95,578	개발사업차관	
	호아빈 상수도 건설사업	15,738	9,475	개발사업차관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38,856	25,705	개발사업차관	
	디지털 방송 인프라 확충사업	28,853	25,969	기자재차관	
	세네갈	정부행정망 구축사업	26,003	25,991	개발사업차관
	앙골라	영양개선사업	65,605	65,497	개발사업차관
	예멘	한국-예멘 고등 기술훈련소 사업	17,978	3,983	개발사업차관
	케냐	기술훈련소 확장개선사업	12,253	11,965	개발사업차관
탄자니아	말라가라시강 교량 및 연결도로 건설사업	29,924	29,924	개발사업차관	

단위: 백만 원(승인액, 집행액)

연도	국명	사업명	승인액	집행액	차관종류
2007년	파키스탄	GEPCO 지방배전망 확충사업	50,647	40,775	개발사업차관
	소계	19건	641,320	582,175	
	네팔	차멜리아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68,466	56,385	개발사업차관
	마다가스카르	국가재해관리센터 구축사업	35,060	9,637	기자재차관
	모잠비크	켈리만 중앙병원 건립사업	49,536	44,717	개발사업차관
	방글라데시	국가정보통신망 개발사업	34,514	33,719	개발사업차관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	136,394	121,361	개발사업차관
	베트남	비엠허 하수도 건설사업	34,104	12,747	개발사업차관
		라이짜우성 종합병원 개선사업	12,196	12,196	기자재차관
	베트남	목짜우 상수도 건설사업	14,510	4,550	개발사업차관
호아간띠이 상수도 건설사업		35,599	33,967	개발사업차관	
2008년	베트남	지아라이성 플레이쿠시 종합병원 개선사업	3,757	3,756	기자재차관
		탕화성 하퐁읍 종합병원 개선사업	3,761	3,759	기자재차관
	소계	탕화성 탕화시 직업기술대학 개선사업	3,398	3,200	기자재차관
		탕화시 사회경제개발사업	37,255	33,242	개발사업차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원현대화사업 2차	62,680	62,416	기자재차관
		전자정부 확충사업(2차)	8,331	8,328	개발사업차관
	스리랑카	Padeniya-Anuradhapura 도로 개선사업	76,280	75,883	개발사업차관
		Ruhunupura 상수도 개발사업	88,059	87,048	개발사업차관
	요르단	암만남부 하수처리사업(2차)	48,756	41,900	개발사업차관
	인도네시아	아담발릭병원 개선사업	34,164	32,355	기자재차관
카메룬	직업훈련소 건립 사업	40,073	39,698	개발사업차관	
	시엠티 하수처리 및 하천정비사업	32,326	32,207	개발사업차관	
캄보디아	국도(No. 31, 33) 및 지방도(No. 117) 개보수, 캄포트 우회도로 건설사업	32,904	32,881	개발사업차관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아루샤 송전망 확충사업	30,530	26,000	개발사업차관	
필리핀	비콜로드-실라이 공항진입도로 건설사업	14,953	12,306	개발사업차관	
	GSO 도로(2차) 사업	32,274	21,742	개발사업차관	
소계	25건	969,880	846,002		
2009년	라오스	라오스 GMS 북부 송전사업	43,608	9,920	개발사업차관
		5개공항 소방설비 공급사업(소액차관)	3,652	3,509	기자재차관
	소계	비엔티안시 소방설비 공급사업(소액차관)	3,652	3,466	기자재차관
		109 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소액차관)	3,652	3,418	기자재차관
	말리	말리 관개개발 프로그램 1단계 사업	26,240	9,140	개발사업차관
		정부행정망 개발사업	45,041	44,309	개발사업차관

연도별 사업승인 내역

단위: 백만 원(승인액, 집행액)

연도	국명	사업명	승인액	집행액	차관종류
2009년	모잠비크	나갈라 연결도로 개보수 1단계 사업	24,424	18,755	개발사업차관
		모잠비크 가자주 송배전망 확충사업	54,435	48,540	개발사업차관
	방글라데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CNG 버스 구매사업	34,607	34,603	기자재차관
		방글라데시 ICT 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43,265	43,211	개발사업차관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10구간)	126,489	114,553	개발사업차관
	베트남	베트남 빈틴 교량 건설사업	109,809	101,474	개발사업차관
		호치민-퐁롱 고속도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32,656	21,135	개발사업차관
		하민성 중등직업학교 개선사업 (소액차관)	3,438	3,379	기자재차관
		광빈성 직업전문대학 개선사업 (소액차관)	3,309	3,308	기자재차관
		베트남 엔바이 종합병원 건립사업	49,866	32,357	개발사업차관
		베트남 지아라이성 아온파 중등직업학교 개선사업	3,374	3,368	기자재차관
		베트남 까마우성 종합병원 개선사업	3,501	3,499	기자재차관
	불리비아	불리비아 바네가스 교량건설사업	44,618	32,156	개발사업차관
	스리랑카	스리랑카 하톤-누와라엘리아 도로 개선사업	42,919	42,917	개발사업차관
	우즈베키스탄	심장수술센터 의료기기 공급사업	11,383	10,601	기자재차관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확장사업	62,746	31,246	개발사업차관
	캄보디아	GMS 캄보디아 북서부도로 개선사업	34,106	33,725	개발사업차관
	콜롬비아	콜롬비아 ICT 교육역량강화사업	36,636	33,167	개발사업차관
	탄자니아	도도마시 상수도 확충사업	54,872	53,894	개발사업차관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		53,211	52,672	개발사업차관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개선사업	77,117	61,215	개발사업차관	
필리핀	남북부연결철도 1차 사업(보충용자)	18,726	-	개발사업차관	
	남북부연결철도 2차 사업	117,226	-	개발사업차관	
소계	29건	1,168,578	853,539		
2010년	가나	Wa 상수도 건설사업	61,422	44,719	개발사업차관
	니카라과	직업훈련소 확충 2차사업	25,094	24,410	개발사업차관
	도미니카공화국	출입국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7,977	25,330	개발사업차관
	모잠비크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38,713	38,261	개발사업차관
		재난관리정보화시스템 확충사업	28,117	27,773	개발사업차관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비비야나-칼리아코 송전망 개발사업	109,064	96,757	개발사업차관
	베트남	베트남 GMS 남부해안 연결도로 2차 사업	75,762	58,432	개발사업차관

단위: 백만 원(승인액, 집행액)

연도	국명	사업명	승인액	집행액	차관종류	
2010년	베트남	베트남 밤공 교량 건설사업	225,752	164,008	개발사업차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원현대화사업 3차	33,247	33,238	개발사업차관	
	세네갈	해상인프라 구축사업	54,490	54,486	개발사업차관	
	스리랑카	고체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	40,954	1,076	개발사업차관	
		농업현대화사업(보충용자)	21,123	20,153	개발사업차관	
	앙골라	산업고등기술센터 건립 사업	42,528	-	개발사업차관	
		치안강화사업	49,795	24,001	개발사업차관	
	요르단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사업	85,483	81,007	개발사업차관	
	우간다	우간다 교육개선사업	29,016	21,442	개발사업차관	
		경찰청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48,842	499	개발사업차관	
	인도네시아	카리안탐 건설사업	109,520	29,065	개발사업차관	
		몽콜보레이섬 개발사업	20,684	20,672	개발사업차관	
	캄보디아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	23,830	23,787	개발사업차관	
		이링가-신앙가 송전망 확충사업	41,964	36,338	개발사업차관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29,217	21,756	기자재차관	
	필리핀	라컨딩간 공항 항법지원설비 공급사업	14,323	10,777	기자재차관	
	소계	23건	1,236,917	857,987		
	2011년	가나	Prestea-Kumasi 전력 강화 사업	75,282	33,146	개발사업차관
		니카라과	재생에너지 송변전사업(IDB 협조용자)	29,288	24,946	개발사업차관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44,039	-	개발사업차관
라오스		라오스 조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2,344	6,961	개발사업차관	
모잠비크		교육개선사업	19,854	16,136	개발사업차관	
몽골		국립의료원 건립사업	65,020	19,694	개발사업차관	
방글라데시		다카 상수도 개발사업	46,906	24,575	개발사업차관	
방글라데시		재난구조선 구매사업(보충용자)	7,357	7,322	기자재차관	
		철도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	25,208	5,659	개발사업차관	
베트남		베트남 다낭병원 핵의학·방사선센터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11,815	10,531	기자재차관	
	라오가이 종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15,546	15,545	기자재차관		
	광빈성 태양광 발전사업	13,482	4,370	개발사업차관		
	통수엔시 하수처리사업	53,895	18,354	개발사업차관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건립사업	122,119	-	개발사업차관		
스리랑카	스리랑카 콜롬보 중앙직업훈련원 및 감파하 기술대학 건립사업	29,006	6,822	개발사업차관		
아제르바이잔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	26,866	876	개발사업차관		

연도별 사업승인 내역

단위: 백만 원(승인액, 집행액)

연도	국명	사업명	승인액	집행액	차관종류
2011년	에티오피아	솔루타-게브레구라차 전력망 구축 사업	84,403	65,397	개발사업차관
	온두라스	솔루타카 병원 건립 사업	40,326	1,031	개발사업차관
	우즈베키스탄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7,487	4,554	개발사업차관
	캄보디아	캄보디아 21번 국도 개보수사업	58,857	26,098	개발사업차관
	콩고민주공화국	렘바임부 상수도 사업	82,936	2,775	개발사업차관
	탄자니아	잔지바르 관개시설 건립사업	61,060	1,254	개발사업차관
	파키스탄	송변전설비 확충사업(보충용자)	8,619	8,505	기자재차관
		말리칸트터널 건설사업	95,253	998	개발사업차관
	필리핀	시마르 해안도로사업	25,194	916	개발사업차관
	소계	25건	1,092,162	306,465	
2012년	남수단	남수단 이태석 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	102,607	-	개발사업차관
	니카라과	니카라과 재생에너지 송변전사업(2차)	55,230	12,939	개발사업차관
	방글라데시	해상안전운항시스템 구축사업	45,795	847	개발사업차관
		광대역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94,032	992	개발사업차관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33,209	33,208	프로그램차관
	베트남	로메-락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	234,827	26,888	개발사업차관
		홍옌시 폐수처리사업	28,230	582	개발사업차관
	스리랑카	파데니아-아누라다푸라 도로 개선사업(보충용자)	12,926	12,923	개발사업차관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시 복합행정센터 건립사업	62,957	12,580	개발사업차관
	아제르바이젠	피르사기 하수처리장 건립사업	53,029	14,219	개발사업차관
2013년	에콰도르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	83,013	2,838	개발사업차관
	요르단	암만 남부 폐수처리시설 사업(1차)(보충용자)	32,764	32,506	개발사업차관
	캄보디아	살라타운담 개발사업	44,753	885	개발사업차관
	탄자니아	말라가라시강 교량 및 연결도로 건설사업(보충용자)	32,767	32,527	개발사업차관
		주민증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58,650	35,889	개발사업차관
	파키스탄	신드주 아동병원 건립사업	56,175	-	개발사업차관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253,861	6,252	개발사업차관
	소계	17건	1,284,825	226,077	
	르완다	르완다 국립대학교 건립사업	62,584	1,325	개발사업차관
	모잠비크	마푸토 및 마틀라 위생매립장 건립사업	59,375	1,218	개발사업차관
2013년	미얀마	남풀라-나메틸 도로 건설사업	92,128	1,537	개발사업차관
		500kV Taungoo-Kamanat 송전망 구축사업	122,119	-	개발사업차관
		IT 인프라네트워크 구축사업	62,328	17,059	개발사업차관
	베트남	티엔탄 상수도사업(2차)(보충)	16,746	-	개발사업차관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2차)	21,479	21,479	프로그램차관

단위: 백만 원(승인액, 집행액)

연도	국명	사업명	승인액	집행액	차관종류
2013년	베트남	국립이비인후과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23,203	-	기자재차관
		하노이약학대학 건립사업	54,954	848	개발사업차관
		베트남 홍하교량 건설사업	134,454	32,694	개발사업차관
	스리랑카	데두루 오아 상수도 사업	64,038	12,634	개발사업차관
		루안벨라 상수도 사업	25,071	-	개발사업차관
	에티오피아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 -Phase 1 (Lot 2) 메카-주웨이 구간	119,744	33,531	개발사업차관
	온두라스	농촌 태양광 전력화사업	51,198	10,783	개발사업차관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건립사업	125,595	3,686	개발사업차관
	인도네시아	바탐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57,397	2,768	개발사업차관
		경찰청 고속수시선 공급사업	40,930	8,691	기자재차관
2014년	잠비아	공공안전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	50,718	-	개발사업차관
	카메룬	가루아 종합병원 건립사업	70,166	1,165	개발사업차관
	캄보디아	다운트리엠 개발사업	57,028	878	개발사업차관
	필리핀	팜팡가지역 통합재난위험감축 및 기후변화적응사업	98,285	788	개발사업차관
	소계	21건	1,409,540	151,084	
	니카라과	후이갈파 하수처리사업	81,024	1,689	개발사업차관
	라오스	사빈나켓주 농촌종합개발사업	56,175	2,508	개발사업차관
		켈리만 중앙병원 건립사업(보충용자)	27,981	23,667	개발사업차관
	모잠비크	소방설비 공급사업(소액차관)	5,885	2,723	기자재차관
		구급차 공급사업(소액차관)	5,856	4,811	기자재차관
2014년	미얀마	미얀마 철도현대화 사업	54,954	-	기자재차관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168,320	-	개발사업차관
	방글라데시	반달주리 상수도 개발사업	118,455	-	개발사업차관
		BSM 의대 종합전문센터병원 건립사업	159,875	8,496	개발사업차관
		디지털 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3,775	-	개발사업차관
		밤콩교량 접속도로 건설사업	36,153	13,132	개발사업차관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3차)	11,187	11,186	프로그램차관
		틴롱교량 건설사업	56,175	1,271	개발사업차관
	베트남	안지양성 탄짜우 종합병원 앞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3,664	-	기자재차관
		짜빈성 튕주 종합병원 앞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3,664	-	기자재차관
2014년	미얀마	짜빈상수도 건설사업	31,492	-	개발사업차관
		하이퐁시 산부인과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3,664	-	기자재차관
	스리랑카	하톤-누와리엘리아 도로 개선사업(보충용자)	19,166	18,827	개발사업차관
		감파하 지구 행정복합청사 건립사업	41,440	-	개발사업차관

연도별 사업승인 내역

단위: 백만 원(승인액, 집행액)

연도	국명	사업명	승인액	집행액	차관종류
2014년	요르단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사업 (보충용자)	15,636	13,257	개발사업차관
	우즈베키스탄	국립전자도서관 구축사업	17,525	550	개발사업차관
	이집트	이집트 철도 전자연동시스템 구축사업	140,410	-	개발사업차관
	캄보디아	2번 22번 국도 개보수사업	68,509	-	개발사업차관
		지방도로 개선사업 2차	48,531	8,033	개발사업차관
		시엠립 하천정비사업 2차	16,245	-	개발사업차관
		48번 국도 개보수 사업	82,350	-	개발사업차관
	탄자니아	셀린더 교량 건설사업	111,167	608	개발사업차관
	파키스탄	45번 국도(켈카탁~치트랄) 개선·확장사업	114,523	-	개발사업차관
	소계	28건	1,543,801	110,758	
2015년	니카라과	니카라과 브로드밴드 구축사업 (EDCF-IDB 협조용자 퍼실리티 기금 지원사업)	30,530	602	개발사업차관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98,672	68,783	민자사업차관
		라오스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64,794	1,272	개발사업차관
	모잠비크	공공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108,326	-	개발사업차관
	미얀마	툰데 운하 개선사업	74,859	-	개발사업차관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철도차량(객차) 구매사업	123,340	-	기자재차관
		방글라데시 철도차량(기관차) 구매사업	111,128	-	기자재차관
	베트남	렌강 및 황마이강 수자원 개발사업	93,951	-	개발사업차관
		호아민성 락뚜이 종합병원 앞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3,664	-	기자재차관
		하띤성 툽토 종합병원 앞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3,664	-	기자재차관
	베트남	귀년시 메디컬센터 앞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3,664	-	기자재차관
		벤째성 종합병원 건립사업	76,523	-	개발사업차관
		띤반~년짜도로 건설사업	233,196	-	개발사업차관
		소방방재청 재난안전설비 개선사업	24,424	-	기자재차관
		세네갈	해상인프라 구축사업 2차	101,782	35,375
	요르단	요르단 나우르 폐수처리사업(보충용자)	36,636	-	개발사업차관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2차사업	40,299	-	개발사업차관
코트디부아르	국립양센터 건립사업	134,768	-	개발사업차관	
필리핀	팡일만 교량 사업	122,280	-	개발사업차관	
소계	19건	1,486,500	106,032		

단위: 백만 원(승인액, 집행액)

연도	국명	사업명	승인액	집행액	차관종류
2016년	니카라과	니카라과 지열발전탐사 및 송전망 확충지원 사업(EDCF-IDB 협조용자 퍼실리티 기금 지원사업)	30,530	-	개발사업차관
		지방 태양광에너지 공급사업	40,763	-	개발사업차관
		마나과 우회도로 건설사업	86,204	-	개발사업차관
	라오스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2차)	70,347	-	개발사업차관
		공안부 현대식병원 건립사업	79,377	-	개발사업차관
	몽골	몽골 시외버스 교체사업	3,387	3,215	기자재차관
		몽골 국제버스 교체사업	3,387	3,215	기자재차관
		몽골 시외버스 교체사업 2차	30,530	-	기자재차관
		ICT통합교실 구축사업	23,946	-	개발사업차관
	미얀마	만달레이-미짜나 철도개보수사업 : 교타용-메자 최우선 구간	122,119	-	개발사업차관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ICT 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2차)	92,837	-	개발사업차관	
베트남	케넷 철도 개량사업	92,683	-	개발사업차관	
	노후 교량 개보수사업(1차)	64,099	-	개발사업차관	
에콰도르	에콰도르 송배전망 확충사업 (EDCF-IDB 협조용자 퍼실리티 기금 지원사업)	30,530	14,930	개발사업차관	
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 개선사업	155,512	-	개발사업차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건설사업	244,238	-	개발사업차관	
	전자정부 통합데이터센터 건립사업	32,972	-	개발사업차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수자원 엔지니어링 사업	38,718	-	사업준비차관	
캄보디아	캄보디아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	3,053	1,204	민간협력전대차관	
캄보디아	반테민체이 관개 개발 및 홍수 피해 저감 사업	103,917	-	개발사업차관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구축 및 하천정비사업	78,017	-	개발사업차관	
케냐	케냐 과학기술원 건립사업	115,643	-	개발사업차관	
탄자니아	다레살람시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110,019	-	개발사업차관	
파키스탄	IT 파크 건립사업	93,156	-	개발사업차관	
소계	24건	1,745,984	22,563	--	
합계	53개국 375개 사업	15,195,677	6,570,460	--	

연표

1986

- 09. 12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연구반 설치
- 12. 2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정
- 12. 26 경험기금 설립준비위 발족

1987

- 03. 14 경험기금부 신설준비위원회 설치
- 04. 2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정
- 05. 02 제5차 한국수출입은행 정관 개정(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및 관리 사무 취급조항 신설 등)
- 05. 29 제1차 기금운영위원회 개최
- 06. 01 경제협력기금부 설치
- 06. 05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정
- 06. 16 대외경제협력기금 회계규정 제정
- 06. 22 대외경제협력기금 여유자금운용지침 제정
- 06. 2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정
- 07. 01 정부, 150억 원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출연 및 기금 업무 개시
- 07. 10 경험기금업무 취급규정 제정
- 09. 19 경험기금, 지원대상 4개국 6개 사업에 대한 정부 실무조사단에 파견
- 12. 0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 12. 30 정부 최초 기금지원 결정
(인도네시아 파당 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및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

1988

- 08. 10 경험기금, 최초의 정부간 협정 체결(인도네시아 파당 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1989

- 05. 29 기금 최초 나이지리아 앞 10백만 달러 규모의 경험차관 공여계약 체결
(철도차량 현대화사업)
- 06. 22 경험기금 지원대상 사업의 사전구매 및 소급금융 지원지침 제정
- 09. 19 인도네시아 앞 경험차관 공여계약 체결(파당 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 11. 30 최초 경험기금 집행(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
- 12. 26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 제정

1990

- 06. 22 기금 최초 필리핀 원사제조사업 해외투융자사업 금융지원 결정
- 11. 22 원화표시 차관한도 계산 시 적용환율 등에 대한 지침 제정

1991

- 01. 25 EDCF 업무담당 경제협력기금부 1·2부로 분리

1992

- 02. 14 최초의 경험차관 지원사업 완공(필리핀 앞 전화망 확충 및 현대화사업)

1993

- 03. 06 대외경제협력기금 시행령 개정(상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04. 26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협조대출 기본협정 체결
- 06. 01 재무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절차 개선방안' 수립
- 06. 03 경험기금 운영위 심의대상 사업을 현행 10백만 달러 이상에서 20백만 달러 이상으로 조정
- 06. 15 재무부, ADB와의 협조융자 기본협정 체결
- 08. 27 20개 개발도상국의 연수단에 대한 수출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10. 26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업무협약 체결

1994

- 01. 11 해외투융자자금 지원요건에 관한 지침 제정

1995

- 05. 19 중장기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05. 22 베트남 금융인 초청연수 실시
- 06. 28 필리핀 앞 경험차관 공여계약 체결(최초의 ADB와의 협조융자지원사업인 민다나오 송전 설비 확충사업)
- 07. 18 EDCF Annual Report 창간호(1994년) 발간
- 10. 24 최초로 중국, 베트남 등 9개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 11. 08 AfDB와 차관구매사업 세미나 개최
- 12. 11 정부출연금 총액 1조 원 돌파

연표

1996

- 04. 15 베트남 중앙은행 직원 초청 연수 실시
- 06. 28 경험기금업무 취급규정 개정(지원절차 및 표준차관계약서체제 간소화)
- 08. 08 대외경제협력기금 시행령 개정(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09. 25 구매계약 조기추진 및 소급금융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 10. 15 제2회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EDCF 워크숍 실시
- 11. 06 OECD 협약참가국(GOP) 회원 가입
- 12. 31 경험차관 지원 누적 승인액 1조 원 돌파

1997

- 03. 17 중국 정부 구매입찰 연수단 방문
- 06. 13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개정(기금운용위원회에 국제협력단 총재 추가, 기금 지원 효력기한 설정 등)
- 07. 0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개정(한국국제협력단 개발 조사 사업과의 상호 연계추진 강화)
- 07. 29 한국국제협력단과 업무협약 체결
- 10. 14 제3회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EDCF 워크숍 실시
- 11. 06 경험기금 할인율(DDR) 산정을 위한 원화표준상업금리(CIRR) 산정방안 수립 및 확정(OECD GOP 회의)
- 12. 16 OECD 가입에 따른 EDCF 지원제도 개선내용에 대한 관련 기업 설명회 개최

1998

- 01. 13 경험기금업무 취급규정 개정(사업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기한 연장)
- 02. 24 EDCF 최초의 혼합신용 지원사업인 필리핀 앞 경험차관 공여계약 체결(라컨딩간 공항개발사업)

1999

- 01. 11 경험기금업무 취급규정 개정(보충용자 지원근거 조항 신설)
- 03. 05 해외경제연구소-일본 OECF와 업무협약 체결
- 04. 13 아시아개발은행과 협조용자를 위한 협약 체결

2000

- 01. 14 EDCF 업무발전 토론회 개최
- 01. 17 인도네시아 한국수출입은행 간부직원 연수
- 07. 27 <70년대 이후 개발원조의 흐름과 최근 선진원조국들의 지원실적> 발간

- 10. 16 제4회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EDCF 워크숍 개최
- 10. 18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무역촉진 업무협약 체결
- 10. 23 세계은행 협조용자 설명회 개최
- 10. 31 미얀마 앞 경험차관 공여계약 체결(B형간염 백신공장 건립사업)
- 11. 03 중국 및 인도 한국수출입은행, 일본국제협력은행 등 13개 기관과 양해각서 체결
- 11. 21 경험기금업무 취급규정 개정(차관원리금 상환 지연시 연체사실 및 연체해소 통지 의무화)

2001

- 01. 27 <경험차관에 대하여 알아보다> 발간
- 02. 28 경험기금 발전 대토론회 개최
- 03. 02 기금자금운용 세부기준 제정
- 07. 18 스리랑카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 연수 실시
- 08. 23 세계은행과 협조용자 기본협약 체결
- 09. 13 일본 국제협력은행과 제1차 연례협의회 개최
- 10. 15 제5회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EDCF 워크숍 개최
- 10. 22 경험기금 지원사업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지침 제정
- 11. 16 베트남 개발은행과 업무협력 기본협약 체결

2002

- 01. 17 베트남 앞 경험차관 공여계약 체결(하이퐁 고체폐기물 처리사업)
- 05. 02 현지화 소요비용 지원 및 제3국산 구매허용에 관한 지침 제정
- 05. 15 중국 한국수출입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 07. 19 EDCF 정책토론회 개최
- 09. 27 일본 국제협력은행과 제2차 연례협의회 개최
- 10. 04 제6회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EDCF 워크숍 개최
- 10. 17 경험기금을 활용한 중견 중소기업의 환경산업분야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
- 11. 01 알바니아 송변전설비 개선사업에 대한 상업성 검증을 위한 OECD 대면협의
- 11. 04 제2회 주한 외국 상무관 클럽 초청 연례 세미나 개최
- 12. 29 쿠웨이트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Kuwait)과 양해각서 체결

2003

- 02. 14 동북아협력 국제심포지엄 개최
- 09. 03 베트남 개발지원기금(DAF: Development Assistance Fund) 대표단 연수
- 10. 01 재정경제부로부터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수주
- 10. 13 제7회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EDCF 워크숍개최

연표

2004

- 10. 14 경험기금 워크숍 개최
- 11. 06 파키스탄 경제부와 업무협약 체결
- 12. 11 제3회 주한 외국 상무관 클럽 초청 연례 세미나 개최
- 12. 31 대외경제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5년 만에 재개(800억 원 출연)

2005

- 01. 01 대외경제협력기금 무상 사후관리지원비 제도 도입
- 09. 01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세부기준 제정
- 09. 01 대외원조정책 실무협의체 구성(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한국수출입은행, KOICA 등)
- 09. 05 제8회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EDCF 워크숍 개최
- 09. 21 타타르스탄 정부와 업무협약 체결
- 11. 08 <한국수출입은행의 국민경제적 기여효과 분석> 발간
- 12. 16 일본 국제협력은행과 제3차 연례협의회 개최

2006

- 01. 03 정부, 대개발도상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2006~2009 EDCF 운용전략계획 수립
- 02. 04 대외경제협력기금 내부회계관리기준 제정
- 03. 0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출범
- 03. 10 정부, 아프리카 이니시어티브(Initiative) 발표
- 03. 29 앙골라 무역 및 투자 세미나 개최
- 04. 24 제1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체(KOAFEC) 장관급 회의 개최
- 06. 30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 개정(경쟁입찰 원칙 도입)
- 07. 12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정부간 협정근거 신설, 외화표시차관 지원절차 간소화)
- 08. 28 경험기금업무 취급규정 개정(컨설턴트 고용의 전면 확대 등)
- 10. 31 JBIC과 업무협약 체결
- 11. 09 EDCF 운용자문위원회 구성, 환경영향심사지침 제정

2007

- 02. 15 소액 차관 도입
- 06. 15 비구속성 차관 도입 로드맵 수립
- 07. 01 EDCF 20주년
- 07. 24 EDCF 최초의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 체결(베트남)
- 12. 12 타슈켄트사무소 개소
- 12. 24 민자사업차관 도입

2008

- 10. 27 제2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체(KOAFEC) 장관급 회의 개최
- 12. 31 연간 승인 규모 1조 원 최초 돌파(1조 2,373억 원)

2009

- 09. 29 탄소펀드 공식 출범(13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투자)
- 11. 13 한국 아시아 최초로 ADB의 미래 탄소 펀드 가입

2010

- 01. 0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 08. 26 EDCF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10. 25 ODA 통계전담기관 지정
- 10. 29 EDCF-중국수출입은행(CEXIM)-일본 국제협력기구(JICA)-태국 경제개발협력청(NEDA) 공동 세미나 개최

연표

2011

- 03. 14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사업총괄기관 선정
- 06. 24 하노이 사무소 개소
- 06. 28 필리핀-한국 PPP 포럼
- 09. 22 수원국과의 공동평가 워크숍 최초 개최
- 08. 03 마닐라사무소 개소
- 10. 27 일본 JICA, 프랑스 AFD와 함께 ODA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3자 협의체 (EDCF-JICA-AFD) 출범
- 11. 11 자카르타사무소 개소
- 12. 08 우리나라 ODA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시

2012

- 01. 30 한·남수단 공동 프로젝트 '울지마 톤즈' 출범
- 04. 24 EDCF 세이프가드 국제세미나 개최
- 08. 10 필리핀 다목적댐 건설 및 관개사업에 2억 달러 지원
- 10. 17 스마일 톤즈 브라스 밴드와 멘토-멘티 결연식
- 11. 15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지원하는 프로그램 차관 사업 최초 승인
- 12. 11 OECD DAC 동료평가 최초 실시

2013

- 02. 27 2013년 EDCF 지원전략 설명회 개최
- 05. 06 EDCF 개발금융세미나 개최
- 06. 02 EDCF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
- 08. 25 KOICA와 유·무상 원조간 연계 활성화 계획 발표
- 11. 11 Win-Win형 ODA 민간합동 포럼 개최
- 11. 12 제1회 EDCF 자문위원회 개최
- 12. 02 기후금융 글로벌 포럼 개최
- 12. 31 누적 승인 규모 10조 원 돌파

2014

- 01. 20 양곤사무소 개소
- 04. 14 보고타사무소 개소
- 08. 09 다카사무소 개소
- 09. 12 민간협력차관, 섹터개발차관, 국제개발기구 앞 차관 제도 도입
- 09. 12 민간부문 지원제도 최초 도입

2015

- 03. 17 다레살람사무소 개소
- 03. 19 마푸토 사무소 개소
- 03. 26 IDB 한국총회
- 03. 28 EDCF-IDB 공동협력기금 설립
- 05. 15 최초 PPP사업(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지원
- 05. 28 아크라사무소 개소
- 06. 19 제1차 한-베 금융협력 조정위원회 개최
- 11. 1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을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보고기관으로 지정
- 12. 31 개발금융 도입

2016

- 01. 11 프놈펜사무소 개소
- 01. 19 콜롬보사무소 개소
- 02. 01 EDCF 세이프가드 공식 도입
- 03. 23 아디스아바바사무소 개소
- 04. 10 니카라과 앞 경험차관 공여계약 체결(니카라과 브로드밴드 구축사업)
- 08. 11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실적 최초 공개
- 12. 31 누적 승인 규모 15조 원 돌파

EDCF 3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 본부장 장영훈

편찬·집필위원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김태수, 홍성훈

팀장 김재환, 문재정, 박성윤, 박희갑, 양혜영, 유광훈, 조정화, 최민이, 최정훈

감수위원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나기환, 손승호, 이기호, 전장수

팀장 박대규, 차장 정재형

편집반

한국수출입은행 팀장 이종화, 부부장 구윤정, 차장 안주형, 대리 김다정, 석창민, 정유진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기획 제작 (주)사사연(02-569-4409)

www.sasayeon.com

집필총괄 장형규

원고집필 김계숙, 김혜란

기획진행 최용균, 박경아, 김민환

디자인 이민주, 김상덕, 황온슬, 민민지, 유이수

사진촬영 손초원

인쇄제작 넥스프레스

EDCF 30년사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인쇄 2017년 9월
발행 2017년 9월
발행인 홍영표
발행처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www.koreaexim.go.kr

비매품